

# 韓國의 地主制度에 關한 一研究 (其 1)

—— 日帝下의 土地小作制度에 대하여 ——

## 慎 鏞 厁

目

次

- I. 序一問題의 再檢討—
- II. 韓國 地主制度의 原型
  - 1. 李朝末期의 地主制度
  - 2. 土地調查事業의 影響
- III. 日帝下 地主制度에 있어서의 小作料의 地代範疇
  - 1. 小作料의 實體
  - 2. 小作料의 構成
  - 3. 小作料의 地代範疇  
(以下 次號)

### I. 序一問題의 再檢討—

이 論稿는 「土地調查事業」(1912—18)에 의하여 定型化되고 1945年 8·15 解放後의 農地改革에 의하여 解體된 우리 나라의 地主制度(通稱 小作制度)의 經濟的 構造와 歷史的性格을 밝힐 것을 目的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地主制度는 高麗時代의 文獻에도 記錄이 보이고 李朝時代에도 支配的 農業制度로서 廣範圍하게 存在하였던 長久한 歷史를 가진 制度이나 여기서 問題로 하는 것은 「土地調查事業」以後 日帝治下에서 展開된 地主制度에 限定하고 있다.<sup>(1)</sup>

日帝下의 우리나라 地主制度의 經濟的 構造와 歷史的 性格을 밝히는 問題는 우리나라 農業經濟學과 經濟史學分野의 基本的 課題의 하나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歷史의 이 時代에 있어서 地主制度는 單純히 農業部門에서 만이 아니라 全社會의 基本的 經濟制度로서 이 時代의 生產樣式의 基礎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며 또한 그것은 오늘날에 있어서도 우리나라

(1) 여기서 地主制度라 함은 狹義의 私的 地主制度를 指稱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와 같이 中央集權的 封建制가 展開된 곳에서는 封建國家도 一種의 地主로 되나 여기서는 日帝下의 小作制度에서와 같이 土地에 대한 私的 占有에 基礎를 두고 地代를 収取하는 制度를 地主制度의 原型으로 보아 考察하고 있다.

의 農業問題의 基本的 性格을 直接·間接으로 規制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問題의 研究에 있어서 이미 우리는 研究家들의 努作에 의하여 若干의 學問의 成果를 蓄積하고 있다. 그러나 그 研究成果는 論爭的인 内容으로 進展되어 왔다. 研究者들은 日帝下의 地主制度를 研究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먼저 論爭을 惹起시킬 만한 特殊한 現象을 說明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例를 들면 가장 特徵的인 두 가지 경우만을 보아도 첫째로 그들은 日帝下의 地主制度에 있어서의 小作料가 李朝時代의 封建的 地主制度의 小作料와 同率의 高率 現物小作料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李朝 封建地主制度에서 보다도 日帝下에서 小作料率이 현저히 上昇하는 事實에 直面하였다. 小作料를 地代라고 理解하는 경우 李朝時代의 封建地代率 보다 日帝下 地主制度의 地代率이 더욱 高率化된 現象은 마치 地主制度의 封建性이 더욱 深化된 것으로 解釋될 수도 있는 것이다. 둘째로 그들은 日帝下의 地主制度의 展開過程에서 農民層의 兩極分化가 顯著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事實에 直面하였다. 그것은 마치 資本主義經濟에 있어서의 資本集中으로 因한 小生產者의 資本家와 賃金勞動者에로의 分化와 매우 類似하게 보이는 것이다. 우선 이 두 가지 事實만을 두고도 顯著한 解釋上의 意見對立과 論爭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물론 日帝下 우리나라 地主制度의 内容은 以外에도 수많은 特殊現象을 表出시키며 이것은 本論에서 우리가 檢討하여 나갈 課題들이다.

日帝下 우리나라의 地主制度에 관하여 從來의 對立되는 몇 가지 解釋上의 論爭點을 整理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sup>(2)</sup>

### 第1의 見解

먼저 日帝下의 地主制度를 封建的 地主制度라고 보고 地主를 封建地主, 小作農을 半農奴, 小作料를 封建地代라고 解釋하여, 資本主義의 發展에도 不拘하고 地主制度의 封建性이 深化되기에 이르렀다고 보는 見解가 있다.<sup>(3)</sup>

“以上을 要約하면 朝鮮의 農村社會는 外來資本主義와의 不可避의 接觸에 의하여 資本制의 流通 및 蓄積의 軌道內部에 急激히 그리고 繁密히 從屬=編入되어 그 封建性解體를 위한 刺戟과 衝動을 不斷히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本質으로는 今日에 이르기까지 依然封建的=半農奴의in 收取關係의 諸特徵을 確保持續하여 나아가면서 오로지 非資本主義의 外籬으로서의 歷史的 課題에

(2) 여기서 指摘하고 있는 우리나라 地主制度에 대한 論爭點의 要約은 그에 대한 紹介의 必要上 不可避하게 다른 論者들의 叙述과 部分的으로 重複되어 있다. 특히 印貞植氏의 『朝鮮の 農業機構』 1940年の 論爭的 部門과 金俊輔教授의 論文 「金融資本下의 零細農의 性格—日帝下의 零細小作制를 中心으로—」의 이 論爭에 對한 再檢討의 部分에서 그려하다. 解放以前에 있어서의 이 論爭은 日本에서의 論爭의 間接的 影響下에 展開되었으나 解放後의 研究는 전혀 獨自의인 것으로 이를 度外視하였다. 여기서는 從來의 對立의 見解들을 세 가지 見解로 나누어 보려고 하며 引用은 檢討와 批判을 위한 學問의 課題의 範圍内에 限定되고 있다.

(3) 이 見解의 代表的 例로서는 印貞植『朝鮮の 農業機構』增補版 1940年.

忠實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全日本經濟는 特히 二十世紀初頭以來 獨占資本主義의 새로운段階에 突入하고 있었다. 그것은 우리 朝鮮에 있어서 舊來의 封建的=半農奴的諸關係를 根本의으로 掃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後者の 擴大와 深化를 物質的 地盤으로 하여 朝鮮을 再編成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舊來의 封建的=半農奴的諸關係는 日本資本經濟의 完全한 統制下에 從屬, 掩護, 結合되기에 이르렀다.”<sup>(4)</sup>

이 見解는 이러한 封建的=半農奴的 經濟關係가 地形態에 가장 集約的으로 表現된다고 하고 우리나라 地主制度에 있어서의 小作料를 封建地代라고 斷定하고 있으며 日帝下地主制度의 小作料의 高率化는 封建地代의 高率化로서 地主制度의 封建性의 深化라고 理解하고 있다.

“그러나 以上에 있어서 이미 屢屢히 指摘되어온 바와 같이 50% 내지 90%의 高率로써 나타나고 있는 바의 朝鮮의 小作料란 것은今日의 直接的 生產者 즉 小作農民大衆의 全剩餘勞動 뿐만 아니라 必要勞動의 一部까지도 包含하는 바의 極히明白한 封建地代이다. 그러나 이 封建地代는 農村社會의 새로운 分化와 發展에 의하여 漸次 資本制의으로 揭棄되어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獨占資本과 結合된 封建的=半農奴的 農村諸關係의 擴大 深化에 의하여 더욱 더욱 그 性格을 闡明하고 있는 것이다.” 前揭書, p. 189.

이 見解는 小作料를 封建地代라고 보고 그 封建性이 資本主義의 發展에도 不拘하고 더욱 擴大 深化되어간다고 보기 때문에 封建地代 成立의前提로서 封建的 地代收取의 唯一한 機構인 《經濟外的強制》가 日帝下의 우리나라 地主制度에서 存續되고 때로는 더욱 強化되었다고 보고 있다. 이 見解는 「經濟外的強制의 擴大再生產」이라는 表題下에서 이 點을 특히 強調하고 있다.

“要約컨대 이렇게 말하는 事實은 얼마든지 指摘할 수 있는 것으로서, 今日 經濟外의 強制의 遣制가 農村生活中에 깊고 넓게 存續하고 있다고 하는 事實을 우리는 何等 疑心할 理由를 갖고 있지 않다. 보다 重要한 意義는 이것의 存續의 事實을 確認하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今日

(4) 印貞植, 前揭書 p. 233. 이 見解는 繼續하여 그 理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說明하고 있다.  
“第一로 日本資本經濟가 朝鮮農村으로 하여금 그의 商品市場 또는 原料源泉으로서 再編成하기 위해서는 資本流通의 軌道에의 農村經濟의 接觸 從屬을 最大限으로 確保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리하여 商品販路의 廣範한 開通, 租稅公課 其他諸負擔의 金納制轉化, 農家負債의 累進的增進, 專賣制度, 共販制度等 要컨대 農村生活을 更多更多 貨幣=商品經濟에 依存시키는 諸傾向의 急速한 發展과 더불어, 舊來의 封建的諸關係의 漸次的解體의 過程이 促進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解體의 過程은 朝鮮社會內部에 있어서의 社會的生產力의 未發達로 말미암아 極度로 制約되어 崎型的으로 또는 跛行的으로 되지 않을 수 없었다. 即 이것을 보다 具體적으로 말하면 解體過程은 農村經濟의 資本制의 流通過程과의 接觸部面에 한 限定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農村經濟의 다른 보다 本質的인 基本的 關係, 即 生產關係의 方面에 있어서는 舊來의 封建的=零細農的 生產樣式이 依然히 舊態 그대로 存續 踏襲되어, 다시 土地集中의 急速한 發展과 더불어 一層 擴大 深化되지 않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50%—90%의 高率을 갖는 바의 封建的 地代=小作料의 收取土壤으로서의 封建的=半農奴的 關係를 踏襲 強化하는 것은 本質的으로 資本蓄積의 欲求에 一層 보다 잘 順應하는 것인기 때문이다.” 前揭書, pp. 233—234.

의 土地集中의 急速한 趨勢와 더불어 이 經濟外의 強制도 역시 그 存續의 基礎로 하여금 더욱 더 深化하고 擴大하여가고 있다고 하는 事實에 있는 것이다.”<sup>(5)</sup>

그리하여 이 見解에 있어서는 地主에의 土地集中과 自作農의 地主와 小作農으로의 兩極 分解는 小生產者의 資本家와 賃金勞動者로의 分化가 전혀 아니며 따라서 資本主義經濟關係의 成立을 示唆하는 것이 전혀 아닐뿐 아니라, 도리어 獨立小生產者를 封建的 經濟關係에 没入시키는 農村社會에 있어서의 封建性의 深化 擴大過程에 不過한 것이라고 解釋하는 것이며, 또한 그것은 封建地代 高率化의 原因에 不過하고 資本主義의 經濟關係의 成立을 沢害 封鎖하는 것이라고 解釋하는 것이다.

“一般的으로 小作農의 無力化에 隨伴하는 地代=小作料의 高率化의 傾向을 促進하는 決定的 要 因으로서는 이 경우 土地集中의 急激한 趨勢에 의하여 促進된 農村過剩人口의 累進의 增大와 따라서 小作權獲得을 위한 競爭의 逐年的 增加等의 事實이 指摘되지 않으면 안된다. 土地의 集中과 大土地所有의 發達度에 照應하여 地代=小作料率은 比例的으로 高度化하여가고, 이에 反하여 土地의 集中이 微弱한 경우 地代=小作料도 相對的으로 低率이라는 것은 이미 前章에서 指摘하여 온바와 같다.”<sup>(6)</sup>

要컨대, 이 見解는 資本主義의 侵透 發展에도 不拘하고 日帝下 韓國農村社會에서 그 것은 農村經濟의 資本制의 流通過程의 接觸部面만 이를 解體시켰고 生產過程에 있어서는 「封建性을 一層 存續 強化」하였다라고 보고 “이와같이 流通過程에 있어서는 商品=價直=貨幣經濟에 從屬 包圍되어 있음에도 不拘하고 他方 가장 本質의인 生產過程에 있어서는 封建的=農奴의인 바의 農村關係를 半封建的 또는 半農奴의 農村關係라고 規定할 수 있다” (p. 234)고 結論짓고 있다. 結局 이 見解는 日帝下의 韓國農村의 社會的 關係는 半封建的 關係이고 그 속에서의 《生産部門》인 地主制度는 封建的 地主制度이며, 地主는 封建地主,

(5) 印貞植, 前揭書, p. 224. 이 見解는 日帝下 우리나라 地主制度에 있어서의 經濟外의 強制가 舊態依然한 形態로 存續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變形되어 存續 強化되고 있는 것이라고 示唆하고 있는 것 같다. “확실히 이 強制는 今日에 있어서는 이미 舊態依然한 形態로서는 作用하지 않는다. 그러나 今日 朝鮮의 農村諸關係에 관한 여려가지의 法制的 規定 그것이 이미 이려한 經濟外의 強制의 體系化이며, 隸農의 再版은 아닌가? 그들 小作農=半農奴의 身分의 隸從과 人格의 非自由와는 그 本質에서 말하여 결코 完全히 撤廢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前揭書, p. 221. “果然 舊態 그대로의 私罰이나 答刑 投獄等의 諸形態는 今日에 있어서는 그렇게 露骨의으로 行해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그 代身 혹은 種類의 人格의 非自由와 身分의 隸屬은 今日에 있어서는 隸農의in 法律上의 規定이나 「事情의 힘」에 塗겨서 더욱 深化=擴大되고 있는 것이다. ……이 強制는 말할 것도 없이 身分上의 隸從과 人格上의 非自由를 前提로 하는 것으로서 資本制의 經濟事情에도 隨伴할 수 있는 바의 所謂「無言의 強制力」이라든가 또는 「經濟外의 直接的 行動」의 行使等과는 確實히 그 範疇性을 달리하는 것이다.” 前揭書, pp. 222—223.

(6) 印貞植, 前揭書 p. 129. 前章에서도 이 事實을 強調하고 있다. “小作料率은 위에서도 叙述한 바와 같이 우리 朝鮮에 있어서는 그 平均程度에 있어도 一定의 水準에 固定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恒常 高度化하고 있다. 이러한 高度化의 促成作用은 土地集中의 急速한 發達에 隨伴하는 農村過剩人口의 汎濫과 그에 隨伴하는 小作權爭奪戰의 激化 또는 그 結果로서의 地主에 대한 小作人의 無力化 等等에 의하여 說明된다.” 前揭書, p. 161.

小作農은 農奴 또는 半農奴, 小作料는 封建地代이며, 이 地主制度의 封建性은 資本主義의 發展에도 不拘하고 更욱 深化 擴大되었다고 規定하는 것이다.

## 第2의 見解

이에 대하여 또 하나의 다른 見解는 “封建的 經濟制度에 있어서는 生產者에의 土地의 分與가 基礎를 이루고, 資本家的 經濟制度에 있어서는 直接的 生產者의 土地로부터의 分離가前提로 될다”는 事實을 強調하면서 壓倒的 多數의 農民이 土地所有에서 分離되어 小作農으로 되어있고 封建的 自然經濟가 이미 오래 前에 解體되어 있는 우리나라를 封建的範疇의前提로부터 遊離되어 資本主義的範疇의 社會로 되어 있으며, 地主制度에 있어서도 地主는 資本家的近代地主, 小作農은 賃金勞動者라고 解釋하고 있다.

“……이러한 典型적인 純粹封建制度를 갖지 않은 朝鮮에 있어서는 이미 純粹한 封建制度의 防波堤인 自然經濟의 城廓은 오랜 以前부터 解體되어 있다. 今日舊態依然한 小作料形態로서의 物納 및 勞動地代의 素朴한 形態의 殘存은 이를 볼 수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은 今日의 社會의 總體의 基準으로서의 「金錢」 즉 貨幣經濟의 中世紀的 假裝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그것은 이미 貨幣量觀念化하여 自己表章으로 하고 있으므로 今日自然經濟의 貨幣經濟에의 轉化 또는 轉化過程에 있다고 말하는 것은 何等 疑問의 餘地가 없다.”<sup>(7)</sup>

“우리는 이 點에 있어서 이미 壓倒的 多數의 農民이 土地로부터 分離되어 있고, ……이미 朝鮮은 封建的範疇의前提로부터 遊離되어 資本主義의 海上을 航海하고 있다.”<sup>(8)</sup>

이러한 見解는 다른 論者에게서 더욱 具體的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土地調查事業에 의하여 改編된 小作制度는 資本主義의 發展과 더불어 近代地主制度로 發展하고 地主는 資本家로 小作農은 賃金勞動者로 轉化하였다는 것이다. 이 見解는 小作制度에 있어서의 「身分關係에서 契約關係에로」의 轉化와 農民層의 兩極分化가 地主制度의近代的資本家的 發展形態로 理解되고 있으며 특히 日本人地主會社의 資本家的 性格과 小作農의 賃金勞動者的性格이 크게 強調되고 있다.

“日韓合併後 朝鮮民事令이 施行되어 小作人의 地位는近代的契約關係에 轉化되었지만 農村에 있어서의 保守的傳統은 今日도 아직 舍晉이나 秋收員으로 하여금 強大한支配力を保持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리나 社會의 進化는 固定하여 있는 것은 아니다. 朝鮮에 있어서의 農業經營도 이미 우리들이 考察하여 온 바와 같이 封建的形態로부터 蛹胎하여가고 있다. 그리하여 小作管理制度의 形態에 있어서도 東洋拓殖株式會社와 같이 大規模의 農業經營을 行하는 것 또는 國有地의 小作人等에 있어서는 從來의 身分의 管理關係로부터近代的契約關係에의 轉化를 보기에 이르렀다.”<sup>(9)</sup>

“……從來 封建的 土地所有形態는 解體하고, 自營農民에 의한 過小農은 그 經濟的基礎을 失墜하였으며, 이를 農民은 日本 또는 滿洲 其他에 移住하여 賃勞動者로 没落하거나 또는 農業上의

(7) 朴文秉「自然經濟」(論文).이 引用은 印貞植氏가 그와 對立되는 見解로서 提示하고 있는 것이다. 前揭書, p. 205.

(8) 朴文秉, 前揭論文, p. 215.

(9) 津曲藏之丞「朝鮮に於ける小作問題の發展過程」京城帝國大學法文學會『朝鮮經濟の研究』所載 pp. 420—421.

賃勞動者에 轉化하거나의 어느 것을 強要당하였고, 스스로 耕作하지 않는 大地主는 累年增加하여 간다고하는 이들의 傾向, 換言하면 그 唯一의 生產機關인 土地를 차례로 資本化하여 간다고 하는 傾向을 알아본 것이다. 그것이勿論 극히 初期의 段階에 있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資本主義에의 發展이 途程에 있다는 것을 否定할 수는 없다. 換言하면 往時의 閥族階級은 資產階級에 轉化되고 資產階級의 自由發達의 助長은 他方에 또한 無產農民의 階級을 派生시키었으며, 他產業이 勃興하지 아니한 今日에 있어서는 資產階級은 結局 地主 其他の 大農經營者가 되고 窮民은 스스로 살파 피의 販賣者인 日雇勞動者가 된다.”<sup>(10)</sup>

이러한 見解는 論者에 따라 若干의 差異가 있지만 日帝下 韓國의 地主制度를 近代的 資本家의 地主制度로 解釋하는데 全的으로 一致하고 있다. 그 論據로 주로 土地所有의 近代的 性格, 土地의 資本化, 小作關係의 契約關係에의 轉化, 農民層의 兩極分解, 零細農의 没落과 生產手段으로부터의 分離, 生產物의 商品化率의 增大, 小作料의 定額制化, 小作料의 金納化, 全般的 貨幣經濟의 發達等이 指摘되고 있다. 이 見解는 地主를 近代地主 또는 資本家라고 보고 있으며 小作料는 近代地代(利潤包含), 小作農은 賃金勞動者라고 보고, 經濟外의 強制의 存續 強化는 認定하지 않고 있다. 그리하여 이 見解는 日帝下 우리나라 地主制度의 近代資本制의 性格은 全體資本主義의 發展에 따라 더욱 發展하여 간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第2의 見解는 물론 앞서 본 第1의 見解와 尖銳하게 對立하는 것이다.

### 第3의 見解

解放後 우리나라 地主制度에 관한 研究는 沈滯되어 있었으나 近來 金俊輔教授는 그의 努作<sup>(11)</sup>에서 論爭을 再檢討하고 從來의 見解와는 다른 새로운 見解를 發表함으로써 우리나라 地主制度의 研究를 前進시켰다.

이 見解는 먼저 從來의 論爭이 그 理論的 背景을 產業資本勃興時代의 西歐農業社會에 두고 있으나, 當時의 現實(日帝下의 零細小作農)은 金融資本時代의 韓國農業이었다는 點을 強調하고, 問題를 不斷히 發展하여나아는 獨占金融資本主義下에 있어서의 零細農의 運命을 照準하여야 한다고 指摘하고 있다. 即 金融資本에 대하여 最大의 「便宜」와 最大의 利益을 提供하지 않으면 안되는 條件下의 零細小作農을 認定할 때 어찌하여 全體資本主義의 進行에도 不拘하고 表見上 封建的인 現象으로 보이는 經濟關係가 地主制度에 形成되어 있었던가를 解明하는 問題의 關鍵에 接觸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sup>(12)</sup>

(10) 津曲藏之丞, 前揭論文, p. 425.

(11) 金俊輔「金融資本主義下의 零細農의 性格 一日帝下의 零細小作制를 中心으로—」서울大學校『論文集』人文社會科學 第5輯 1957.

(12) 金俊輔, 前揭論文, p. 290—291. 金俊輔教授는 從來의 이 問題에 對한 論爭을 이러한 觀點에서 批判하고 있다. “생각컨대 傳統의인 封建化的 主張(第1의 見解)이나 公式化의 主張(第2의 見解)에는 이러한 基本的 條件의 變遷에 대한 確然한 認識이 不足하였다. 그들은 다만 漠然히 資本主義를 條件으로 하였거나 비록 金融資本主義를 條件으로 하였다 할지라도 그를 產業資本파의 明確한 意識의인 對照下에 問題를 歷史的 動態의으로 把握함에 充分한 力量을 보이지는 아니하였던 것이다.”

金融資本의 目的是 最大利潤=最大金利에 있으며 이 金融資本은 產業資本을 통하여 金利를 取得하고 金利를 통하여 產業資本을支配한다. 그러나 여기서 특히 注意할 점은 金融資本이 產業資本뿐만 아니라 土地所有資本(地主)에 깊숙히 들어가서 이를支配함으로써 그의 機能을 다한다는 것이다. 즉 金融資本은 土地所有資本에 侵透하여 理論的 地代를 土地資本을 통하여 地主로부터 利潤=利子의 形態로 収取하고야 만다고 한다. 이것은 마치 金融資本이 典型的인 產業資本으로부터 利潤을 利子로서 収取하는 것과 다름없는 論理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 見解에 의하면 金融資本下의 우리나라의 地主는 產業資本家나 賃金勞動者에 對立된 第三階級으로서의 地主가 아니라 本來의 地代를 金融資本에 의하여 利子의 形態로 収取當하고 나머지 利潤을 小作農으로부터 収取하는 產業資本家의 範疇로 轉化하는 것이다. 즉 이 見解에 의하면 日帝下의 우리나라 地主는 金融資本의支配下에서 產業資本家로 轉化된 것이다. 이러한 形態는 土地會社의 農場型 地主에서 뛰어한 것이며, 傳統的在來地主에 있어서도 本質的으로 同一한 것이라고 한다.

“즉 獨占的 金融資本主義下의 後進支配地域에 있어서의 地主는 產業資本家 또는 勞動者와 對立된 第三階級으로서의 地主가 아니라 本來의 地代를 獨占金融資本에 의하여 利子의 形態로直接的 또는 間接的으로 収取當하고, 나머지 利潤(小作料一本來의 地代)을 小作農, 즉 零細小作農으로부터 収得하는 產業資本家의 範疇에 性格轉換을 한다는 것, 그 중 第一型의 地主에 있어서 그러한 性格에 뛰어近接한다는事實이다. 그것은 또한 金融資本主義下에 있어서 모든 生產手段이 資本化하는 傾向, 土地 또한 그러한 性質을 濃厚히 갖지 않을 수 없다는事實에 對應되는 것이다.”<sup>(13)</sup>

“東洋拓殖株式會社를 비롯한 日本獨占資本의 直接的인 隸屬形態는 물론이거나와 그 밖의 第一型의 地主로서 數많은 「農場」은 그의 形式에서 볼 때 비록 典型的인 農企業形態 即 資本家의 生產樣式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의 實質에 있어서 金融資本을 背景으로 產業資本家의 意識下에 資本의 利潤을追求하는 業體임이 分明한 것이니 만약 그들을 單純한 地主로서 認定하고, 地代만의 固定的 所得者로서 觀察한다면 너무나 事實을 形式的으로 判斷하는 弊가 되는 것이다. 確實히 이들 地主=產業資本家는 金融資本과의 融合된 企業家로서 農業 그 밖의 各種產業에 投資를 慷行하되 農場經營의 相對的 有利性이 認定되지 아니할 때는 即時로 資本의 移動을 敢行하는 것이 例事이다. 따라서 이러한 農業會社 또는 農場主를 끝끝내 單純히 資本家에 對立된 傳統的인 地主階級으로서 固定的으로 생각한다면 그는 歷史的 運動法則을 充分히 理解하지 않는 所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sup>(14)</sup>

(13) 金俊輔, 前揭論文, pp. 299—300.

(14) 金俊輔, 前揭論文, pp. 301—302. 金俊輔教授는 계속하여 在來地主의 경우에도 金融資本의 支配下에서 產業資本家로 轉化한다고 다음과 같이 指摘하고 있다. “獨占資本의 進行은 위와 같이 所謂 第1型의 地主를 產業資本家로 變質할 뿐 아니라 나아가서 第2型의 地主를 地代=金利 取得者로 化한다. 그러나 여기에 金利의 內容인즉 基本的으로는 產業利潤의 方向을 取하는 點에 있어서 第1型의 경우와 本質的으로 다름이 없는 것이다.” “第2型의 地主에는 封建時代의 遺產인 土地의 所有者가 많다. 이러한 事實에 拘泥한 結果는 이를 地主와 小作農의 關係로 하여금 封建的 關係와 조급도 다름 없다는 觀念을 갖기 쉽다. 그러나 設令 地主와 小

日帝下 우리나라 地主制度에 있어서의 地主階級을 產業資本家의 範疇로 性格轉化하였다고 解釋할 경우 小作料는 어떻게 되는가? 이 見解의 當然한 論理的 歸結로 그것은 封建地代가 아닌 近代資本制地代의 金融資本段階의 變形으로서의 『利潤』이다. 金融資本의支配下에서는 小作料는 이미 封建地代가 아니며 地代가 形態的으로 發展하여 金融資本을 위한 利潤(및 利子)으로 變質한다는 것이다. 즉 『小作料=利潤』이라는 等式이 成立한다.

“여기에 하나의 重大한 問題에 대한 關鍵이 發見되는 것이니 그것은 封建地代로서 指目되던 小作料의 觀念이 根本의 으로 解體된다는 結論이다. 우리는 傳統의 農業理論에 있어서 零細農의 小作料가 「封建的」或은 「半封建的」이라는 用語로서 表章되었음을 잘 알고 있다. 그리하여 一派는 完全히 그것을 本質의 으로 封建的인 것으로 是認하고, 다른 一派은 그를 本質의 으로 封建的인 것 이 아니라, “過渡期의”이라든가 또는 “不得已”한 “政策的”인 것으로 認定함에 그쳐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封建的 地代”로서의 觀念이 資本社會의 進行에도 不拘하고 그대로 存續될 理는 萬無하다. 그의 正體는 바야흐로 地主가 產業資本家化 함으로써 現實의 인 解明을 보게 될 것이다. 即 다시 말할 것도 없이 金融資本主義下에 있어서의 高率小作料=封建的 地代는 이미 地代 그 것이 아니라 金融資本을 위한 利潤으로 變質하였다는 것이 正鵠을 얻는 解釋이다. 여기에 하나의 아울러 아는 解決되고, 「農業論爭」은 解決의 曙光을 얻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事實 우리는 小作料를 어디까지나 典型的 地代의 範疇로서만 固守하였기 때문에 問題를 迷路에 固着시키고 말았던 理論의 歷史를 갖는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다.” (p. 303)

이 見解와 같이 小作料를 利潤으로 解釋하는 경우에 그 高率性은 어떻게 說明되고 있는가? 小作料가 高率이었던 것은 金融資本의 支配下에서 그 高利子率政策이 地主로 하여금 小作料를 높게 維持할 수 밖에 없게 하였다고 한다. 또한 產業資本家로서의 地主의 利潤率(小作料率)의 内容은 地代가 完全히 利子化하지 아니한 金融資本의 初期의 段階에 있어서는 平均利潤率을 上廻할 수 있지만 金融資本의 支配가 一定水準으로 發展하면 土地資本에 대한 利潤率은 一般株式의 平均利潤과 同水準으로 된다고 보고 있다.

“그렇다면 小作料는 어찌하여 그와 같이 高率制를 維持하였던가? 첫째로 日帝下의 高率小作制가 封建的 地代에서 본바 歷史的 遺制와 더불어 關聯性을 갖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封建小作制 그 것은 우리에 있어서 日帝初期의 土地調查事業을 起點으로 한 近代的小作制度의 確立을 契機로 하여 解消되고, 高率制의 實質은 그 後 獨占金融資本의 支配下에서 地主에 대한 負擔의 轉稼가 가져온 必然의 인 結果라고 보는 것이 보다 妥當한 見解일 것이다.

지금 小作制의 高率制를 묻는 것은 마치 어찌하여 勞賤이 低廉한가를 묻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러나 우리에 있어서 獨占資本=金融資本의 高利政策이 地主(土地資本家)로 하여금 그의 収取地代(小作料)를 높이 維持할 수 밖에 없게 한다는 點을 銘記한다면 問題는 스스로 解得되는 것이다.” (p. 296)

---

作人의 人的關係가 그대로 資本社會에 移行되었다 할지라도 時代의 段階의 變動은 本來의 社會關係를 變質시키고자 할 것이다. 그리고 農業生產에 積極의 으로 參與하지 않는 “第2型”的 地主에 있어서는 日帝初期의 段階에 있어서 거의例外없이 高利貸金業者가 되어 있었던 것 이나, 그가 地主로서는 大部分 第1型의 그와 本質의 으로 달라있지 아니하였다 것이다.”

小作料가 貨幣形態가 아니고《現物》小作料의 形態를 取하는 까닭은 어떻게 說明되는가? 激甚한 農產物價格變動下에서 現物小作料는 地主側에서 보면 商業利益을 享受할 수 있는 「便宜」한 制度이고 窮迫販賣의 立場에 놓여 있는 小作人側으로 보면 價格變動의 利益을 享受할 수 없는 限 오히려 現物制가 「無妨」한 制度이었기 때문에 存續하였다고 한다. 즉 現物小作料의 存續의 要請은 「封建社會의 遺制的 要請으로부터 金融資本主義의 “便宜”的 要請으로」 轉化되었다고 解釋한다.<sup>(15)</sup>

또한 이 見解는 地主階級을 產業資本家의 範疇로 轉化했다고 보고 小作料를 利潤으로 보기 때문에 當然히 小作農을 農業勞動者로 解釋하고 있다. 그 가장 重要的 根據는 身分的 規制關係・經濟外的 強制의 解體와 더불어 小作農이 土地라는 基本的 生產手段의 所有에서 分離되었으며, 小農具 家畜等은 生產手段으로 看做할 수 없기 때문에라고 指摘하고 있다.

“그리면 日帝下에 抑壓과 貧困下에 놓여 있던 韓國零細小作農은 어찌 한 範疇의 性格의 所有者였던가? 만약 그의 保有하는 「耕이」「낫」 또는 若干의 家畜이 完全한 生產手段이라고 한다면 解答은 複雜하다. 그러나 問題를 實質的으로 살펴본다면, 첫째 土地없이 零細農이 保有한 그의 小道具가 完全한 生產을 이룰 수 없다는 點에 있어서, 둘째 生產手段인 土地에 比하여 너무나 微弱한 生產手段이란 點에 있어서, 세째 그들이 兼하여 生活手段으로써 使用된다는 點에 있어서, 그리고 네째로 그들 微弱한 道具들이 나마 大部分 地主=產業資本家에 대한 負債의 對象이 되어 있다는 點에 있어서 (即 그들은 事實上 地主의 貸與物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點에 있어서), 다섯째 反對로 그만한 生產手段이라면 典型的인 都市 풀로레타리아에서도 能히 찾아볼 수 있다는 内容에 있어서 零細小作農은 生產手段의 完全한 所有者가 아니다. 따라서 單純히 生產手段의 實質的 内容에 의하여 日帝下의 零細小作農은 勞動者로 認定하여 無妨한 것이나 그러나 零細小作農을 풀로레타리아化하는 要因은 그들이 最低의 生活手段(生存物)以外에 一切의 剩餘勞動의 產物을 土地所有者인 地主에게 提供하도록 그의 勞動力を 間接強制的으로 酷使한다는 점에 있는 것이다.”<sup>(16)</sup>

이 見解에 의하면 日帝下 우리나라 地主制度는 金融資本의 支配下에서 地主가 產業資本化하고 小作農은 農業勞動者이며 小作料가 利潤으로 形態的 發展을 한다고 보기 때문에 農業部門에 있어서도 地主制度의 地主一小作農 關係는 工業部門과 마찬가지로 產業資本家一賃金勞動者의 關係로 되어 從來 農業部門과 非農業部門을 二元的으로 把握한 것을 止揚

(15) 金俊輔教授는 이렇게 쓰고 있다. “……事實上 地主가 이와 같은 價格變動의 利益을 享有할 수 있다는 條件이 곧 小作料의 現物制가 持續되는 實質的인 理由인 것이다며, 한편 小作農이 이와 같이 窮迫된 立場에 놓여 있다는 條件에 있어서 또한 우리는 小作料의 現物制가 持續되는 理由를 發見할 수도 있는 것이다. 여기에 있어서 日帝下의 小作制에서 본 바 現物小作料는 일찌기 “封建化”의 見解 그대로 範疇의 封建地代가 아님은 물론, 그렇다고 하여 單純한 “貨幣經濟의 中世紀的 假裝”으로 생각할 수 없다는 點이 充分이 理解된다. 왜냐하면, 現物小作制 그 것은 첫째로 地主의 利益, 나아가서는 獨占資本의 利益의 確保를 為하여 “便宜”한 制度이었기 때문이다, 한편에 있어서 그것은 또한 資本主義의 價格機構下에 特別한 利益을 享受할 수 없는 小作農의 立場에 비추어 “無妨”한 制度라고 認定되었던 까닭이다.” 前揭論文, p. 296.

(16) 金俊輔, 前揭論文, pp. 304—305.

하여 一元的 把握이 可能하게 되었음을 指摘하고 있다. 이러한 觀點은 基本的으로 土地集中에 隨伴하는 獨立小農(自作農)의 分解와 小作農으로의 没落을 都市 產業資本에서 나타나는 바의 資本集中에 隨伴하는 資本家의 分解와 同一한 것으로 解釋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스스로 地主制度에 있어서의 金融資本에 의한 資本制의 法則의 貫徹을 通하여 日帝下 우리나라 地主制度의 近代的 資本制의 性格의 確立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理解하고 있다.

以上과 같은 諸見解는 우리나라의 地主制度의 研究에 여러가지 側面에서 貢獻하였다. 그러나 우리가 보아온 바와 같이 同一한 歷史的 事實에 對한 解釋의 差異는 매우 크고 對立的인 것이며 이 問題의 研究에 對한 實證的 再檢討를 不可避하게 하고 있다.

本稿는 이러한 論爭點을 問題의 一部로 包含시키면서 日帝下의 우리나라 地主制度의 經濟的 構造와 歷史的 性格을 全般的으로 檢討하려고 한다. 그러나 그 方法은 從來의 論爭의 先入見에 支配 當함이 없이 重複과迂迴를 무릅쓰고서라도 地主制度의 實體를 『實證的』으로 分析하여 여기서 얻은 結論으로서 理論定立을 追求하여 보려고 한다.

## II. 韓國地主制度의 原型

### 1. 李朝末期의 地主制度

日帝下 우리나라 地主制度의 經濟的 構造와 歷史的 性格을 밝히며 아울러 그것이 封建的인 것인가 資本制의인 것인가의 낡은 論爭을 解決하기 위해서는 日帝下의 地主制度에 대한 實證的 分析과 理論的 說明 뿐만 아니라 그 前에 李朝末期의 封建地主制度와의 比較考察能이 必要하다. 따라서 日帝下의 地主制度를 分析하는 本論의 作業을 시작하기 前에 먼저 그에 先行되는 李朝末期의 地主制度의 原型과 그것이 日帝下의 地主制度로 變遷하는 過程에 대하여 必要한 部分만을 極히 간단히 論及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 日帝下의 小作制度의 原型이라고 볼 수 있는 私的地主制度가 언제부터 發生하였는지는 아직 分明치 않으나 극히 오래 前으로 還及할 수 있고,<sup>(17)</sup> 記錄에 本格的으로 나타나는 것은 高麗時代(末期)에 『借耕』하여 『所出分半』하였다는 事實이 指摘되고 있다. 鄭道傳은 高麗末期 中央集權의 封建國家의 權力이 極度로 弱化되고 權勢를 掌握한

(17) 三國時代에도 土地賣買가 있었다는 記錄이 있고 〈賜田〉이나 〈寺院田〉 또는 〈食邑〉이 地主制度에 의하여 經營되었으리라고 推測되지만 아직 明白한 것은 알 수 없다. 統一新羅期에 있어서는 土地賣買가 盛行되었던 것 같고 末期에는 地方豪族들에 의한 土地兼併과 大土地私有化가 進展되었으므로 没落한 農民이 小作人으로 轉化되어 封建的 地主制度가 展開되었으리라고 推論할 수 있다.

貴族層이 각地方에 大農莊을 設置하여 地主化하면 時期의 農民의 没落에 對하여 指摘하면 서 田柴料制度가 崩壞된 以後 強豪들이 土地를 兼並하여 富者의 土地가 陌阡을 連하고 貧者는 立錐의 땅도 없어 富人의 土地를 『借耕』하지만 一年내내 勤苦하여도 食半不足인데 富者는 安坐不耕하면서 『佃人』을 使用하여 그 『太半』을 거두어 들인다고 指摘하고 있 으며, 또 계속하여 力多者와 勢強者가 土地를 占有하였으므로 無力者は 그에 從屬되어 이를 『借耕』하고 그 『所出』을 『半』으로 나눈다고 거듭 指摘하고 있다.

“自田制之壞 豪強得以兼並 而富者田連阡陌 貧者無立錐之地 借耕富人之田 終歲勤苦 而食半不足 富者安坐不耕 役使傭佃之人 而食其太半之入 (中略)而民之所耕 則聽其自墾自占 而官不之治 力多者墾之廣 勢強者占之多 而無力而弱者 又從強有力者借之耕 分其所出之半 是耕之者一 而食之者二 富者益富 而貧者益貧 至無以自存”<sup>(18)</sup>

여기서 『借耕』은 小作制度의 原型이며, 『佃人』은 小作人으로서 強豪에 從屬되어 50% (分半)의 小作料를 納付하였음을 알게 된다. 이것은 典型的인 私的地主의 경우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 小作人은 本來의 自耕民(自作農)이 貴族層의 土地兼併에 따라 没落하여 『佃人』(小作農)으로 되는 경우와, 奴卑가 貴族의 大農莊에서 使役되어 『佃人』으로 되는 두가지 경우로 區分되나 強豪들은 어느 경우에나 佃人을 奴卑로 取扱했으며 強力한 身分의 規制를 加하였다. 그러므로 自營民의 『佃人』으로의 没落은 良人の 奴卑에의 没落 으로 볼 수 있으며, 그들은 全般으로 새로이 擡頭한 大地主들에 對하여 農奴의 地位에 있 었다고 볼 수 있다. 大地主는 農奴인 『佃人』으로부터 經濟外的 強制에 의하여 50%의 小作料를 收取하는 典型的인 封建地主이었다.<sup>(19)</sup> 이 경우의 小作制度는 本來의 封建的 地主制度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農民이 私의 大地主가 占有하고 있는 未墾地와 『陳田』(廢土地)을 開墾하는 경우에도 그 農民은 小作人이 되어 田主에게 小作料를 納付하였으며 그 小作料率은 初年에는 開墾獎勵를 위하여 減免되었으나 私의 地主의 경우(私田의 경우)에는 結局 50%에서 固着되었다.

“光宗二十四年十二月判 陳田墾人 私田則初年所收全給 二年如與田主分半 公田限三年全給 四年始依法收租”<sup>(20)</sup>

(18) 『三峯集』七 朝鮮經國典 賦典 經理。

(19) 다른 記錄에서도 佃人の 小作料가 50%이었음을 確認할 수 있다. “恭愍王十一年……白文寶 上劄子 貧民歲耕數畝 租稅居半 故不能卒歲而乏食”『高麗史』卷七十九 食貨志二 借貸條。

(20) 『高麗史』卷七十八食貨志一田制租稅條。同一資料에 陳田開墾의 경우 初年에는 〈租稅〉〈小作料〉가 減免되거나 25%부터 시작되지만 점차 上昇하여 畢竟 小作料率이 50%로 固着됨을 알 려주고 있다. 例컨대 “睿宗六年八月判 三年以上陳田 墾耕所收兩年全給佃戶 第三年則與田主分半 二年陳田 四分爲率 一分田主 三分佃戶 一年陳田 三分爲率 一分田主 二分佃戶”『高麗史』卷七八 食貨志一 田制租稅條。

그러나 當時에 있어서도 私的 地主에 隸屬된 《佃人》外에 自占自耕하는 農民層이 있었음은 물론이다. 그들은 身分의으로는 良人이었으며 私的 地主에 對하여는 直接的 隸屬關係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相當히 自由로운 一種의 自作農의 性格을 가지고 있었으나 封建國家(또는 國王)에 對하여는 從屬的인 地位에 있었다. 그들은 國家에 對하여 租稅를 納付하고 兵役과 各種貢負를 納付할 義務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租稅額은 小作人(佃人)의 小作料에 比하여 훨씬 가벼운 것이었고 代表의 경우로서 보통 25%程度에 該當하는 것이었다고 推定된다.

“成宗十一年判 公田租四分取一”<sup>(21)</sup>

때때로 仁政을 표방하기 위하여 王朝에 따라서는 九分之一稅나 十分之一稅를 規定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이는 名分에 不過하였고 實際의으로는 25%를 下迴하는例는 많지 않았던 것 같다. 여기서 이 良人農民層의 社會的地位는 自營農民인가 農奴인가의 問題가 發生한다. 그들은 奴婢와는 전혀 다른 良人이었으나 封建國家와 國王에 對해서는 身分의 規制를 받았으며 높은 意味의 半農奴의 地位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러나 《佃人》과 같은 本來的 農奴는 아니었다. 이러한 良人農民層도 強豪들의 土地兼併에 따라 《佃人》으로 没落하여 갔으며, 鄭道傳은 이러한 現象을 慨嘆한 것이었다.

李朝建國期의 田制改革은 이러한 封建的 大土地所有者의 土地兼併을 撤廢 沮止하고 科田法을 實施하여 土地國有의 原則를 確認하였다. 全國(咸鏡道 除外)에 《量田》(土地調查)을 行하여 이를 登錄케 하고 舊來의 土地文書를 燒却하는一方 紿田都監(1390年)을 設置하여 王室과 貴族, 各官廳에 對하여 登錄된 土地의 一部의 《收租權》<sup>(22)</sup>을 分給하였다. 이 分給地가 《科田》이며 이 科田은 京畿道내에만 設置케 하고 地方에는 《軍田》을 設置하여 地方의 中小兩班들에게 《收租權》을 分給하였다. 물론 이 收租權은 一代에 限定하여 分給하고 世襲이 許諾되지 않으며 死亡後는 國家에 返納함을 原則으로 하였다.

그러나 이 科田法의 原則은 實際의으로 貫徹되지 않았다. 國家는 最高位貴族層의 貴族身分의 永久的 保障을 위하여 《科田》以外에 收租權의 世襲을 認定하는 《功臣田》《別賜田》等의 土地를 分給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功臣田》《別賜田》等의 收租地分給은 功臣을 연이어 만들어냄에 따라 量的으로 激增하였을 뿐 아니라, 그 世襲의 性格에 基礎하여 收租權이 점차 所有權으로 發展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科田》《軍田》의 收租權도 一

(21) 『高麗史』卷七八 食貨志一 田制租稅條。

(22) 高麗·李朝量 通하여 原則의으로 〈租〉는 地代를 〈稅〉는 地稅를 意味하고 있다. 後期의 兩班 貴族들의 土地私占이 支配의으로 되자 〈租〉와 〈稅〉는 區分할 必要가 없게 되고 農民들 사이에서도 混同되어 使用되었으나 엄밀한 意味에서 이것은 區分되는 것이며 〈收租權〉은 〈地代收取權〉을 意味하고 있다.

代後에 返納되지 않고 事實上 廣範圍하게 世襲되면서 所有權으로 發展되기 시작하였으며, 農民을 小作農化하여 다시 《地主-小作制度》를 發展시켰다.

이러한 傾向을 阻止하기 위하여 世祖는 1466年 科田制를 廢止하고 《職田制》를 實施하였으며 1470年에 成宗은 職田制를 改編하였다. 이 制度는 收租權의 行使를 直接 受田者에게 一任하지 않고 國家가 이를 代行하여 租稅(地代와 地稅)를 徵收한 다음 現職官僚에 限定하여 그 該當數量을 國庫에서 支給하는 一種의 《俸祿制》를 實現한 것이었다.

그리나 이 職田制는 곧 虛構化되어 버리고 現實的으로 強力하게 實施되지 못하였다. 그 가장 重要한 理由는 國庫의 潤渴에 있는 듯 하나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研究가 되어있지 않고 記錄上으로는 16世紀에 이미 職田制가 廢止되었음을 確認할 수 있을 뿐이다.

職田制가 事實上 消滅되고 中央集權的 權力이 急激히 弱化되자, 從來의 收租權者는 더 옥 急激히 土地兼並을 進行하면서 私的 地主制度를 發展시켰다. 17,8世紀에 이르면 世間에서 《並作》이라고 부르는 封建的 地主小作制度가 이미 支配的인 土地制度로서 展開되었다. 茶山 丁若鏞의 研究는 18世紀末의 私的 地主制度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傳해 주고 있다.

“南北異俗 凡種稅 或田主納之 或佃夫納之 牧唯順俗而治 俾民無怨. 畿內湖西 割稻之日 遂即打稻 當場平分 故田主別無所失 南方 割稻了 布之田間 風曬二日 納禾于佃家 積爲高歷廩 及至深冬 佃家聚男婦 竹管鐵股夾而軋之 乃分其稼 故田主無以察奸斯其情 有不同也. 其種子稅米 北方皆田主出之 南方皆佃夫出之 所以然者 打稻之法 既殊 又其禾稈 北方主客均分 南方佃客全吞 故種稅如是也. 然 凶年饑歲 佃客盡食其禾 不出種稅 則田主替受官督 自納其稅 田主居遠 則一斗之稻 禾見分送 而唯稅米是納 故凶年 富民多破家 咎以是也. 論以天地公理 農夫耕此王土 九一之稅納于王倉 食其餘八 無復侵者 是古法也. 游閒之土 廣置田地 使民耕作 收其什五者 並與 王稅而責於佃客 可乎. 余始至南方 聞此大驚 久而相習 亦有辭也. 北方土瘠 或種一而穫十 或一而穫廿 勞多而利少 其可憐者 佃客也. 南方反是 不唯打稻 分稈之法 南北不同也”<sup>(23)</sup>

이 記錄에 의하면 《田主》(地主)는 《佃夫》 또는 《佃客》(小作人)으로부터 50%의 現物地代를 徵收하는 것이一般的이며, 小作料徵收方法은 打租法(打稻)이 支配的이나 그 内

(23) 丁若鏞『牧民心書』卷五, 十一頁. 茶山은 同書에서 小作農의 租稅納付方法의 南北慣行의 差異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論하고 있다. “南北之俗 又有不同者 北方今年之稅 出於今年之禾 南方則不然 甲子之佃張三 盡食甲子之禾 退而不耕 則乙丑之佃李四 預於甲子冬作夫之日 以李四之名 載於稅案 歲初開倉自納稅米 乃耕乙丑之田 此又違理之甚者也. 試問其故曰初年始入之時 旣納不食之稅 故末年退出之時 不納旣食之稅 其言雖若有據 亦弊俗也. 初年始入之時 穀價至賤 斗米不過廿錢 末年退出之時 穀價至貴 斗米或直百錢 當此之年 盡食其禾 不稅而退 可乎” 同 十二頁.

容은 地方에 따라서 相異하다고 한다. 京畿道 忠清道에서는 채취한 그날에 打作하여 即席에서 小作料를 徵收하나 全羅道(南方)에서는 小作人이 이를 「露積」을 쌓았다가 深冬에 打作하여 小作料를 納付한다. 또한 地稅와 種子는 京畿道 忠清道에서는 이를 地主가 負擔하고 벗짚을 均分하면서 50%의 小作料를 徵收한다. 그러나 全羅道(南方)에서는 地稅와 種子를 小作人이 負擔하고 벗짚은 모두 小作人이 取得하면서 地主는 50%의 小作料를 徵收한다고 指摘하고 있다.

茶山 丁若鏞은 그의 上疏文에서도 이러한 南北의 小作慣行의 差異를 거듭 밝히면서 富彊之民이 土地를 《兼並》하여 《地主小作制度》를 더욱 擴大시켜나가고 있음을慨嘆하고 있다. 茶山은 指摘하기를 元來 土地에 대한 主人은 國王과 耕作農民의二者가 있을 뿐인데 富彊한 者가 土地를 兼並하여 《租》(地代)를 《私輸》하게 되어 土地에 三主가 있게 되고, 農民은 王稅以外에 私租의 負擔을 짊어지게 되었음을 들고, 官廳이 徵收하는 《地稅》는 法制上 總生產量의 約 二十分의 一에 지나지 않은 가벼운 것이나 小作制度가 形成된 土地에서는 私的 地主의 收取地代 即 《私門之租》는 50%(什取其五)이며 民困國貧의 모든 原因이 이 非常한 小作地代에서 말미암은 것임을 指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所謂 貢物과 各種負擔에 있어서도 雜多한 名稱의 徵歛이 行하여져서 結局 그것이 生產量의 十分의 五에 達하고 있음을 指摘하고, 私的 地主가 50%의 地代를 徵收하고 官廳도 50%를 徵收하면 《佃夫》(小作農)는 무엇을 가지고 生活을 營爲할 것인가를 묻고 있다. 뿐만 아니라 京畿道地方에서는 私的 地主가 50%의 地代를 徵收할 때 地稅와 種子를 地主가 負擔하므로 實際의 分配比率을 計算하면 小作人이 많게 되어 오히려 可하다 하겠으나 湖南地方에서는 地主가 小作人으로부터 50%의 地代를 徵收하는데도 不拘하고 地稅와 種子를 小作人이 負擔하므로 小作人이 地主에게 50%의 《私門之租》를 納付한 後에 나머지 50%中에서 다시 地稅와 種子를 除하면 小作人에게 남는 것은 얼마나 되는가로慨嘆하고 이러한 小作慣行의 改革을 強硬하게 主張하고 있다.

“臣 竊湖南之俗 租與種子皆佃夫出之 臣 以爲此俗當禁也。臣 伏唯天地生物之理 至公大慈一視同仁 岂欲使百夫殫力 以肥一夫哉。臣請辨其本而言之 臣嘗謂田有二主 其一王者也 其二佃夫也 詩云普天之下 莫非王土 王者其主也 詩云雨我公田 遂及我私 佃夫其主也 二者之外又誰敢主者哉 今也 富彊之民 兼並唯意 王稅之外 私輸其租 於是 田有三主矣。在昔殷周之制民不遇什一 然而上之視民 獨衷矜惻怛 若將不保 見於詩 著於禮典若使殷周之君 來視此法 未有不涕泣傷恫 而其民視之 未有不謂作惡 載耒耜而走者 此 後世農夫之困於前古者也。私門輸租 雖一粒半菽 猶爲無義 況我東立制 困循陋俗 縣官之稅 大約二十取一 仁於三代之法 遠

矣 何乃私門之租 什取其五哉 民困國貧 上下匱竭 皆比故也。其制唯正之供 雖若是涼 而州縣事例 在在不同 若所謂雇馬貢竹之類 名號猥雜 不可勝數 徵歛無藝 皆督佃夫 守令視爲故常 御史莫之舉劾 名雖絳法 其實亦什五也 私輸其五 官歛其五 佃夫何食哉 此 我東農夫之困於中國者也 京畿諸路 私門之租 雖取其半 王稅穀種 皆田主出之 計其實食 佃夫蓋多 此獨可矣。今比湖南之俗 田主既領其半 無不高枕而臥 佃夫既失其半 又就留半之中 除其穀種除其稅米 左割右削 餘者幾何 此湖南農夫之困於諸路者也。”<sup>(24)</sup>

또한 茶山의 이 資料는 當時湖南地方의 地主, 自作農, 小作農의 分布 比率에 관한 貴重한 統計的 事實을 알려주고 있다. 即 土地를 小作주어 地代를 收取하는 『收其租者』인 地主는 不過 5%이고 『自耕其田』하는 自作農은 25%이며, 土地를 小作하면서 地代를 地主에게 納付하는 『輸之租者』인 小作農이 70%에 達하고 있음이 判明되고 있다.<sup>(25)</sup> 舊小作制度를 改善한다면 70%의 小作農은 모두 踊躍抃舞할 것이고 25%의 自作農도 恤貧의 뜻에서 즐거워할 것인즉 改革의 支持者は 95%이고 憶然不樂하여 反對할 者는 5%라고 推算되고 있다.

「今計湖南之民 大約百戶 則授人田而收其租者 不過五戶。其自耕其田者 二十有五。其耕人田而輸之租者 七十。今若改其舊俗 令同諸路 則是七十者皆踊躍抃舞矣。其二十有五 雖甘苦不干然 人道惡盈 大抵忌富而恤貧 亦在樂中。其悵然不樂者，不過五人耳 畏五人之悵然 不敢爲九十五人踊躍抃舞之政 孰謂王者操化權哉、易曰 不耕穫，不菑畲。孔子曰 不耕穫 未富也。今之田主 即所謂耕穫者也。穫而未富 乃其本分 顧使之富強如彼哉，臣 見湖南之俗 刈而不打，收入佃夫之家，或越日踰旬而後 始乃打落。故富民之言曰 佃夫竊食者多 其輸王稅 固當。此 又奸言也，臣 小也鄙賤 嘗監刈於京畿之田矣 田夫之鼠竊狗偷，其竇瑣小，奚獨湖南爲然 翳穠不歛寡婦之利 彼拱手而收田租者，乃敢爭此利於農夫乎。臣嘗讀宋蘇洵之衡論曰 富民輸租 亦以其半 不若周之民 以其全力而供之 由此觀之，中國之法 亦田主輸租也嗟乎 佃夫一年農 不過種六七斗耳 輸其私租償其還穀 歲末卒而饑已久矣，從何處辦此王稅哉 織棉布以應之而已 其或疾病死亡 未及公期 則賣鍋粥犧 景色淒慘。爲民父母 如之何其任之。詩云，哿矣富人 哀此勞獨，夫授人田而租之者 大抵是富人也。抑強扶弱 仁人之政 殿下何慮而不爲哉 臣 願 殿下 俯詢廟堂 亟令道臣 嚴立科條 自今租與種子 皆令田主出之 其有暗地私 受操縱田土

(24) 丁若鏞『詩文集』文，第一集 卷九 六十頁。

(25) 丁茶山이 여기서 指摘하고 있는 70%의 小作農에는 純小作農 뿐만 아니라 自作兼小作農도 包含되어 있는 것이라고 推定된다. 即 部分的으로 봄과 小作關係으로 轉落하여 地主에게 『租』를 納付하는 農民의 比率이 當時湖南地方에 約 70%이었다고 茶山은 推計한 것 같다. 茶山이 여기서 『佃夫』가 70%이라고 하지 않고 『輸之租者』가 70%이라고 한 것은 이리한 理由에서가 아닌가 생각된다.

之權者 別加廉察 置之重辟 則南土之民 庶幾息肩而望蘇矣。”<sup>(26)</sup>

茶山은 그가 觀察한 湖南地方의 小作農의 悲慘한 生活狀態를 慨嘆하면서 95 %의 農民(小作農과 自作農)이 支持하는 改革을 國王이 무엇이 두려워 施行하지 못할 것인가고 그 強力한 改革을 促求하여 上疏하고 있다.

18世紀末에 있어서의 土地所有制度는 물론 茶山이 여기서 指摘하고 있는 私的《地主小作制度》가 唯一한 形態는 아니었다. 《並作》이라고 불리운 이터한 形態外에도 主로 公田에서는 《賭租》 《賭地》等으로 불리운 小作形態도 있었고 《支定》 《執穗》等으로 불리운 小作形態도 여기에 包含되어 있었다. 이 時期의 特徵的인 事實은 全國土地에 대한 國家의 全般的 所有權의 觀念이 完全히 消滅되다시피 되고 各身分層이 이 時代의 唯一한 生產手段인 土地에 對하여 各各 獨自의 私有權을 發展시켜나간다는 事實이다. 이 時代의 國家와 王室은 全國土地에 對한 所有權을 貫徹시키지 못한 代身 特定한 王室所有土地와 國家所有土地를 發展시키며, 貴族層은 本來의 收租地를 그들의 所有地로 發展시키고, 收租權의 介在없이 農耕하던 良人農民層은 그들의 土地에 農民的 土地所有權을 發展시켜나갔다. 뿐만 아니라 小作農(《佃戶》 《佃夫》 《佃人》)까지도 自己의 《借耕》하는 耕作地에 對하여 耕作權을 發展시켜 借耕地를 世襲시켰다. 특히 《佃戶》가 《田主》의 所有地를 開墾하는 경우에는 그들의 耕作權은 地主에 對抗하는 所有權으로 發展하여 世襲과 賣買가 可能하였다. 여기서 注意할 것은 王室이나 貴族層, 또는 良人農民이 그들의 土地에 對하여 私有權을 發展시켰다 할지라도 完全히 耕他的 獨占의 私有權은 確立시키지 못하였다는 事實이다. 王室의 所有土地에 있어서도 그 土地에 있어서의 小作人的 權利를 完全히 逐出하지 못하였으며, 兩班地主의 所有地에서도 그것은 國家의 直接間接의 制限과 밑으로부터의 小作人的 權利에 依한 制限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良人農民의 自耕自占地에서도 그들의 所有는 國家의 直接間接의 制限을 받았음은 물론이다. 要컨대, 그러한 特定土地에서는 王室이나 兩班貴族이나 良人農民層의 所有權이 他制限에도 不拘하고 壓倒的으로 支配的이었다는 意味에서 그러한 身分層의 所有地이었다.

丁茶山이 指摘하고 있는 《地主-小作制度》는 주로 封建的 兩班貴族의 私占 所有地에 있어서의 地主一小作關係를 論하고 있는 것이다, 이 時代에는 이미 이 制度가 모든 土地所有關係의 模型이 되어 丁茶山의 上疏文에서도 보이는 바와 같이 王室所有地나 國家所有地에 있어서도 過去의 低率 《王稅說》은 사라지고 50%의 小作料를 徵收한 《並作半收》의 地

(26) 丁若鏞 『詩文集』 文, 第一集 卷九, 六十一頁,

主制度로 接近하고 있었다. 이러한 面에서는 李朝後期의 土地所有制度는 《地主-小作制度》가 그 原型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特히 注意할 것은 18, 9 世紀의 地主-小作制度는 그 形態가 類似하게 보일지라도 14 世紀高麗末의 地主-小作制度와는 顯著히 다른 内容을 갖추고 있다는 事實이다. 14 世紀의 地主制度에 있어서는 地主는 自己의 奴婢를 《佃人》으로써 耕作시키고 良人이 没落하여 《佃人》으로 될 경우에는 그들을 自己의 奴婢와 同一視하였다. 그러나 18, 9 世紀에 있어서는 私奴婢는 自己主人이 아닌 他人의 土地를 《借耕》하는 일이 많아지고, 特히 良人農民이 没落하여 《佃客》으로 되는 경우에 그들은 전혀 地主의 奴婢로는 看做되지 않았으며 良人農民으로서의 小作農의 地位를 確保하였다. 뿐만 아니라 地主도 반드시 兩班이어야 하는 身分的規定도 貫徹되지 않았다. 이미 地主-小作制度에는 經濟外的強制와 더불어 經濟的關係가 侵透해 들어 왔으며 이것은 이 時期의 地主制度가 封建的 解體過程의 地主制度로서 展開되기 시작하였음을 證明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現象은 當時에 이미 全國의 으로 普及되고 있던 貨幣商品의 流通과 都市近郊을 中心으로 한 商業的 農業의 成長의 影響下에 《地主-小作制度》에 있어서의 封建性分解의 痕跡이 이미 内部에서 徐徐히 成長하기 시작하고 있는 새로운 徵兆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sup>(27)</sup> 물론 當時에 私奴婢出身의 小作農은 地主의 身分的規制를 強하게 받고 있었으나 그 안에서도 이미 變化는 일어나고 있었음을 輕視할 수 없다.

1876 年의 開港後 商品貨幣의 一層의 急速한 流通은 封建的 地主制度 内部에 있어서의 經濟的 關係의 侵透에 큰 作用을 하였다. 특히 東學農民革命의 影響으로 實現된 1894 年의 私奴婢의 革罷는 奴婢解放의 最後의 것으로서 法制의 으로 小作農의 身分的地位를 自由롭게 하였다. 물론 이러한 法制上의 奴婢解放이 地主의 小作農에 對한 經濟外的強制를 即時로 撤廢하는 것은 아니지만, 小作農의 顯著한 地位上昇과 地主制度에의 經濟的關係의 浸透는 強大한 것으로 되고 商品貨幣經濟의 直接的 影響下에 地主-小作關係에 있어서의 經濟外的強制는 더 한층 顯著히 解體되어 나가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 時期의 우리나라 地主制度에 대해서는 우리는 比較的 昭詳한 資料를 찾아볼 수 있다. 商品貨幣經濟의 影響下에 經濟外的強制가 顯著히 解體되는 側面을 除外하고는 地主制度의 다른 側面의 構造는 그나저 顯著한 變化를 겪지 않고 있었으므로 이 時期의 資料를 通

(27) 1801 年(純祖 1 年)에 公奴婢(內寺奴婢)의 革罷가 施行되고 奴婢解放의 關門이 열렸다. 이 時期에 이미 奴婢制는 制度의 으로 崩壞되고 奴婢의 良人化가 實質의 으로 廣範圍하게 展開되었다. 이 奴婢의 社會的地位向上에 先行 또는併行하면서 小作人的地位向上이 역시 廣範圍하게 展開된 것 같다. 이 時期에는 小作農을 〈佃人〉이라고 呼稱키 보다는 〈佃客〉이라고 呼稱한 것도 地主의 土地私有 觀念의 發展과 더불어 小作農이 地位向上과 關聯된 것이 아닌가 檢討해 볼 必要가 있을 것이다.

하여서當時 뿐만 아니라 그以前의 地主制度에 대해서도 이를 推論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當時의 地主-小作制度에 對하여 약간 具體的으로 檢討해 보기로 한다.

1904—5年 日本人들이 植民政策上의 必要에 依하여 그豫備調查로서의 土地農產을 調查한 『韓國土地農產調查報告』를 보면 1905年 以前까지의 李朝封建時代의 地主制度의 内容을 알 수 있다. 이 報告書에 依하여當時의 地主制度의 構造를 보면 다음과 같다.

### (1) 小作料의 徵收方法

『賭租法』과 『並作法』(打作法)이 支配的인 小作料徵收方法이며 때때로 定額法이 있다고 報告되고 있다. <sup>(28)</sup>

#### ① 賭租法, 賭地法, 賭只法

小作料를 미리 協定하여 두고 每年的 收穫量에 關係없이 一定의 小作料를 徵收하는 方法이며, 豊凶에 의하여 小作料를 增減하지 않는 것을 原則으로 하는 方法이다. 이 賭租法에는 두가지 種類가 있었다. 그 첫째는 『頭支定』『執穗』『執租』라고 通稱되었던 것으로서 每年 實地에 가서 作況을 보고 小作料를 定하는 方法이며, 그 둘째는 『定賭地』『永定賭只』『永稅』等으로 불리었던 것으로서 前年까지의 收穫量을 調查하여 미리 小作料를 一定하게 定하는 方法이다. <sup>(29)</sup> 調査者들이 定額法이라고 報告하는 것은 이 賭租法의 둘째의 方法에 包含되어 있었다.

#### ② 並作法 (打作法, 折半法)

每年의 收穫量을 미리 定한 比率 (普通 50%)에 따라 徵收하는 方法으로서, 豊凶에 따

(28) 『韓國土地農產調查報告』 1905, 京畿道, 江原道, 忠淸道編은 小作料徵收方法의 要點을 다음과 같이 報告하고 있다. “小作料徵收에는 두 가지가 있는 바 打作及 賭地가 이것이다. 打作法은 每年 收穫高를 檢查하여 미리 協定한 率에 의하여 收穫物을 分割하는 것으로서 그 率은 二分의 一 또는 三分의 一等이 있을지나 二分의 一率을 가지고 通常으로 한다. 賭地에 조금 行해 짐을 보는 賭地法이란 미리 小作料를 協定하여 두는 것으로서 年의 豊凶에 의하여 小作料를 增減하는 일이 없다. 田(畑)地에 대하여 가장 많이 行해진다. 前者에 比하면 打作하는 難雜이 없기 때문에 經理院及 宮家所屬의 土地는 大概 此法을 採用한다.” p. 502. 同報告書의 慶尙道, 全羅道編은 다음과 같이 報告하고 있다. “一. 賭租(도지) (三分法), 收穫高의 三分之一을 地主가 徵收하고 租稅 種子 耕作費等은 모두 小作人이 負擔한다. (물론 變形된 方法도 있다) 二. 並作(어우리) 또는 打作(折半法), 種子及 租稅를 地主와 小作人이 折半 負擔으로 하여 收穫高(粒及 糜 함께)를 折半으로 한다. (물론 變形된 方法도 있다.) 三. 定額法, 小作料를 豊凶에 不拘하고 一定으로 한다. 實際 널리 行해지는 것은 分益法 即 (一)及 (二)이다.” p. 446. 同報告書의 黃海道編, 平安道編, 咸鏡道編은 小作料徵收方法으로서 刈分法을 들고 있는데 이는 小作料를 脫穀前 刈分으로 徵收하는가 脫穀後 穀分으로 徵收하는가의 區分으로 여기서의 徵收方法의 種類와는 次元이 다른 것이다. 이 報告書의 調査者들은 打作法과 刈分法을 混同하여 同一視하고 있는 것 같다.

(29) 『韓國土地農產調查報告』 慶尙道, 全羅道編, pp. 446—447 參照. “그 중 賭租의 法은 簡便하기 때문에 大地主의 所有地에서 많이 使用되었으며, 特히 遠隔의 地에 在하는 地主는 거의 此法에 依하였다. 그리하여 그 分收額은 每年 實地에 가서 相互 協定하는 것이다. 然이나 많은 地主에게 있어서는 〈秋收記〉라고 稱하는 前年까지의 收穫量과 分收額을 記錄한 帳簿을 備置하여 概略 그 量을 알 수 있으므로 이것을 가지고 協議함을 例로 한다” 同上.

라 小作料가 増減되었다. 이 方法은 私的地主의 경우에 支配的으로 行해진 小作料徵收方法이었다.

#### ④ 定額法

調查者들이 때때로 定額法이라고 報告하고 있는 것은 一般的으로 『도지』로 불리었고, 賭租法의 徵收方法內에 포함되어 있었다. 小作料를 每年 實地에 나가 作況을 보고 定하는 것이 아니라 前年까지의 平均收穫量을 推定하여 豐凶에 關係없이 미리 一定하게 固定시키는 方法으로서 賭租法의 둘째의 形態이었다.

#### (2) 小作料率

小作料率을 小作料徵收方法에 따라 區分하여 보면 並作法은 50%가 支配的이었고 때때로 三分의 一(33%)의 경우도 있었으나 매우 稀貴하였다고 한다. 賭租法은 三分의 一의 경우와 二分의 一의 경우가 있었다고 하나 三分의 一보다는 二分의 一이 더욱 많았던 것 같다. 그러나 賭租法에 있어서는 三分의 一의 경우도 많았으며, 並作法보다 全般的으로 小作料가 低率이었다. 全體的으로 볼 때는 小作料率은 1/3—1/2 사이에 分布되어 있었으나 二分의 一이 가장 支配的인 形態였다고 볼 수 있다.

小作料率은 또한 地稅와 種子를 地主와 小作人の 어느 便이 負擔하는가에 따라 差異가 있었다. 小作料率이 三分의 一인 경우에는 地稅 種子 耕作費는 全部 이를 小作人이 負擔하고, 小作率이 二分의 一인 경우에는 地稅는 地主가, 種子와 耕作費는 小作人이 負擔하는 것이 支配的이었으나, 이외에도 그 方法은 各樣各色이었다.<sup>(30)</sup>

#### (3) 小作料形態

小作料의 物納・金納別 形態는 物納의 大部分이었고 金納도 存在하였으나 微微하였다. 當時의 地代形態는 現物地代가 支配的이었고 貨幣地代는 宮庄土 驛屯土等 國有地를 中心으로 하여 部分的으로 成長하고 있었다.

#### (4) 小作管理

地主는 小作管理를 위하여 『마름』(舍晉)을 各地에 두어 小作地를 代理管理케 하고, 『마름』에게 小作地를 紿與하거나 또는 그外 若干의 報酬를 紿與하였다. 때때로 『舍晉』외에 『打作官』이라는 것을 두는 경우도 있었으나 『舍晉』과 같이 多數를 두지 않고 一地主에 一人 내지 二, 三人을 두어 平常時에는 地主家에 寄食하거나 또는 臨時로 雇傭되었으며 秋收期에 『舍晉』의 있는 곳에 가서 作況을 調查하고 收穫量을 檢查하여 收穫物을 處分하는 일을 맡았다.<sup>(31)</sup>

(30) 『韓國土地農產調查報告』京畿道, 忠淸道, 江原道編 pp. 502—508. 同 慶尙道, 全羅道編, pp. 447—458. 同 平安道編 p. 181. 同 咸鏡道編 pp. 147—148. 參照.

(31) 『韓國土地農產調查報告』京畿道, 忠淸道, 江原道編, p. 501.

### (5) 小作契約

小作契約은 成文으로 하는 것은 小數이었고 大部分 小作人이 地主 또는 舍晉과 直接口頭契約으로 하였다.

### (6) 小作期間

小作期間은 一般的으로 미리 定하는 例는 드물고 小作料를 意納하지 않는 限 無期限持續되었다.

### (7) 小作人의 地位

地主와 小作人の 關係는 完全히 自由로운 契約關係가 아니라 때로는 身分的 規制를 받은 主從關係의 延長의 形態로 보이었다.<sup>(32)</sup> 小作人の 地主에 對한 隸屬的 地位는 小作人이 良人出身의 農民인가 奴婢出身의 農民인가에 의하여 差異가 있었다. 奴婢出身의 小作人은 地主에 의하여 많은 身分的規制를 받았다. 그러나 이 時期에는 이미 經濟的 關係가 小作制度에 強力하게 浸透하여 있었으며 奴婢出身의 小作農의 地位도 漸次 上昇하고 있었다.

다음, 舊韓國政府 度支部司稅局에서 各地方財務監督局을 通하여 小作慣例를 調查해서 1910年에 發表한 ①「小作慣例調書」② 同年 度支部刊行「土地調查參考書 第二號」③ 度支部調查部刊行「小作農民에 關한 調查書」等의 調查結果를 綜合 整理하여 보면 李朝時代最後의 地主制度의 構造는 다음과 같다.

#### (1) 小作料의 徵收方法

《賭租法》《打作法》《定賭法》의 세가지 方法이 支配적이었다.

賭租法 : (賭地法 賭支法 賭作法)

賭地法에는 크게 나누어 두가지 方法이 있었다.

첫째, 每年 作物이 成熟한 後刈取前에 地主가 《看評人》을 派遣하여 小作人立會下에 作況을 調査하고 그 收穫豫想量을 推定하여 小作料를 定하는 方法이다. 따라서 小作料率은 一定하여 있으나 小作料額은 豐凶에 따라 變動하였다.<sup>(33)</sup>

둘째, 豐凶에 關係없이 미리 小作料額을 定하여 一定의 小作料를 收納하는 方法이다. 이 方法이 小作料額을 定하는 標準은 ⑦ 平年作을 標準으로 하는 方法(여기에는 《定賭法》이라고 하여 長期間에 걸쳐 每年 一定 不變의 小作料를 收納하는 方法과 每年耕作을 시작하기 前에 前年까지의 平年作을 標準으로 하여 決定하는 方法의 두가지 경우가 있었다)<sup>(34)</sup>

(32) 『韓國土地農產調查報告』京畿道, 忠淸道, 江原道編. pp. 258—260. 및 p. 501.

(33) 度支部『土地質調查參考書』第三號 pp. 95—97.

(34) 이 中에서 《定賭法》이라고 하는 長期間에 걸쳐 每年 一定不變의 小作料額을 徵收하는 方法은 當時 《定賭法》《永賭法》《永定賭支》等으로 불리워이며 定額法의 原型으로서 이는 土地調查事業以後에 定額法으로 分化하여 展開되었다. “其의 一은 每年 一定不變의 小作料를

◎ 土地의 賣買價格을 標準으로 하는 方法,<sup>(35)</sup> ◎ 土地의 面積을 標準으로 하는 方法等이 있었다.<sup>(36)</sup> 이 중에서 ◎과 ◎은 特例에 不過하고 ⑦의 平年作을 標準으로 하는 方法이 가장支配的이었다.

이러한 賭租法은 打作法보다는 普遍的이 아니었으나 地域別로는 金羅道에 比較的 많이 分布되어 있었고 다음 慶尙道에 많았으며, 其他地方에서는 주로 小作地를 遠隔地에 둔 大地主가 이 賭地法을 採用하였고 그 외에는 이 方法을 採用하는例가 적었던 것 같다.

여기서 注目할 것은 이 賭租法에는 그 内容에 있어 區分하여야 할 두가지 方法이 混淆되어 있었다는 點이다. 小作料<率>만 一定不變하게 하고 小作料<額>은 每年 收穫直前에 看評하여 既定 小作料率에 따라 小作料를 徵收하는 方法과, 小作料<額>을 豐凶과 關係 없이 每年 또는 長期間에 걸쳐 一定不變하게 決定하여 徵收하는 方法은 그 自體가 相異한 要素를 內包하고 있는 것이다. 前者는 비록 收穫豫想量을 推定하여 小作料를 決定한다고 하나 年年의 豐凶에 따라 小作料<額>이 變動하므로 오히려 打作法과 本質的으로 接近하는 것이었고, 後者는 小作料<額>을 豐凶과 關係 없이 固定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定租法>으로 分化 發展할 性質의 것이었다. 이러한 異質的인 小作料徵收方法이 하나의 <賭租法>内에 混淆되어 있었던 理由는 歷史的으로 그 起源이 同一한 種類의 土地와 地主에게서 行하였기 때문이라고 理解된다. 즉 貴族層의 私的 地主가 收租權을 가지고 있던 小作地에서는 주로 並作法(小作法)이 行해진 反面에 王室이 收租權을 가지는 土地나 또는 公田이라고 規定된 官廳이 收租權을 가지는 土地에서는 高麗·李朝를 通하여 收穫豫想值, 또는 平年作의 1/4~1/3을 地代로서 收取하는 方法이 支配하였는 바 이것을 統一的으로 <도지><賭地><賭只><賭租>라고 命名한데서 發生한 것으로 理解된다. 물론 官紀의 解弛에 따라 公田에 있어서도 <租稅>(小作料와 地稅)가 1/4을 輛씬 넘어 私田과 같이 50%에 接近하지만 全般的으로 賭租法의 경우가 打作法 보다 小作料도 低率이었던 것은 이러한 歷史的 發生過程에서 말미암았던 것이라고 본다.

---

納付하는 것으로서 이를 定賭法 永賭法 又는 永定賭支等으로 稱한다. 此方法은 주로 驛屯及 宮土에 行하여지며, 民有地의 경우는 地味良好하고 또 灌溉 排水 交通의 便利가 있고 旱水害의 염려가 없어, 年年의 收穫量에 大差없는 所謂 上畠이라고 稱하는 土地上에 使用되었다. 一般의 土地에 對해서는 此方法에 依하는 것은 稀할지나 宅地의 借地料는 많이 이 方法에 依하여 定하여 진다. 또 田은 畠에 比하여 이 方法에 의하는 것이 많다.”『朝鮮ノ小作慣行』下卷(参考編)『從來ノ朝鮮ノ小作慣行調査資料』p. 105.

(35) 例컨대 “忠淸南道 永同, 黃瀬地方에 있어서 行해지는 것은 例컨대 永同이 賣買價格十圓位의 土地는 그 小作料를 粒八斗로 함을 普通으로 하는 것과 平安道의 一地方에 行해지는 것은 價格百兩(二十圓)에 對하여 穀三斗(韓量)를 徵收하는 것도 있으며, 또는 賣買價格에 對한 一割五分을 徵收하는 것도 있다.” 同上 p. 105.

(36) 例컨대, “平安道의 一地方에 行해지는 것은 下田만이 이를 使用한다. 即 一日耕에 付하여 穀十一斗 乃至 十五斗(韓量)를 徵收한다.” 同上 p. 106.

### 打作法 : (並作法 折半法)

이 方法은 秋收 後에 實收穫量을 既定小作料率에 따라 徵收하는 方法이다. 여기에는 ① 作物을 割取하여 脱穀하기 前에 分配하는 方法 (割分法, 또는 束分法)과 ② 脱穀하여 벼를 徵收하는 方法(穀分法)의 두가지 方法이 있었는데 이中에서 前者は 北部에서 後자는 南部에서 支配의이었다. 이 割分法(束分法)은 小作人이 脱穀過程에서 收穫量을 縮少 報告함으로서 小作料額이 減少하는 것을 防止하기 위하여 地主側이 採用한 方法이다. 賭地法에서는 小作料를 全部 脱穀後의 벼로 徵收하는데 反하여 打作法에서는 割取直後 脱穀前에 束으로 徵收하는 경우가 地方에 따라 支配의이기 때문에 打作法을 地方에 따라 割分法이라고도 하나 正確히 一致하는 것은 아니다. 打作法의 小作料率은 50%가 支配의이었다. 그러나 이 小作料率은 地稅와 種子의 負擔關係와 各地方의 慣行 및 小作契約에 따라 多樣한 變化를 보이었다.

### 定賭法 : (定賭地 永定賭只 永稅法)

이 方法은 대체로 賭租法내에 包含되어 小作人 사이에서 慣習의으로 同一視되어 불리어 져 왔으나 이 무렵에는 따로이 獨立된 徵收方法으로서 展開되기 시작하였다. 度支部 司稅局調查에서는 平安道 地方에서 이를 볼 수 있으며, 土地의 肥沃度에 따라 收穫의 25%—35%를 標準으로 한다고 記錄되고 있다.<sup>(37)</sup>

賭租法과 打作法의 分布比率은 各地方에 따라 差異가 있지만 어느 경우에나 打作法이 優勢하였다. 例컨대 慶尙道地方에서의 賭租法과 打作法의 分布比率을 推定하면 다음과 같다.<sup>(38)</sup>

賭租法	32%	① 一定의 小作料額을 決定하는 것	20%
		① 長期間에 걸쳐 年年 固定된 定額을 徵收하는 것	14%
		② 每年 新耕作初에 一定額을 決定하여 徵收하는 것	6%
打作法	② 收穫前에 作況을 評價하여 收穫豫想量을 推定하고 既定 小作率에 따라 徵收하는 것		
打作法	12%		
打作法	68%		
定租法	賭租法의 ①의 경우		

(37) 度支部『土地調查參考書』第三號 p. 94.

(38) 度支部 司稅局調查에는 調查者가 賭地法과 打作法의 分類中, 後에 執租法으로 展開되는 바의 收穫前에 作況을 調查하여 既定小作率에 따라 小作料를 徵收하는 方法을 賭地法에 포함시키지 않고 打作法에 包含시켜서 다음과 같이 分布比率을 計하고 있다.

“賭地法 十分의 二內, 그 中

① 年年 一定의 額을 地主에게 納付하는 것, 十分의 七

② 其年 耕作의 初에 當하여 當事者 協定에 依한 것, 十分의 三

“打作法 十分의 八內, 그 中

① 收穫前에 그 作況을 調查하여 收穫高量 決定하는 것, 十分의 一.五

② 實收收高에 依한 것, 十分의 八.五”

朝鮮總督府『朝鮮ノ小作慣行』(下卷)(參考編)『從來ノ朝鮮ノ小作慣行調査資料』p. 46. 그러나當時의一般的 分類方法과 農民의 慣行은 이를 賭地法내에 包含시키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가장一般화되었던 이 方法에 따라 上表를 本文과 같이 改編하였다.

## (2) 小作料率

小作料率은 小作料徵收方法에 따라 差異가 있었다.

賭租法에 있어서는豫想收穫量에 對한 小作料의 比率은 1/4 부터 1/2 까지에 分布되어 있었으나 『賭租法』이 『三分法』이라고 불릴 만큼 元來는 1/3 을 名目上 標準으로 하였던 것 같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收穫豫想量은 地主側이 主로 이를 評價決定함으로서 實際 小作料率은 이 보다 上昇하는 것이 普通이었으며, 實際에 있어서는 오히려 그 頻度가 1/3—1/2 사이에 集中되어 있으면서 50%에 接近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賭租法은 打作法 보다 小作料率이 通常 若干 低率이었기 때문에 小作料以外에도 各種 負擔이 賦課되었고, 地稅와 種子도 이를 全的으로 小作人이 負擔하였으며 蕎稈(볏짚)은 小作人이 收得하는 것을一般的인 慣例로 하였다.<sup>(39)</sup>

打作法에 있어서의 小作料率은 最下 1/3의 경우도 間或 있었으나 打作法을 別名하여 『折半法』이라고도 稱할 만큼 거의 全部 50%가 壓倒的이었다. 때때로 地主가 地稅 種子 耕作費를 全擔하고 2/3를 徵收하는 경우도 間或 있었으나 極히 드문 特例에 不過하였다. 打作法의 가장一般的인 形態로는 小作率을 50%로 하여 地稅는 이를 地主가 負擔하고 種子는 小作人이 負擔하였다. 그러나 이 地稅와 種子의 負擔關係는 경우에 따라 매우 多樣하였으며 이것이 實際의 小作料率에도 상당한 影響을 미치었는 바 이제 그 몇가지 形態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sup>(40)</sup>

- ① 地主가 地稅를 納付하고 小作人이 種子를 負擔하여 小作料率을 生產物의 50%로 하는 것.
- ② 地主가 地稅와 種子를 負擔하고 小作料率을 生產物의 50%로 하는 것.
- ③ 小作人이 地稅와 種子를 負擔하고 小作料率을 生產物의 50%로 하는 것.
- ④ 收穫物에서 地稅와 種子代에相當하는 數量을 控除하고 그 나머지에서 50%를 小作料로서 徵收하는 것.
- ⑤ 地主가 栽培物을 指定하고 地稅及 種子를 負擔하여 收穫物의 50%를 小作料로서 徵收하는 것.
- ⑥ 地主가 地稅를 負擔하고 小作人이 種子를 負擔하여 蕎稈 全部를 收得하고, 生產物의 50%를 小作料로서 徵收하는 것.
- ⑦ 地主가 種子를 負擔하고 小作人이 蕎稈全部를 收得하여 地稅를 負擔하고 生產物의 50%를 小作料로서 徵收하는 것.
- ⑧ 小作人の 地稅를 納付하고 種子는 地主와 小作人이 分擔하며, 蕎稈全部를 小作人이 收得하여 生產物의 50%를 小作料로써 徵收하는 것.
- ⑨ 地主가 地稅와 種子를 負擔하고 生產物의 三分의 二를 小作料로서 徵收하는 것.
- ⑩ 地主가 地稅와 肥料를 負擔하고 小作人이 種子를 負擔하여 生產物의 三分의 二를 小作料로서 徵收하는 것.

(39) 同上『從來ノ朝鮮ノ小作慣行調査資料』pp. 46—47 및 p. 106.

(40) 同上『從來ノ朝鮮ノ小作慣行調査資料』pp. 97—98 및 pp. 106—107의 内容을 整理改編.

以上的 열가지 中에서 ①과 ②가 가장 普遍的으로 行해졌고 다음이 ③과 ④이며, 그以下の 特殊한 경우에 不遇하였다.

定賭法에 있어서의 小作料率은 賭租法의 경우와 같다.

### (3) 小作料의 収取形態

小作料는 大部分을 現物形態로서 徵收하였다. 때때로 地主가 小作地를 遠隔地에 所有하고 있어 現物形態가 심히 不便함을 느낄 경우에 또는 地主가 特히 金納을 要求하는 경우 現物形態의 小作料를 當時의 時價로 換算하여 金納하는 所謂 《代金納》이 行해지거나 ernes純粹《金納》이 行해졌다. 貨幣小作料는 주로 官庄土 驛屯土等 王室과 國家收租地에 部分的으로 行해지면서 漸次 成長하여가고 있었다고 理解된다.<sup>(41)</sup>

現物小作料는 普通 各 耕作地의 直接生產物로서 徵收되었지만 그것은 小作料 徵收方식에 따라 약간의 差異가 나타나고 있다. 즉 打作法에 있어서는 生產物을 徵收함에 있어서 土地에서 耕作된 直接生產物을 그대로 徵收하므로 現物小作料의 農產物作目도 多樣한 경우가 大部分이었다. 그러나 賭租法에 있어서는 대체로 그 地方의 主要農產物로써 小作料를 徵收하는 경우가 많았다. 즉 畜에 있어서는 벼(穀), 田에서는 普通 大豆(地方에 따라서는 麥, 또는 粟)로써 小作料를 徵收하였으며, 그 中에는 田畜 모두 벼(穀)로써 統一하는 地方도 있고 또한 黃海道 平安道 咸鏡北道와 같이 粟이 主產物의 地位를 차지하는 方에서는 小作料의 形態로 粟을 採擇하는 경우도 있었다.<sup>(42)</sup>

### (4) 小作管理方法

小地主는 地主가 스스로 小作地를 管理하는 일이 많았으나 中大地主 또는 遠隔地에 小地를 가지고 있는 地主는 모두 《마름》(舍音)을 各地에 配置하여 地主에 代理해서 小地를 管理케 하였다.<sup>(43)</sup> 舍音의 役割은 地主와 舍音과의 約定에 의하여 그範圍가 多樣하게 定하여 졌으나 普通 당시의 舍音의 基本的 任務로서는 ① 小作料의 收納, 保管, 販

41) “小作料는 대개 物納으로써 一般의 價例로 한다. 金錢으로써 하는 경우는 特別의 事由에 基하는 경우이다. 例를 들면 地主와 小作人과의 距離가 遠隔하여 農產物로써 힘에 不便을 느끼거나 또는 地主側이 特히 어떤 事情때문에 小作料인 農產物을 其 時價로 換算하여 金錢으로써 하는 것을 要求하는 경우에 限하거나 한다”『從來ノ朝鮮ノ小作慣行調査資料』p. 83 “韓國에 있어서는 近來 드물게 小作料를 金納하는 경우가 있을지나, 原則으로서는 農產物로써 한다. 金納의 경우는 所定의 小作料를 納付할 때에 있어서의 時價로 換算하여 納付하는 것으로 한다.” 同上 p. 98. “全羅南道光州地方……每年 一斗落에 對하여 上田 四百文乃至五百文, 中田 二百五十文乃至四百文, 下田 百五十文乃至二百文으로 한다” 同上 pp. 47-48. “元山……賭地法에 있어 一定의 土地에 對하여 一箇年若干의 小作料를 定하고 豊凶에 依하여 増減하는 일이 없으며, 어떤 時期에 있어서는 金納하기도 한다. 物納에 比하여 地主의 收利가 적기 때문에 本法에 依하는 것은 甚히 드물다.” 同上 p. 49 等 參照.

42) 同上 『從來ノ朝鮮ノ小作慣行調査資料』p. 83 및 p. 110 參照.

43) 同上 pp. 100-101 〈마름〉의 選定方法은 ① 親族을 選定하는 것 ② 地方의 信用 있는 小地主를 選定하는 것 ③ 小作人中 가장 信用 있는 者를 選定하는 것 (이 경우는 首作人이라 呼稱하였다) 等이 있었다.

賣, ② 小作人の 監督, ③ 小作地의 管理, ④ 租稅代納 等이 基本的인 것이었다.<sup>(44)</sup>

## (5) 小作契約

小作契約은 보통 小作人이 地主 또는 舍晉과 直接 口頭契約으로 定하는 경우가 支配적이었다. 그러나 때로는 地方에 따라서 契約成立後 地主로부터 小作人에 대하여 또는 小作人으로부터 地主에 대해 覺書形式의 文書를 交付하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小作料徵收方法이 賭租法인 경우에는 文書契約이 많이 行해졌다. <sup>(45)</sup>

李朝末期 小作契約文書의 例를 들면 다음과 같다.

① 地主로부터 小作人에게 交付하는 것. 이것을 《牌旨》 또는 《差帖》이라고 稱하였다.

牌旨某處

無他某洞某員所在畝(田)幾斗落庫乙 何洞何某處移作 使之着實耕作事

年      月      日

某宅

差帖某人

某處所在幾斗落 作人汝矣身差定 着實耕作事

年      月      日

畜主 姓名

印

新作人某處

某畠幾斗落을 汝矣處에 移作하니 着實耕作할 事

年 月 日

畠主姓名

印

② 小作人으로부터 地主에게 交付하는 것. 이것을 《支定標》 또는 《賭支票》라고 稱하였다.

## 支定票

右票段 瑟項員 乾番二斗落 猿岩場舊斗十五斗 每年十二月捧上事

支定票主 姓名

印

賭支票

右標段은 田幾日耕(或畢幾斗落)庫을 定賭支起耕而穀幾石機斗을 來秋成後上納의 意如是成票事

賭支標主 姓名

印

### (6) 小作期間

小作期間은 특별히 따로 定하는 일이 없고 小作人은 小作料를 意納하거나 耕作을 현저히 意慢하지 않는限 小作地反還을 要求받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며, 小作人이 小作耕作을 계속할 意思가 있는 동안은 小作關係가 數年 또는 數十年 계속되었고 子子孫孫이 그 關係가 持續되는 경우도 많았다. 그려므로 小作期限 같은 것은 따로이 存在하지 않았고, 一

(44) 「마름」의 報酬는 그 方法과 額數가 地方과 慣習에 따라 各樣하였으나 그 代表의 경우를 들면  
 ① 小作料收納高에 對應하여 그 幾分을 받는 것. (그 比率은 100分의 1乃至 100分의 5를  
 普通으로 하였다.) ② 自己가 小作하는 土地의 小作料의 輕減을 받는 것. 其他 各種의 方法  
 이 있었다. 同上 pp. 115-116 參照.

(45) 同上『從來／朝鮮／小作慣行調查資料』pp. 108—109 參照 pp. 374—375

且 小作關係에 들어가면 小作人이 解約을 要求하지 않는限 또는 小作料를 愈納하지 않는限 小作期間은 無限定 持續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地主가 自由로이 小作을 移動시키지 못하는 것이 支配의었다.<sup>(46)</sup> 小作人이 小作地를 耕作함에 있어서 《耕作權》과 같은 耕作에 對한 一種의 權利가 歷史的으로 成長하여 慣習의 保護를 받고 있었다고 理解된다.

### (7) 特殊小作

封建的 地主制度下의 一般小作關係에서 小作人の 耕作地에 대한 耕作權이 成長하였을 뿐 아니라 地方에 따라서는 特殊小作의 形態로서 小作地에 대한 小作人の 權利가 成長하였다. 地方에 따라서 《原賭地》《中賭地》《禾利番》《並耕》……等 各種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小作關係에 있어서는 小作人은 自己의 小作地에 對하여 地主에 對抗할 수 있는一定의 所有權을 確立시키는 바, 이 小作人の 所有權은 地主의 承諾을 要하지 않고 小作人任意로 他人에게 賣買 讓渡 抵當 轉貸할 수 있었다. 또한 地主가 變更되더라도 小作人은 이 權利를 新地主에 對하여 對抗시킬 수 있으며, 地主가 小作人을 變更하려할 경우에는 먼저 小作人으로부터 이 權利를 貸金을 支拂하고 買收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러한 小作地에서는 小作料率도 대체로 低率이었고 小作人은 小作地를 世襲할 수 있으며 獨自의인 下級所有權을 確立하며 行使할 수 있었다.<sup>(47)</sup>

(46) 同上, pp. 78—79. “韓國에서 小作에는 期限을 付함이 없음은 大要를 前項에서 述한 바와 같다. 賭作法과 打作法을 不問하고 小作人이 小作料를 愈納하든가 또는 過失等이 없는限은 數年數十年을 繼續함을 一般의 風習으로 한다. 그 中에는 地主와 小作人の 關係가 圓滿한 때는 子子孫孫이 그 關係를 持續하는 것도 珍貴하지 않다. 처음부터 一定의 年限을 契約하는 것은 이를 듣지 못했다. ……이와 같이 數年數十年, 數世에 서로 小作關係를 持續하는 것이 적지 않다. 或地方에 있어서는 因襲이 오래어 今日 地主가 小作人을 交送하려 할지라도 小作人等은 祖先의 代부터 此關係 있음을 理由로 하여 容易하게 地主의 意思에 應하지 않는다. 地主가 이를 强行하려고 할 때는 小作人團結하여 該地主의 土地를 耕作하지 않을 것을 約束하여 地主를 困厄시키는 일도 있다. 地主는 드디어 손을 들고 自己의 土地를 自由로이 하는 것이 不可能한 結果를 發生하는 것도 있다고 한다” 云云 및 同上 pp. 109—110 參照.

(47) 小作人이 小作地에 對하여 一種의 所有權을 行使하는 이와 같은 小作關係의 起源은 明白치 않으나, 李朝後期에도 地方에 따라 상당히 廣範圍하게 存在하였던 것 같다. 權利의 發生은 小作人이 地主의 荒蕪地를 開墾하는 경우, 水害豫防을 위하여 小作人이 堤防을 築造하는 경우, 地主가 土地를 買收할 때 地價의一部를 小作人이 負擔하는 경우, 特別한 事情으로 小作人이 小作地에 多大한 勞動力を 投入하는 경우, 小作人이 小作地를 長期間 世襲耕作하는 경우, 其他具體의으로 여러가지 事例에 依據하여 小作人の 耕作權이 所有權의 具體의 形態로 表出된 것으로 理解된다. 李朝末期의 各種 報告書는 이와 같은 形態의 小作關係에 대해서 廣範圍하게 調査報告하고 있다. 例컨대, “《中賭地》는 모두 無期限으로서 아직까지 期限을 定한 것이 있음을 見聞치 못하였다. 그리하여 慣習에 있어서는 苛王 中賭主가 地主에 對하여 義務를 慢히 하지 않는限은 地主가 任意로 그 借地權을 消滅할 수 없다. 만일 地主가 이를 消滅시키려고 바랄 때는 第三者が 中賭主의 權利를 買收하는 것과 同一하게 이를 買收하는 길 밖에 없다. 이에 反하여 中賭主는 何時라도 그 權利를 拋棄할 수 있다. 故로 中賭主는 地主에 對하여 義務를 慢히 하지 않고 또한 地主는 權利의 買收를 하지 않는 以上은 中賭主의 權利는 永久한 것으로서 制限이 없다. 中賭地의 경우에 있어서는 地主가 變更되어도 새로이 所有者로 된 者는 그 中賭主의 權利를 認定할 것을 要하며 中賭主의 權利는 所有者の 變更으로 因

이러한 形態의 小作人의 所有權을 發展시킨 地方과 그 名稱을 들면 다음과 같다.

- ① 平安北道 義州郡 州內面, 古津面, 威化面, 光城面, 古城面……原賭地
- ② 平安北道 龍川郡 楊西面, 楊下面……………原賭地
- ③ 平安南道 大同郡 南串面, 大同江面……………轉賭地(굴도지)
- ④ 平安南道 江西郡 草利面……………轉賭地
- ⑤ 平安北道 中和郡 唐井面, 楊井面……………賭地
- ⑥ 黃海道 凤山郡 ………………中賭地
- ⑦ 黃海道 信川郡 ………………中賭地
- ⑧ 黃海道 載寧郡 ………………中賭地
- ⑨ 黃海道 安岳郡 ………………中賭地
- ⑩ 黃海道 信川郡 川山面……………永稅
- ⑪ 黃海道 安岳郡 安岳面……………永稅
- ⑫ 全羅北道 全州 ………………禾利付畠
- ⑬ 慶尙南道 晋州郡 全谷面……………並耕
- ⑭ 慶尙南道 固城郡 永吾面, 永縣面, 介川面……………並耕
- ⑮ 平安北道 大同郡 南串面……………元賭地

이러한 小作人的 小作地에 대한 所有權은 그 形成過程의 特殊性에 따라 그 細微한 側面에는 각각 内容上의 差異가 있으나 基本的으로 大同小異하고 小作人的 完全한 物權的 所有權으로서 文書를 作成하면서 自由로이 賣買되었다.<sup>(48)</sup>

하여 秋毫도 影響을 받는 일이 없다. 또한 中賭主가 그 權利를 讓渡하는 경우에는 地主는 그 讓渡를 認定하고 讓受人을 新中賭主로 하여 그 權利를 認定하지 않으면 안된다.”『從來ノ朝鮮ノ小作慣行調査資料』p. 31. 이러한 事例는 各地方에서 名稱은 다르나 内容은 대체로 大同小異하게 分布되어 있었다. 이 小作人的 權利의 始末에 대하여 象徵的인 報告句節이 보이므로 附記한다. 「이와 같이 하여 二百餘年間 中賭地의 慣習이 行하여 졌으며, 何人도 怪異하게 생각하는 者가 없었으나 三十年前 丁丑年に 이르러 中賭主가 所有하는 中賭支는 그 半을 武衛營에 上納케 하고 後에 다시 還給시키었으나 翱來 數次例의 變革을 거쳐 隆熙三年에 이르러 此等의 地所는 帝室所有로서 東洋拓殖會社에 移動함으로써 兹에 中賭主의 權利는 全部 消滅하였다.」云云, 同上, p. 32.

(48) 原賭地 賣買文書의 例를 들면 다음과 같다.

#### 原賭地放賣文記

光緒六年庚辰正月初八日

右明文事段 買得賭地一日耕庫 伏在於威化面下端北谷鎮工房荷新堀員 四標段 東尹得華田 南李云白田 西李近浩田 北李秀亨田 四標分明遂如 價折錢文參拾兩 準計捧上是達【右人處 永遠放賣爲去平 日後雜言偶是去等 持此文記 告官卞正事】

鎮工房賭地放賣主 裴時正 ㊞  
筆 白文權 ㊞

#### 中賭支放賣文記

隆熙貳年戊申十二月十六日 畦明女

지금까지 李朝末期의 調查資料를 통하여 當時의 地主制度의 構造를 具體的으로 보아왔으나 日帝下의 地主制度와 比較하기 위한前提로서 여기서 若干의 抽象的 补足을 첨가할 필요가 있다.

李朝時代 地主制度에 있어서의 地代率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小作人の 身分的 地位, 小作料徵收의 方法, 土地의 肥沃度, 小作土地의 種類等에 의하여 差異가 있으며 그 分布는 대체로 25%(1/4)~50%(1/2) 사이에 分布되어 있었으나 가장 普遍的인 地代率의 原型은 50%였다고 推論할 수 있다. 물론 地代率이 歷史의 發展過程에서 變動하는 推移를 볼 수 있으며, 開墾地 公田 賭地法 小作地 等에서의 地代率이 25%(1/2) 또는 33%(1/3)로 法制上 規制된 경우도 看過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各種의 役貢納租稅가 이에 附加되었으므로 實際의 地代率은 이보다 훨씬 上昇하였음을充分히 認知할 수 있다. 勞動地代나 各種의 賦課가 生產物地代에 統一되어 있던 가장 支配的인 私的 兩班地主의 小作地에서의 地代率이 50%였다는 事實은 그 以下の 地代率이 存在하는 경우에 그 差額만큼 다른 形態의 賦課가 加重되면서 결국 이 私的 地主에 있어서의 50%의 地代率에 事實上 強力히 接近하는 内部的 運動을 發現시켜갔다고 推定할 수 있다.

또한 여기서 注目할 것은 李朝末期의 通常的 地代率 50%는 地代率의 上限이었다는 事實이다. 물론 地代率이 50%를 上廻하는 경우도 있었으나例外의이고 잘 찾아볼 수 없다. 李朝時代의 地代率의 上限이 50%로 되게 한 것은 무엇보다도 耕作農民의 剩餘生產物이 總生產物의 50%를 上廻하지 못하는 當時의 農業生產力의 發展水準과 關係되어 있는 것 같다. 當時 肥沃度가 낮는 地域에 있어서는 剩餘生產物이 50%에 未達하였기 때문에 封建地主들은 이 地代率을 適用시키지 못하고 名目上으로는 여하튼 實際로는 地代率이 그 以下로 下廻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도 많았다.<sup>(49)</sup> 그러나 어느 경우에도 그 地代率은 剩餘生產物의

---

右明文事段 移賣次 伏在星內圓內 李泰健處所畠人斗落庫 四標段 東西浦 南李仁學畠 北金斗宗畠 標內庫 中賭支 價折錢文 貳百拾陸兩 論定掉上是遺 日後若有雜談 則以此文記憑考事

放賣畠主 崔承鉉 ㊞  
訂 趙昌憲 ㊞  
李圭煥 ㊞  
筆 朴秀榮 ㊞

이 中賭地의 賣買價格은 權利의 成長度에 따라 差異가 있으나 總土地價格의 三分의 一 程度까지 이르렀던 것 같다. 例컨대, 義州郡 威化面의 경우,

- ① 賭地權이 附着되지 않는 土地……一日耕(約二千坪)……600 圓
- ② 賭地權이 附着된 土地……一日耕……400 圓
- ③ 賭地權……一日耕……200 圓

同上. p. 389. 他地方에 있어서도 中賭地의 賣買價格은 地價의 四分의 一을 上廻하는 것이 大部分이다.

(49) 新規開墾地나 陳田開墾의 경우에 經國大典에 初數三年은 地代徵收를 中止시키고, 一定期間後 地代率을 1/4, 1/3, 1/2.로 上昇시켜가도록 規定한 것은 開墾 嘉勵를 위한 政策도 있지만 開墾地의 農業生產力의 低水準이 物理的으로 地代率의 低下를 規制하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全部에 該當하며 必要生產物까지 침범하는 것이었음은 茶山 丁若鏞의 慨嘆에서도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再言을 要치 않는다.

李朝封建時代의 地主制度에 있어서 全羅道地方과 같이 肥沃한 地方에서는 이 地代率以外에 小作人이 租稅公課를 負擔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全國的으로 50% 地代率을 適用하면서 租稅를 小作人에게 轉稼하는 경우는 廣範하지 않았다. 租稅를 轉稼할 경우는 賭地法에서와 같이 小作料率이 33%를 原則으로 하여 低下하는 것이 支配적이었다. 그러므로 이 時代의 典型的인 並作法에서의 小作料는 純粹한 地代와 一致하며, 地代率은 그 上限을 50%로 하고 그에 固着되는 内部的 性向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地主는 國家이든 兩班地主이든 農民으로부터 이를 經濟外的 強制와 經濟的 強制의 結合에 依하여 小作料를 収取하였다. 李朝前期의 小作人中에는 身分의으로 没落한 良人이 包含되어 있었지만 그 大部分은 奴婢出身의 隸屬의인 農奴이었으며 國王과 兩班地主는 小作人을 身分의으로 規制하였다. 그러나 이 身分의 規制는壬辰倭亂을 轉換點으로 하여 後期에는 弱化되기 시작하고 良人農民이 没落하여 小作農化하는 傾向이 增加함에 따라 小作農의 地位가 점차 上昇하였다. 《佃客》은 반드시 奴婢로 看做되지 않았으며 小作關係에 經濟的 關係가 強力히 浸透하였다. 經濟外的 強制는 李朝末期 1894年의 甲午更張에 의하여 法制의으로 철폐되지만 그때까지 土地와 小作人을 完全히 所有하지 못한 地主가 小作人으로부터 50%의 高率地代를 収取하는 主要한 手段이었으며, 甲午更張以後에도 이러한 經濟外的 強制는 弱化되기는 하지만 經濟的 強制와 結合하여 如前히 殘存하였다.

지금까지의 考察에서 明白히 되는 것은 李朝末期地主制度에 있어서의 小作料의 地代範疇가 封建地代이며 地主는 農奴的 狀態의 小作人으로부터 50%의 現物地代를 収取하는 典型的 封建地主이었다는 事實이다. 물론 李朝後期의 商品貨幣經濟의 成長과 開港後의 더욱 急激한 商品·貨幣流通의 農村浸透는 이러한 封建地主制度의 解體를 刺戟하였지만 그것은 舊韓末 各種 報告書의 調査資料를 통하여 確認한 바와 같이 解體過程에 들어가 있었을 뿐, 아직도 封建的範疇의 地主制度이었다. 이러한 狀態에서 解體process에 들어간 封建的 地主制度는 1910年 우리 나라를 日本이 植民地化함으로써 直接的으로 日本의 植民政策의 影響下에서 그 解體process의 持續과 方向이 決定되었다. 이 日本의 植民政策의 第一次的 影響은 1912年부터 시작된 土地調查事業에 의하여 주어졌다.

## 2. 土地調查事業의 影響<sup>(50)</sup>

土地調查事業은 日帝가 1910年 우리 나라를 完全히 植民地로 強占한 後 日本資本의 土

(50) 土地調查事業에 대하여 筆者は 이 論稿와는 別途로 論文을 準備하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本稿의 展開에 必要한 部分만을 극히 간단히 指摘하는데 그친다.

地占有의 開放과 植民地體制의樹立을 위한 綜合政策으로서 日帝殖民地經濟政策의 第一次作業으로 實施된 것이다. 土地調查事業은 그內容의一部인 土地所有權調查를 통하여 우리나라 地主制度의 歷史的展開에決定的으로 重要한 影響을 미쳤다.

開港後 우리나라에 들어와 商權을 獨占한 日本商業資本은 米穀 大豆 原料等 農產物의 買收와 日本輸出에 滿足하지 않고, 清日戰爭以後부터는 한걸음 더 나아가서 그 生產手段인 土地自體를 所有支配하는 곳에 그活動이集中하였다. 그리하여 1910年까지에는日本人土地所有者의 數와 所有面積은相當한程度로急增하였으며, 이들은 占有한 土地를 모두 우리나라의 從來의 小作慣行에 따라 韓國農民에게 小作시켜 小作料를收取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日本商業資本의 이時期의 土地占有는 극히 初期段階의 것에 不過하였으며, 大規模 土地占有를 위해서는 먼저 基本的 障碍를 克服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중에서 몇가지 重要한 要因을 들면 다음과 같다.

- ① 外國人의 土地所有가 法律에 의하여 禁止되어 있었다는 點.
- ② 土地私有權이 慣習上確立되었으나 法律에 의하여 完全히 保障된 一物一主의 排他的私有權이 確立되어 있지는 않았다는 點.
- ③ 土地의 商品化가 充分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點. 즉 土地의 自由處分權의 法律的保障과 더불어 賣買의 目的物을 明確히 規定하여 이를 文書化하고 法律에 의하여 保障하는 土地私有登記制度가 確立되어 있지 않았다는 點.
- ④ 日本人의 土地買收에 대하여 韓國의 農民뿐만 아니라 封建的 權力者와 兩班貴族까지 완강히 反抗하였다는 點.

이러한 制約속에서 日本商業資本의 土地占有는 점차 進展되었으나, 그것은 李朝의 國法上 如前히 違法이었으며, 전혀 法律的 保障을 받는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土地賣買와 占有의 合法化가 日本商業資本에 의하여 強力히 要請되었다. 1905年乙巳條約에 의하여 韓國에 總監府를 設置하고 政治的으로 李王朝政府를支配할 수 있게 된 日本은 韓國政府에 強要하여 1906年10月 土地·家屋의 賣買와 所有權을 法的으로 保障하는 臨時法規로서 「土地家屋證明規則」을 비롯한 一連의 臨時 法令을 發布하였다.<sup>(51)</sup> 그러나 土地所有와 賣

(51) 土地調查事業 以前에 土地所有權과 賣買를 法律의으로 保障하기 위한 一聯의 臨時法規를 들이보면 다음과 같다.

1906年10月「土地家屋證明規則」(勅令第65號)  
1906年11月「土地家屋證明規則施行細則」(法部令第4號)  
1906年12月「土地家屋典當執行規則」(勅令第80號)  
1907年1月「土地家屋典當執行規則施行細則」(法部令第2號)  
1908年「土地家屋所有權證明規則」

위의 諸法規中에서 「土地家屋證明規則」은 日本商業資本 高利貸資本의 土地賣買와 所有權을

買抵當을 保障하는 規則이 發表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當事者間의 覺書의 効力에 그치고 第三者에 對抗하는 것은 아니었으며, 證明의 基礎가 되는 資本主義의 「登記制度」와는 달리 不確實한 것이었으므로 土地所有權을 둘러싼 問題들은 그 根本的 解決을 後日로 미루지 않을 수 없었다.

土地調查事業은 이러한 土地所有에 관한 問題의 根本的 解決과 더불어 植民地統治에 必要한 財政資金의 確保를 위한 地稅制度의 整理 等 植民地政策上의 諸目標을 遂行하기 위한 基礎作業으로서 日帝가 우리나라를 完全히 植民地化하자 가장 緊急한 課題로서 서둘러 實施된 것이다.<sup>(52)</sup>

土地調查事業이 本格的으로 施行된 것은 1912年 朝鮮總督府가 「土地調查令」「朝鮮民事令」, 「不動產登記令」等을 發布하여 土地調查를着手함으로부터 시작되었다.<sup>(53)</sup>

---

法의으로 確認 保障하는 時時法規로서 發布된 것이고, 「土地家屋典當執行規則」은 貨幣流通의 發達에 따라 土地家屋을 抵當으로 日本商業高利貸資本의 支配下에 從屬된 負債農民으로부터 土地를 掠奪하는 것을 合法的으로 保障하기 위하여 發布된 것이다. 「土地家屋證明規則」은 土地家屋을 賣買 贈與 交換 抵當할 경우 所在地의 里長 또는 洞長의 確認을 받고 郡守 또는 府尹의 證明을 받으면 이 것은 法定保障을 받는 完全한 證明이 되어 判決을 거쳐 強制執行을 행할 수도 있게 하였으며, 郡守 또는 府尹은 土地家屋證明臺帳을 만들어 그 要項을 記載하고 이를 證明하도록 規定하였다. 이 「證明規則」은 所有權移轉을 公式證明하여 法定保障을 주고 있으므로 日本商業資本의 韓國에 있어서의 土地占有를 自由롭게 하는데 큰役割을 하였다.

(52) 日本人이 우리나라에 대한 植民地經濟政策의 第一次의 作業으로 土地調查事業을 서두른 理由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특히 重要하다.

1. 日本資本의 土地占有를 涙止하여 오던 諸要素, 即 土地登記制度와 私有權의 法制的 保障이 確立되어 있지 않고, 土地所有權者 筆地의 面積 境界 稱號 地番 等이 精密하지 않은 것을 土地調查를 通하여 明確히 整理 確定하여 神聖不可侵한 資本主義의 私有權과 登記制度를 確立함으로써 土地를 商品化하여 土地의 賣買抵當을 自由롭게 함으로써 土地 및 土地에 附隨되는 모든 對象에 대한 日本資本의 投資와 占有를 開放하고 이를 法律上 保障하려는 點.
2. 우리나라에 대한 日本의 植民地統治에 必要한 財政인 朝鮮總督府特別會計의 끊임없는 膨脹을 充當하기 위하여 租稅收入의 整備가 大部分을 차지하는 地稅制度의 整理가 必要하였는 바 당시 廣範圍한 際結과 脫稅로부터 地稅收入을 獨立시켜 朝鮮總督府財政의 稅源을 整備 確保하려는 點.
3. 李朝王室이 直接 地代와 租稅를 収取하던 官庄土와 官廳이 收租權을 가지고 있던 從來의 驛屯土 等 國有地를 調查 整理하여 朝鮮總督府의 所有로 함으로써 朝鮮總督府가 地主가 되어 地稅와 小作料를 収取하고 國有地拂下를 통하여 財政收入을 確保하려는 點.
4. 土地調查當時까지 各様各色으로 土地를 買收하여 土地占有者가 되어있던 日本商業資本의 土地所有를 合法化시키고, 地主로서의 法制的 保障을 하기 위한 첨.
5. 食糧과 原料, 특히 米穀의 日本輸出을 위해서는 自由로운 近代的 土地私有의 原則에 의한 土地改良 및 土地利用의 自由가 必要하며 이를 위해서는 土地의 地形 地貌의 調查整理가 要請되었다는 點.

(53) 元來 土地에 대한 調查를 처음 計劃하기는 舊韓國政府가 土地의 面積 境界 等을 調查整理하기 위한 量田計劃으로 1898年에 量地衙門을 設置하여 全國의 量地事務를 管掌시키고, 美國人 测量技師를 招聘하여 量田을 시작함과 同時に 量案(土地臺帳)을 作成하였으나 亂 進涉을 보지 못하고, 1901年에는 量地衙門을 地契衙門으로 고쳤다가 1903年에 地契衙門도 廢止하였다. 日本人이 統監府를 設置하자 舊韓國政府에 強要하여 1905年에 日本人 测量技師를 招聘하여다가 韓國人 技師에게 测量技術을 習得케 하고, 大邱 平壤 全州에 量地出張所를 設置하여 技術要員을 養成하였으며, 1903年 3月에 韓國土地調查局이 開設되었다가同年 8月 韓國強占과 同時に 朝鮮總督府의 所屬으로 移管되고, 同年 10月 朝鮮總督府 臨時土地調查局에 의하여一切의 事務가 引繼되었다. 그리하여 이 土地調查事業은 1910年 3月부터 本格的인 實施準備에 들어가서 1912年부터 1918年까지 前後 7年間 經費 2456餘萬圓과 3400餘名의 人員을 動員하여 實施되었다. 朝鮮總督府臨時土地調查局『朝鮮土地調查事業 報告書』 1918, p. 7 및 p. 15 參照.

土地調查事業의 내용은 ① 土地所有權의 調查, ② 土地價格의 調査, ③ 地形地貌의 調査 等으로 分類되었다. <sup>(54)</sup>

이중에서도 日帝가 가장 重點을 두고 또한 가장 問題가 된 것은 土地所有權調査이었다.

土地所有權調査는 土地調查事業報告書에 의하면 「土地의 所在 地目 地番 地籍 及 所有者를 調査하여, 地籍圖에 依하여 各 筆地의 位置, 形狀 及 疆界를 表畫하고, 數百年來 紛糾해 온 土地의 條件을 解決하여, 土地所有權 및 그 疆界를 查定하여 所謂 地籍을 明敷하게 함으로서 土地登記制度의 創設을 期하는 것」<sup>(55)</sup>이라고 說明하고 있다. 日帝에 의한 土地所有權調査의 要點은 土地에 一私有權者를 確定하여 排他的인 資本主義의 私有權을 法認하고, 그 個別 私有權이 行使되는 土地의 範圍와 屬性을 明白히 規定하여 登記制度를 設定함으로써 이를 法律的으로 保護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土地所有權調査에 있어서는 가장 基本的인 問題가 있었으니, 封建社會에서 展開된 各 身分層의 多元的 所有 즉 國家와 國王에 의하여 表象된 抽象的 所有權, 『收租權』에 의하여 代表되는 封建官僚·地主의 所有權, 實제로 農業生產을 擔當하는 農民의 耕作權 中에서 어느 것을 法律上 保障받는 唯一의 近代的 私有權으로 法定할 것인가 하는 問題이었다.

李朝封建時代의 全期間을 通하여 各 身分層은 當時의 거의 唯一한 生產手段인 土地에 대하여 各己 그들의 所有權을 私有權으로 發展시켜 왔으며, 이 過程에서 土地私有의 觀念과 賣買는 確立되었으나, 「自然의 恩惠」인 土地에 대해서 어떠한 身分層의 權利도 完全히 他權利를 排除하는 排他的인 近代的 私有權을 普遍的으로 確立시키지 못하였다. 李朝建國期의 田制改革은 國家와 國王의 抽象的인 權利를 具體的인 所有權으로 確立시키려고企圖한 것이었으나, 官僚地主의 『收租權』을 排除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新興貴族에 대한 收租權의 再分配過程에서 官僚地主의 土地에 대한 權利를 保護하게 되었으며 李朝封建制의 發展過程에서 오히려 官僚地主의 이 『收租權』이 肥大화하고 支配的인 所有權으로 成長하였다. 李朝末期에 이르러서는 國家와 國王의 土地所有에 대한 權利는 宮庄土와 驛屯土, 牧場土 等 個別的으로 國王과 國家의 權利를 具體化시키어 定型화한 土地를 除外하고는 매우 弱化되어 극히 抽象的인 權利로 虛構化됨과 同時に 土地國有의 原

(54) 朝鮮總督府臨時土地調查局『朝鮮土地調查事業報告書』1918, p. 1. 同報告書에 의하면 土地價格의 調査란 「時價 또는 貨貸價格 其他 土地의 收益을 查覈하고 穀價及 金利의 關係를 考慮하여 統一的으로 朝鮮全土의 地價를 調査해서 地稅의 賦課標準을 詮定하여 地稅制度를 確立함으로써 財政의 基礎를樹立하여 負擔의 均衡을 폐하는 것」이며, 地形地貌調查는 「地形測量에 依하여 地形圖를 調製하고 地上에 있어서의 天爲人爲의 地形을 描畫하여 그 高低脈絡分布의 關係를 表示하여 이를 地圖上에 明瞭하게 하는 것」이라고 說明하고 土地調查事業에 대하여 結論的으로 「要言하면 本 土地調查事業은 朝鮮에 있어서의 土地制度, 地稅制度, 地圖制度를 完全히樹立하여 土地에 관한 統治의 基礎를 建設하는 것」이라고 規定하고 있다.

(55) 『朝鮮土地調查事業報告書』p. 1.

則은 事實上 消滅되었으며, 官僚地主의 收租權이 일찍부터 急速히 成長하여 私有權으로 發展하면서 《封建地主制度》를 成立시킴과 同時に 土地所有에 대한 가장 強大한 權利로 成長하여 있었다. 耕作者인 農民의 權利는 相對的으로 완만히 成長하였으나, 李朝末期에 이르면 地主制度下의 小作農에 있어서까지도 一種의 占有耕作權을 分明히 形成하여 小作農은 自己의 必要에 의하여 小作을 抛棄할 수 있을지라도 小作農이 스스로 土地耕作을 抛棄하지 않는 限耕作地에서 分離되지 않는 慣習을 形成하였다. 또한 때로는 《中賭地》 《元賭地》 《原賭地》 《轉賭地(굴도지)》 《永稅》 《並耕》 《禾利付畠》 等에서 와 같이 小作地의 權利는 賣買되기도 하고 地主가 小作人을 變更할 경우에는 먼저 小作人의 이 權利를 購入하여 報償하지 않으면 안될만큼 成長한 경우도 있었다.<sup>(56)</sup>

이러한 多元的 所有權中에서 어여한 것을 排他的 私有權으로 法認하고 어여한 것을 어여한 方法으로 排除하는가는 土地制度에 대하여 決定的으로 重要한 影響을 미치는 것이다. 國家와 國王의 土地所有에 대한 抽象的 權利로써 表象되는 土地國有制의 觀念은 이미 虛構化되어 있었으며, 土地調查事業이 私有權確立을 目的으로 하는 것이므로 처음부터 問題될 것이 없었으나, 收租權과 耕作權의 選擇은 土地所有制度의 性格을 規定하는 決定的으로 重要한 問題이었다. 만일 封建地主의 收租權을 所有權으로 認定하면 地主의 土地所有가 成立하게 되며 耕作權을 認定하면 小農民의 土地所有가 成立하게 되는 것이다.

日帝는 1912년의 土地調查事業에서 이 問題를 그들의 植民地政策路線에 따라 「申告主義」를 통해서 解決하였다.<sup>(57)</sup> 多元的 所有權에 있어서 唯一의 一元的 權利를 設定하는 方

(56) 一部에서는 土地調查事業當時의 小作地에 있어서의 小作人の 權利를 認定하지 않는 見解를 發表하고 있으나 이것은 지나치게 皮相의in 觀察이라고 생각한다.當時 小作地에 있어서의 耕作農民의 權利는 地主의 所有에 대한 權利에 對抗할 수 있도록 成長하지는 못했지만 완만하나마 꾸준히 成長하여 地主의 所有가 完全한 排他的 私有로서 發揮되지 못하게 作用하였으며, 土地에 대한 保有耕作 使用의 權利를 確保하였다. 또한 地方에 따라서는 小作農의 土地所有에 대한 權利는 地主에 對抗할만큼 크게 成長하여, 耕作權이 賣買되었으며 地主도 自己의 所有權을 貫徹시키려면 이 權利를 먼저 貨幣를 支拂하여 買收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私的地主制度에 있어서 土地所有者는 社會의으로 地主로써 觀念化되어 있으면서도 그 밑에서 小作人の 土地所有에 대한 權利가 客觀的으로 成長되어 있었음을 특히 注目할 必要가 있다고 생각한다.

(57) 當時의 土地調查令의 第四條는 「申告主義」를 規定하고 있으며, 其他 몇개 條項들이 이를 補充하고 있다.

第四條; 土地의 所有者는 朝鮮總督이 定한 期限內에 其의 住所 氏名 又는 名稱 及 所有地의 所在地 目字番號 間標 地籍 等級 結數를 臨時土地調查局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但 國有地에 있어서는 保管官廳으로부터 臨時土地調查局長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第五條; 土地의 所有者 賃借人 其他의 管理人은 朝鮮總督府가 定한 期限內에 其의 土地의 四圍의 疆界에 標杭을 建하고, 地目及 字番號와 함께 民有地에 있어서는 氏名 又는 名稱, 國有地에 있어서는 保管官廳名을 이에 記載하여야 한다.

第十條; 前條第一項(臨時土地調查局長은 地方土地調查委員會에 諮問하여 土地의 所有者及其의 疆界를 查定한다)의 查定은 第四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 또는 通知當日의 現在에 의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但 申告 又는 通知를 行하지 않은 土地에 대해서는 其의 查定當日의 現在에 의한다.

第十五條; 土地所有者的 權利는 查定의 確定 又는 裁決에 의하여 確定된다.

法으로서의 申告主義은 「弱肉強食의 原理」이다. 그것은 多元的 所有權中에서 가장 強大하게 成長한 權利가 他權利를 暴力的으로 排除하고 土地私有權者로 登記され 規定하며 保障하는 原理인 것이다. 日帝는 그들의 植民地政策上의 目標에 따라 申告主義라는 弱肉強食의 原理를 통하여 封建的 收租權者를 土地私有權者로 하는 方法을 採擇하였다. 土地調查報告書는 「地主의 調查는 原則적으로 申告主義를 採用하고, 同一土地에 대하여 二人以上的 權利主張者가 있는 경우와 오직 一人의 權利主張者밖에 없으나 그 權源에 疑問이 있는 것을 除하고는 權原調查를 하지 않고, 申告 名義人을 地主로 認定하였다」<sup>(58)</sup>라고 記錄하고 있다.

이러한 「申告主義」의 原理에 따라 過去의 收租權者인 封建地主는 收租權을 代表로 하는 土地所有에 대한 그들의 權利를 土地調查局에 申告하여 土地所有의 權利를 主張하였으며, 同一土地에 대하여 他權利主張者가 나타나지 않는限 私有權을 確定, 法認받아 資本主義의 私有權者가 되었다. 封建地主의 土地所有에 대한 申告는 至極히 容易한 것이었다. 李朝封建時代의 多元的 所有中에서 國家의 所有에 대한 權利는 이미 虛構化되어 있었고, 身分的 規制下에 있던 《佃人》(封建的小作農)의 土地所有에 대한 權利는 아직 封建地主에 對抗하여 同等한 地位에서 權利主張을 할 수 있을만큼은 토저히 成長하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은 收租權을 申告하여 完全한 排他的 土地私有權者로 登場하였다.

한편 李朝末期의 封建地主制度下에 있던 小作農은 그들의 耕作權을 封建地主의 收租權과 對等하게 定立하여 權利主張을 하지 못하고, 어떠한 報償도 받음이 없이 土地私有權에서 完全히 排除되었다. 뿐만 아니라, 封建地主制度下에 隸屬되지 않고, 國家에게 直接地稅와 地代를 納付하던 一種의 自營農民까지도 一部는 「朝鮮總督이 定한 期限內에 申告」하지 못하고 封建地主와 權門豪族들이 自己名義로 이를 申告함으로써 土地私有權에서 排除된 경우가 非一非再하였으며 掠奪과 紛糾가 頻發하였다.<sup>(59)</sup>

(58) 『朝鮮土地調查事業報告書』 p. 81.

(59) 『朝鮮土地調查事業報告書』는 《申告主義》의 原理에 의한 土地調查가 끊임없는 土地所有權 紛爭을 誘發하였으며, 特히 農民保有地에 對한 掠奪과 紛爭이 主로 朝鮮總督府의 所有로 된 所謂 《國有地》에서 集中的으로 일어났음을 不確實하게 나마 統計의 으로 報告하고 있다. 即 紛爭件數 33,937件, 紛爭筆數 99,445筆中에서 所有權 紛爭이 그 99.7%에 達하는 99,138筆이고, 나머지 0.3%에 該當하는 307筆이 疆界 紛爭이며, 所有權 紛爭中에서 65%에 達하는 64,449筆의 紛爭이 朝鮮總督府가 國有地로서 所有化한 土地에서 일어났고, 나머지 約 35%에 해당하는 34,689筆의 所有權 紛爭이 民有地에서 일어난 것이다. 『朝鮮土地調查事業報告書』 pp. 123~124 및 pp. 190~191. 그러나 이러한 紛爭筆數는 土地調查局이 紛爭地調查를 施行한 筆數에 不過하고, 實際上의 많은 紛爭은 事前에 抑壓되었다. 朝鮮總督이 1912年 4月 22日 道長官에 내린 指示에는 「官民有係爭地에 關한 調査는 ……官有財產의 得喪에 關한 重大한 處分에 屬하는 것」으로 「十分 資料를 調査하여 慎重히 處理하라」(『總督訓示及指示』 p. 26)하고 또 「近來地編入 小作料徵收 實業權의 許否 及 土地權利關係 等에 關하여 地方民의 紛擾를 일으켜 多衆集合하여 官廳에 請願을 하며 甚한 것은 多額의 費用을 消費하여 이로 因해서 部落의 派幣量을 招來하는 것도 過다. 其 많은 것은 何等의 正當한 理由가 있는 것이 아니라, 二三者の 爆動에 基하는 것이다. 此等에 對해서는 警察이相當히 取締하고 有之 만은 地方官도 恒常 이에 注意하고, 必要한 경우에는 警察官에 命하여 될 수 있는 限事를 未然에 防止할 것을 期하라」(『總督訓示及指示』 p. 38).

① 土地調査事業의 目的과 重要性을 充分히 理解하지 못하는 많은 農民들은 租稅負擔을 輕減하기 위하여 土地面積을 縮少하여 申告하였으며, 또는 土地調查令을 違反하거나 履行치 않았다. 申告에 漏落된 面積은 權利主張者가 나타나지 않는 限 朝鮮總督府의 所有로 되었으며 封建地主와 權門豪族들에 의하여 掠奪申告되어 끊임없는 紛爭이 일어났다. 農民의 所有權證明의 不充分과 所定手續의 不履行 때문에 先祖代代로 耕作하여오던 私的 保有地를 喪失한 農民이 많았다.

② 所謂 一司七宮의 宮庄土와 官廳이 收租權을 가지고 있던 驛屯土와 牧場土 等 所謂 從來의 國有地는 朝鮮總督府의 所有가 되었을 뿐 아니라, 事實上 農民의 保有地임에도 不拘하고 官僚의 訴求를 避하기 위하여 宮庄土의 名義를 빌리고 있던 《投託地》 《混奪入地》 等의 農民所有地가 朝鮮總督府의 所有地로 編入되었다.<sup>(60)</sup>

③ 村落의 共有地, 氏族의 共有地 等 共同體의 遺制的性格의 土地는 村落 또는 氏族에 있어서 가장 權勢 있는 特權層과 權門豪族 收租權者의 申告에 의하여 그들의 私有地가 되었다.

④ 農民이 採草放牧을 自由롭게 하던 廣大한 共有의 山林과 草原이 朝鮮總督府의 所有로 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農民은 燃料採取·肥料採取와 家畜의 放牧을 위하여 自由롭게 使用하여 오던 山野地를 完全히 喪失하였다.

⑤ 從來 未開墾地는 大部分이 無主共有로서 開墾하는 者의 慣習의 所有로 되어 있었던 바 土地調查令은 新開墾地의 私有權을 認定한다고 規定하고 있으므로, 이것은 投機의 日本資本과 權門豪族 封建地主의 着眼한 바 되어 많은 未墾地가 그들의 申告에 依하여 미리 그들의 私有地로 되었다. 또한 어느 身分層의 所有權도 明確히 支配의 地位를 確保하고 있지 않은 河川邊의 空地 廢土地 等이 모두 朝鮮總督府의 所有로 되었다.

이 土地調查事業을 通하여 朝鮮總督府는 우리나라의 最大地主로 되었을 뿐만 아니라 地稅收入의 源泉을 確保하고 그들의 植民政策上의 目的을 大部分 達成하였다.<sup>(61)</sup> 그러나 여기서는 무엇보다도 이 土地調查事業이 土地私有權 確立過程에서 李朝末期의 封建的 地主制度를 日帝下의 特殊한 地主制度로 改編한 側面에 焦點을 두고 注目할 必要가 있다.

土地調查事業의 結果에 의하여 李朝末期의 封建的 地主·收租權者가 《申告》를 通하

(60) 土地調查事業에 의하여 朝鮮總督府의 所有地로 되어버린 《投託地》 《混奪入地》의 面積은 紛爭地統計에서 推論되는 것만도 田畠 約 25,800 餘町步, 山林原野 19,400 町步, 家舍 190 餘戶, 宅番이 50 餘町步에 達하고, 1912年(土地調查事業實施에 의해)의 調查에 의하면 朝鮮總督府의 所有面積(國有地)은 實로 133,633 町步로써 全耕地面積의 1/20에 該當하며, 그 것은 世襲의으로 占有耕作하여오던 農民數는 331,748 戶에 達하고 있다.

(61) 日帝는 이 土地調查事業을 通하여 그들의 植民政策上의 目的을 大部分 達成하였다. ① 土地私有權과 登記制度의 確立를 通하여 土地가 投資對象으로서 商品化 하였고, ② 土地面積과 地價의 調查를 通하여 稅源을 確保하였는 바 土地調查事業에 依하여 隱結의 登記로 地稅賦課面積이 約 60% 增加하고 地稅收入도 約 75% 增加하였으며, ③ 宮庄土, 驛屯土, 牧場土, 其他 等 133,633 町步의 田畠을 朝鮮總督府의 所有地로 編入시키어 韓國農民에게 小作시킴으로서 朝鮮總督府는 直接의으로 高率小作料量收取하는 國內 最大地主로 登場하게 되었다.

여 『近代的 土地私有權』을 가진 地主로 되었으며, 從來 收租權의支配下에서 土地의 現實的 耕作者이며 占有者이었던 農民은 土地所有에서 完全히 分離되어 土地없는 零細小作農으로 되었다. 한편 收租權의 介在 없이 直接 國家에 租稅를 納付하던 李朝末期의 一種의 自營農民層이 農民的 小土地所有者로서의 自作農으로 되었다. 그리하여 이 土地調查事業을 轉換點으로 하여 우리나라 農村에는 地主, 自作農, 小作農의 三階層이 明確히 分化되고 李朝末期의 地主制度가 日帝下의 새로운 地主制度로 改編되었다. 이제 土地調查事業의 始末期間에 걸친 農村社會內의 各階級의 構成을 보면 第 4 表와 같다. 土地調查事業이 시작된 3 年째인 1914 年에 있어서는 全農民의 約 35.1%가 純小作農이고 41.1%가 自作兼小作農이며, 自作農이 22.0%, 地主가 1.8%이다. 즉 1.8%의 地主가 76.2%의 農民과 小作契約을 締結하여 地主一小作關係를 設定하고 있는 것이다.

〈第 1 表〉 土地調查事業期間中의 土地集中과 農民層分化

年度	地 主		自 作	自作兼小作	小 作	百 分 比 (%)			
	甲	乙				地 主	自 作	自作兼小作	小 作
1914	46,754		569,517	1,062,705	911,261	1.8	22.0	41.1	35.1
1915	39,405		570,380	1,073,833	945,398	1.5	21.7	40.8	36.0
1916	16,079	50,312	530,195	1,073,360	971,208	2.5	20.1	40.6	36.8
1917	15,485	57,713	517,996	1,061,438	989,362	2.8	19.6	40.2	37.4
1918	15,731	65,810	523,332	1,043,836	1,003,775	3.1	19.7	39.4	37.8

資料：朝鮮總督府, 『農業統計表』에서 作製.

특히 注目할 점은 이 土地調查事業 進行期間中에 農民의 兩極分化가 進行되어 1918年에는 地主가 1.8%에서 3.4%로 增加한 反面에, 自作農은 22.0%에서 19.7%로, 自作兼小作農은 41.1%에서 39.4%로 各各 減少하여大幅 没落하였으며, 小作農은 35.1%에서 37.8%로 增加하고 있다는 事實이다. 즉 自作農 및 自作兼小作農의 現저한 没落과 地主와 小作農의 肥大化라는 一種의 典型的 兩極分化現象이 나타나는 것이다.

우리의 問題는 여기서부터 出發한다. 이 土地調查事業에 의하여 再編成된 日帝下의 우리나라 地主制度(小作制度)는 어떠한 經濟的 構造와 歷史的範疇의 것인가? 그것은 本質적으로 封建的 地主制度인가? 資本家的 近代地主制度인가? 우리나라의 封建的 地主制度는 資本主義의 發展과 더불어 어떠한 過程으로 解體되며, 日帝下의 小作制度는 李朝後期의 小作制度와 어떠한 差異가 있는가? 獨立小生產者인 自作農의 没落과 地主와 小作農의 數의 增加라고 하는 典型的 農民分化는 왜 일어났는가? 그것은 과연 資本家的 兩極分解인가? 이러한 문제들을 地主制度의 内部의 構造부터 分析하면서 地主制度와 資本主義와의 關聯으로 나아가는 考察方法에 따라 實證的으로 分析하려는 것이 우리들의 課題이다.

### III. 日帝下 地主制度에 있어서의 小作料의 地代範疇

#### 1. 小作料의 實體

土地調查事業을 轉換點으로 하여 再編成된 우리나라의 地主制度가 어떠한 構造와 性格의 것인가를 가장 特徵的으로 나타내는 것은 小作料의 性格이다. 왜냐하면 地主制度에 있어서의 地主와 小作農과의 經濟關係는 小作料에 의하여 集中的으로 表現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日帝下의 우리나라 地主制度의 分析을 小作料의 分析에서 부터 들어가려고 한다.

여기서는 주로 日帝 朝鮮總督府의 調查資料를 使用하여 먼저 小作料의 實體를 ① 小作料徵收方法 ② 小作料率 ③ 小作料形態로 便宜上 區分하여 考察하고 小作料의 構成內容을 分析한 다음 地代理論과 關聯하여 그것을 理論的으로 解釋하여 나가려고 한다.

##### (1) 小作料의 徵收方法

日帝下의 우리나라 地主制度에 있어서 地主가 小作農으로부터 小作料를 徵收하는 方法은 크게 分類하여 ①定租法 ②打租法 ③執租法의 세가지 方法이 있었다.<sup>(62)</sup> 이것은 李朝封建時代에 있어서 小作料徵收方法이 크게 分類하여 ①賭租法 ②並作法(打租法)의 두가지로 分類되고 定租法과 執租法은 賭租法內에 包含되어 때로는 混淆되고 때로는 分化되어 있었던 것이 李朝末期를 거쳐 日帝下에서는 賭租法이 定租法과 執租法으로 確然히 分化된 變化를 보이고 있다.

《定租法》은 農民들에 의하여 普通 《賭只》 《定賭》 《支定》 《定賭只》等의 通稱으로도 불리던 것으로서 小作契約 締結時에 地主와 小作人이 一定의 小作料 《額》을 定하여 原則的으로 當年의 豊凶에 關係없이 年年 約定小作料를 徵收하는 方法이다. 定租法에 있어서는 地主와 小作人은 小作契約에 앞서 小作地의 面積 地味 收穫量에 대한 豫備知識을 必要로 한다. 따라서 이 小作料徵收方法은 比較的 收穫量의 變化가 적은 無災肥沃地에서 行해지는 것이며, 主로 田에서 行해지고 畑의 경우에는 많이 行해지지 않았다. 即畠에 있어서는 水利灌溉施設의 不充分으로 말미암아 旱水害의 影響을 크게 받아 豊凶의 差가 크므로 定租法에 依據하는 것은 地主와 小作人의 兩側에 모두 不便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畑의 경우에는 灌溉排水가 完備된 良畠이 아니면 이 方法을 採擇하지 않는 것이 普通이었다. 小作料 決定의 標準은 李朝末 日帝初期에는 普通 平年作의 40%—50%가 많았으나 日帝治下에서는 全般的으로 50%—60%가 가장支配的이었고 다른 小作料 徵收方

(62) 여기서의 小作料徵收方法의 區分은, 특히 다음의 資料에서 抽出 整理하였다. 朝鮮總督府調査資料 第26輯『朝鮮の小作慣習』1929年, 朝鮮總督府農林局『朝鮮の農業』1930—1941年的各年版, 朝鮮農會『朝鮮の小作慣行(時代と慣行)』1930年, 朝鮮總督府『朝鮮ノ小作慣行』(上卷)1932年, 『朝鮮ノ小作慣行』(下卷)1932年。

法에 比하여 더욱 高率化하는 傾向이 있었다. 種子 肥料 農機具等은 小作人이 負擔하며 地稅는 地方에 따라서 小作人이 負擔하기도 하고 地主가 負擔하기도 하며 때로는 契約에 의하여 兩側이 折半씩 負擔하는 경우도 있었다.

『打租法』은 農民들에 의하여 普通 『打作』 『並作』 『半作』 『半租』等의 通稱으로도 불리던 것으로서 地主 또는 그 代理人이 小作人과 함께 立會하여 收穫時에 實收穫物을 約定한 小作料 『率』에 따라 徵收하는 方法이다. 따라서 小作料 『額』은 豐凶에 對應하여 變動하며 固定되지 않는다. 地主와 小作人은 土地의 所在와 面積에 대한 豫備知識을 가짐으로써 足하고 定租法에서와 같이 土地와 收穫量에 대한 正確한 豫備知識을 必要로 하지 않는다. 小作料率은 普通 50%가 支配的이었으나 若干의 上昇傾向이 보이고, 또한 地稅 種子 農具 肥料의 負擔關係와 藥稈의 歸屬關係等에 의하여 實際의 小作料徵收率에 多少의 相違가 있었다.<sup>(62)</sup>

『執租法』은 農民들에 의하여 보통 『執穗』 『看穗』 『看評』 『檢見』 『稅』 『賭只』等의 通稱으로도 불리던 것으로서 收穫前 小作地의 作物이 立稻 그대로 있을 때 地主 또는 그 代理人이 小作人 立會下에 作況을 檢見 看評 또는 坪丈하여 收穫豫想量을 推定해서 約定小作料率에 따라 小作料를 徵收하는 方法이다. 물론 豐凶에 對應하여 小作料額은 變動하였다. 地主와 小作人은 土地의 所在와 面積에 대한 豫備知識을 갖고 있으면 足하지만 地味가 不良하고 災害가 甚하면 檢見이 어려우므로 比較的 地味가 良好하고 災害가 적은 地域에서 行해졌다. 小作料率은 打租法과 마찬가지로 50%를 標準으로 하는 것이 支配의이나 往往 地主側이 主로 檢見 評價하므로 實納小作料率은 實際收穫高의 60%以上에 達하는 경우도 많았다.<sup>(64)</sup> 種子 農機具 肥料等은 모두 小作人 負擔이며 간혹 地主가 負擔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大部分 小作人이 이를 負擔하는 경우가 支配의였다.

이러한 小作料徵收方法內에 있어서 다시 打租法에 있어서는 小作料를 어떠한 形態로 徵收하는가에 따라 ① 束分法 ② 穀分法 ③ 畦分法等이 있었다.<sup>(65)</sup> 『束分法』은 割取直後 『束』

(63) 打租法에 있어서 小作料徵收率이 50%인 경우에도 地稅 種子의 負擔關係는 多樣하였는 바 가장 代表의인 몇 가지 例를 들면 다음과 같다.

① 收穫物을 地主와 小作人이 折半으로 나누고 地稅 및 種子를 地主의 負擔으로 하는 것.

② 收穫物中에서 먼저 地稅 및 種子에相當하는 數量을 先取控除하여 小作人の 收得으로 하고 그 殘餘를 折半으로 하는 것.

③ 地主가 地稅를 納付하고 小作人이 種子를 負擔하며 (藥稈類를 折半으로 하는 경우와 小作人이 이를 收得하는 경우의 두가지가 있었다) 收穫物을 折半으로 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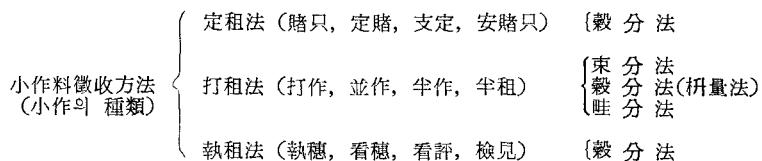
④ 地主가 種子를 負擔하고 小作人이 藥稈을 收得하고 地稅를 負擔하여 收穫物을 折半으로 하는 것.

⑤ 割束의 그대로 收穫物을 折半으로 하는 것. 이중에서 地稅는 名義上 地主의 負擔으로 할 지라도 實際는 小作人에게 轉稼하고 種子는 小作人이 이를 提供하는 대신 藥稈類全部를 小作人이 收得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朝鮮總督府農林局 『朝鮮の農業』 1934年版 p. 177.

(64) 朝鮮總督府農林局 『朝鮮の農業』 1933年版 pp. 171—172.

(65) 朝鮮總督府 『朝鮮ノ 小作慣行』 (上卷) 1932年. pp. 125—126.

으로서 小作料을 徵收하는 方法이며, 『穀分法』은 『杆量法』이라고도 하는 것으로서 收穫하여 脱穀調製한 後 『穀』을 斗升으로 秤量하여 徵收하는 方法이고 『畦分法』은 논이랑이나 面積으로 小作料을 徵收하는 方法이다.<sup>(66)</sup> 打租法에 있어서만 이러한 세가지 徵收方法이 使用되고 定租法과 執租法에 있어서는 『穀分法』이 使用되었다. 이러한 小作料徵收方法을 간단히 圖式化하면 다음과 같다.



定租法·打租法·執租法의 小作料徵收方法이 어떠한 比率로 分布되어 있었으며 어떠한 變動趨勢를 나타내고 있었는가를 보기 위하여 日帝 朝鮮總督府의 1920年頃의 調查資料와 約 10年後인 1930年頃의 調査資料<sup>(67)</sup>를 比較하여 보면 다음의 第2表 및 第3表와 같다. 1920年頃의 各種小作料徵收方法의 分布는 番에 있어서는 定租法이 24.2%, 打租法이

<第2表> 日帝下 各小作料 徵收方法의 田畠別 地域別 分布(I) (1920年頃)

道 別	番			田		
	定 租 法	打 租 法	執 租 法	定 租 法	打 租 法	執 租 法
京畿道	30.0%	66.0%	4.0%	60.0%	40.0%	—%
忠清北道	74.0	22.0	4.0	94.0	6.0	—
忠清南道	32.0	45.0	23.0	89.0	11.0	—
全羅北道	7.3	0.7	92.0	90.0	4.0	6.0
全羅南道	17.0	7.0	76.0	57.0	42.0	1.0
慶尙北道	14.0	26.0	60.0	62.0	30.0	8.0
慶尙南道	31.0	25.0	44.0	70.0	20.0	10.0
黃海道	25.7	70.3	4.0	36.3	61.3	2.4
平安南道	18.0	80.0	2.0	20.0	79.0	1.0
平安北道	2.0	98.0	—	2.0	98.0	—
江原道	42.0	55.0	03.0	52.0	45.0	3.0
咸鏡南道	21.0	76.0	03.0	30.0	68.0	2.0
咸鏡北道	—	100.0	—	—	100.0	—
平均	24.2	50.8	25.0	50.9	46.4	2.7

資料：朝鮮農會『朝鮮の小作慣行(時代と慣行)』p. 341에서 編製

(66) 打租法의 中에서도 『穀分法』이 가장一般的으로 行해졌던 小作料徵收方法이고 『東分法』은 咸鏡南北道에서 支配적으로 行해진 徵收方法이었다. 畦分法은 各地域에서 例外적으로 行해졌다.

(67) 여기서는 日帝 朝鮮總督府의 各種調查資料中에서 比較分析에 使用하기 위하여 特히 두개의

&lt;第3表&gt;

各小作料 徵收方法의 田畠別 地域別 分布(Ⅱ) (1930年頃)

道 別	畠			田		
	定租法	打租法	執租法	定租法	打租法	執租法
京畿道	24.0%	74.0%	2.0%	87.0%	13.0%	極少
忠淸北道	77.0	22.0	1.0	90.0	10.0	"
忠淸南道	32.0	55.0	13.0	92.0	7.0	1.0
全羅北道	45.0	6.0	49.0	98.4	1.4	10.2
全羅南道	36.0	13.0	51.0	90.0	7.0	3.0
慶尙北道	30.0	20.0	50.0	66.0	24.0	10.0
慶尙南道	47.0	22.0	31.0	86.0	11.0	03.0
黃海道	35.0	62.0	3.0	42.0	58.0	極少
平安南道	23.0	76.0	1.0	21.0	79.0	—
平安北道	6.0	94.0	—	20.0	80.0	—
江原道	42.0	57.0	1.0	59.0	39.0	3.0
咸鏡南道	17.0	82.0	1.0	22.0	77.0	1.0
咸鏡北道	5.0	94.0	1.0	41.0	86.0	—
平均	32.0	52.0	16.0	60.6	38.0	1.4

資料：朝鮮總督府『朝鮮ノ小作慣行』(上巻) p. 117에서 編製

.8%, 执租法이 25.0%의 比率로 分布되어 있으며, 田에 있어서는 定租法이 50.9%, 打租法이 46.4%, 执租法이 2.7%의 分布比率를 보이고 있다. 한편 1930年頃의 各種小作徵收方法의 分布는 畠에 있어서 定租法이 32.0%, 打租法이 52.0%, 执租法이 16.0%의 率로 分布되어 있으며, 田에 있어서는 定租法이 60.6%, 打租法이 38.0%, 执租法이 4%의 比率로 分布되어 있다. 이 小作料徵收方法의 地域別 分布는 다음과 같이 分類할 있을 것이다.

### 畠 小作料 徵收方法의 地域別 分布

#### I. 定租法地域:

忠淸南道, 慶尙南道, 江原道, 全羅北道.

#### II. 打租法地域:

① 束分法; 咸鏡南道, 咸鏡北道.

資料를 選擇하였다. 1920年頃의 調査資料는 朝鮮總督府內務局社會課에서 各道別로 調査한 것을 農務課에서 取扱整理한『大正十一年頃の小作慣行』, 朝鮮總督府, 『朝鮮の小作慣行(時代慣行)』1930年, 第六章 所載를 擇하고 1930年頃의 調査資料는 朝鮮總督府의『朝鮮ノ小作慣行』上, 下巻 1932年版을 選擇하였다. 後者は 元來 1930年을 調査時點으로 한 것이나 1931年의 調査도 包含하여 1932年에 公表된 日帝 朝鮮總督府調查資料中 가장 방대한 調査資料이다. 이 두 調査資料는 다른 各種調査資料에 比하여 調査方法이 基本적으로 가장 類似하고 部分의 으로 統計的處理가 되어 있어 時系列上의 比較가 可能할 것으로 보고 여기서는 特히 이 두 調査資料를 基本資料로 選定 使用하였다.

⑤ 枚量法；京畿道，忠清南道，黃海道，平安南道，平安北道，江原道。

### III. 執租法地域：

全羅北道，全羅南道，慶尚北道，慶尚南道。

#### 田 小作料 徵收方法의 地域別分布

### I. 定租法地域：

京畿道，忠清北道，忠清南道，全羅北道，全羅南道，慶尚北道，慶尚南道，江原道。

### II. 打租法地域：

黃海道，平安南道，平安北道，咸鏡南道，咸鏡北道。

### III. 執租法地域：

各地方에서 田에 있어서는 執租法이 1.0% 以下의 낮은 比率로 分布되어 있으며 거의 行해지지 않고 있다.

日帝下 우리나라 地主制度에 있어서의 小作料徵收方法은 動態的으로 볼 때一般的으로 執租法과 打租法의 定租法으로의 轉化 發展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sup>(68)</sup> 特히 畑에 있어서는 執租法의 定租法으로의 轉化，田에 있어서는 打租法의 定租法으로의 轉化가 顯著하게 浮刻되고 있다。例컨대 統計上으로 보면 正確한 比較가 될 수는 없지만 第2表 및 第3表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全國平均畠에 있어서는 1920年頃 執租法의 比率이 25.0%에서 1930年頃에는 16.0%로 減少하고 있는 反面에 定租法은 同年間에 24.2%에서 32.0로 增加하고 있다。한편 田에 있어서는 打租法의 比率이 46.4%에서 38.0%로 減少하고 있는 反面에 定租法의 比率은 50.9%에서 60.6%로 增加하고 있다。물론 地域別로는 이와 逆方向의 轉化도例外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나，<sup>(69)</sup> 日帝治下의 全期間을 通하여 執租法과 打租法의 定租法으로의 轉化는 小作料徵收方法의 基本的 發展方向으로 나타나고 있다。

定租法·打租法·執租法의 現物小作料徵收方法을 發展段階別로 區分하여 보면 가장一般的의 形態로 執租法→打租法→定租法의 發展過程을 想定할 수 있으며 定租法은 現物小作料에서 貨幣小作料으로의 轉化를 媒介하는 徵收方法이라고 말할 수 있다。그러나 이러한一般的的 形態는 모든 경우에 適用되는 것은 아니다。例컨대 우리나라에서는 李朝封建時代에 있어서 定租法과 執租法이 賭租라는 하나의 形態에 結合하여 打租法에 先行해서 發展하였다。그러므로 日帝下의 小作料徵收方法에 있어서의 『定租法』의 比率增加는 發展의 한 指標로서 認識될 수 있지만 그 自體가 小作料徵收方法의 近代的 性格을 나타내는

(68) 朝鮮總督府調查資料 第二十六輯『朝鮮の小作慣習』1929年, pp. 69~77. 朝鮮總督府『朝鮮ノ小作慣習』(上卷) 1932年, pp. 126—133 參照。

(69) 오히려 逆方向의 轉化가 나타나는 代表的 地方으로는 京畿道地方을 들 수 있으며 定租法의 打租法으로의 轉化가 혈저하게 나타나고 있다。이 外에도 各地域에서 部分的으로 이러한 逆方向의 轉化가 나타나고 있다。

것이라고는 斷定할 수 없다. 一時點에 있어서의 定租法의 小作料額이 打租法이나 執租法의 實際小作料額과 同額 또는 그 以下에서 固定되어 長期的으로 不變한다면 定租法은 執租法이나 打租法 보다 農業生產力 發展에 調和的인 것이 된다. 왜냐하면 小作農의 資本投下에 의한 生產增加分이 執租法과 打租法에 있어서는 地主와 小作人間에 分割되는데 反하여 그러한 定租法에 있어서는 모두 小作農에게 歸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可能性은 定租法의 小作料額이 執租法이나 打租法의 小作料 보다 低水準에서 또는 同額에서 長期間 《固定》 《不變》한다는前提가 반드시 充足될 때 發生할 수 있는 것이다. 만일 農業生產力增加에 따라 定租法의 小作料額이 《變動》 《增加》하거나 그것이 執租法과 打租法의 實際小作料額보다 高額의 水準에서 決定되는 경우에는 定租法은 도리어 凶作의 경우에 小作農을 負債農으로 轉落시키는 強力한 要因으로 作用하여 農業生產力 發展에 沮害의in 것으로 될 것이다.<sup>(70)</sup> 그러므로 《定租法》이 小作料徵收의 한 《方法》인以上 그것은 理論的 解明 보다도 歷史的 發展過程에서 具體的으로 그것이 生產力 增加의 機能을 遂行하였는가 않았는가의 與否를 實證的으로 檢討하는 것이 重要한 問題로 되는 것이다.

## (2) 小作料率

小作料의 生產量에 대한 比率은 小作料徵收方法에 따라 若干의 差異가 있으며 地域의 으로도 差異가 나타나고 있다. 日帝朝鮮總督府의 調查資料中에서 1920年頃의 小作料率과 1930年頃의 小作料率의 두 事例를 整理하여 보면 다음 第4表—第7表와 같다.

1920年頃의 畜小作料率은 最高가 定租法에 있어서 49—80%, 打租法에 있어서 50—70% 執租法에 있어서 47—80%에 달하고 있다. 畜小作率의 普通의 경우에는 定租法이 40—50%, 打租法이 50%, 執租法이 39—50%이다.<sup>(71)</sup> 田小作料率도 이와 類似하나 變動

(70) 日帝下 우리나라 地主制度에 있어서의 小作料徵收方法에서 定租法은 小作料率의 계속적 上昇으로 因하여 農業生產力 發展에 何等의 促進的作用을 하지 못하였다. 小作農은 高率의 定租法을 忌避하고 打租法을 要求하는 傾向이 強力하였다. 例컨대 “(京畿道) 近年에 이르러 各郡을 通하여 多少 打租를 定租로 改定하는 傾向이 있다. 그러나 이 定租는 打租의 경우보다 小作人の 収取額이 少量인 例가 많으므로 小作人은 打租法을 繼續할 것을 要望하여 또한 從來 定租인 것도 一般으로 小作人の 収取額 少量인 것은 打租로 改定할 것을 希望하고 있다.” 다음의 報告는 더욱 示唆的이다. “(全羅北道)……種種의 原因에 依하여 定租·打租·執租의 相互 變遷함이 있을지도 結局 地主가 自己의 利益의 增加를 畏하기 為하여 小作制度를 漸次 改更하는 것 같으며, 그 重要한 事由를 들면 다음의 세 가지이다.

一. 地味瘠薄해서 水旱害에 依하여 年年의 收穫高가 一定하지 않은 것은 定租를 執租로 變更하는 傾向이 있다.

二. 地味肥沃해서 水旱害의虞 없고 一斗落에 對하여 二石以上의 收穫이 있는 것은 執租를 定租로 變更하는 傾向이 있다.

三. 地主 又는 舍畜에 있어서 耕作의 必要가 있을지라도 小作權을 引揚할 때 小作人이 忽與 困窮에 빠지는 경우에는 小作人에 同情하여 定租 및 執租를 打租로 變更하는 傾向이 있다.” 朝鮮總督府調查資料 第二十六輯. 『朝鮮の小作慣習』 pp. 69—72.

(71) 여기서는 1922年頃의 日帝調查資料의 小作料率表에서 小作料徵收方法의 名稱을 <賭只法>은

&lt;第4表&gt;

日帝下의 畜小作料率(I) (1920年頃)

道 別	定 租			打 租			執 租		
	最 高	普 通	最 低	最 高	普 通	最 低	最 高	普 通	最 低
京畿道	% 65.0	% 49.0	% 36.0	% 50.0	% 50.0	% 50.0	% 65.0	% 50.0	% 35.0
忠淸北道	60.0	50.0	30.0	50.0	50.0	50.0	47.0	39.0	29.0
忠淸南道	70.0	46.0	30.0	50.0	50.0	50.0	70.0	47.0	30.0
全羅北道	75.0	50.0	30.0	55.0	50.0	38.0	60.0	45.0	45.0
全羅南道	50.0	40.0	30.0	50.0	50.0	50.0	70.0	55.0	30.0
慶尙北道	70.0	50.0	35.0	65.0	50.0	50.0	70.0	55.0	45.0
慶尙南道	80.0	50.0	30.0	70.0	50.0	30.0	80.0	55.0	30.0
黃海道	52.0	40.0	35.0	50.0	50.0	50.0	50.0	50.0	50.0
平安南道	65.0	41.0	20.0	65.0	50.0	40.0	50.0	48.0	40.0
平安北道	50.0	45.0	40.0	55.0	50.0	50.0	—	—	—
江原道	71.0	48.0	20.0	50.0	50.0	50.0	66.0	50.0	20.0
咸鏡南道	50.0	45.0	30.0	50.0	50.0	50.0	50.0	50.0	35.0
咸鏡北道	—	—	—	67.0	50.0	33.0	—	—	—
平均	{自80.0 至49.0	70.0 40.0	36.0 20.0	70.0 50.0	{50.0 49.0	50.0 33.0	80.0 47.0	60.0 39.0	50.0 20.0

資料：朝鮮農會『朝鮮の小作慣行（時代と慣行）』p. 411에서 編製

&lt;第5表&gt;

日帝下의 田小作料率(II) (1920年頃)

道 別	定 租			打 租			執 租		
	最 高	普 通	最 低	最 高	普 通	最 低	最 高	普 通	最 低
京畿道	% 56.0	% 46.0	% 36.0	% 50.0	% 50.0	% 50.0	% 50.0	% 45.0	% 40.0
忠淸北道	70.0	40.0	30.0	50.0	50.0	50.0	—	—	—
忠淸南道	60.0	32.0	20.0	50.0	50.0	42.0	—	—	—
全羅北道	—	—	—	—	—	—	—	—	—
全羅南道	30.0	20.0	10.0	50.0	50.0	50.0	—	—	—
慶尙北道	60.0	50.0	35.0	60.0	50.0	30.0	70.0	50.0	30.0
慶尙南道	80.0	50.0	25.0	70.0	50.0	30.0	80.0	50.0	30.0
黃海道	51.0	42.0	35.0	50.0	50.0	50.0	50.0	50.0	50.0
平安南道	70.0	37.0	20.0	50.0	49.0	40.0	50.0	50.0	50.0
平安北道	50.0	40.0	30.0	50.0	50.0	50.0	—	—	—
江原道	70.0	47.0	20.0	50.0	50.0	50.0	65.0	50.0	20.0
咸鏡南道	60.0	45.0	30.0	50.0	50.0	50.0	50.0	45.0	35.0
咸鏡北道	60.0	40.0	30.0	67.0	50.0	33.0	—	—	—
平均	{自80.0 至30.0	50.0 20.0	40.0 10.0	70.0 50.0	50.0 49.0	50.0 30.0	80.0 50.0	50.0 40.0	50.0 20.0

資料：朝鮮農會『朝鮮の小作慣行（時代と慣行）』p. 411에서 編製

<定租法>으로 <打作法>은 <打租法>으로, <執蕙法>은 <執租法>으로 統一하여 表記하였다. 朝鮮農會『朝鮮の小作慣行（時代と慣行）』1930年, 小作慣行調査項目 參照.

&lt;第6表&gt;

日帝下의 畜小作料率(Ⅱ) (1930年頃)

道 別	定 租			打 租			孰 租		
	最 高	普 通	最 低	最 高	普 通	最 低	最 高	普 通	最 低
京畿道	% 90.0	% 50.0	% 25.0	% 75.0	% 50.0	% 40.0	% 80.0	% 50.0	% 30.0
忠清北道	% 73.0	% 50.0	% 20.0	% 50.0	% 50.0	% 30.0	% 75.0	% 50.0	% 5.0
忠清南道	% 60.0	% 49.0	% 39.0	% 53.0	% 51.0	% 44.0	% 65.0	% 51.0	% 44.0
全羅北道	% 80.0	% 45.0	% 30.0	% 70.0	% 50.0	% 30.0	% 80.0	% 50.0	% 30.0
全羅南道	% 70.0	% 50.0	% 30.0	% 70.0	% 50.0	% 40.0	% 75.0	% 55.0	% 30.0
慶尙北道	% 80.0	% 50.0	% 23.0	% 65.0	% 50.0	% 30.0	% 80.0	% 55.0	% 30.0
慶尙南道	% 65.0	% 51.0	% 38.0	% 57.0	% 50.0	% 43.0	% 69.0	% 52.0	% 43.0
黃海道	% 60.0	% 40.0	—	% 70.0	% 60.0	% 40.0	% 70.0	% 55.0	% 45.0
平安南道	% 75.0	% 45.0	% 30.0	—	% 50.0	—	% 68.0	% 50.0	% 30.0
平安北道	% 70.0	% 45.0	% 20.0	% 50.0	% 50.0	% 50.0	% 70.0	% 55.0	% 50.0
江原道	% 70.0	% 49.0	% 30.0	% 60.0	% 50.0	% 40.0	% 70.0	% 50.0	% 40.0
咸鏡南道	% 60.0	% 48.0	% 30.0	% 60.0	% 50.0	% 35.0	% 60.0	% 51.0	% 40.0
咸鏡北道	% 58.0	% 47.0	% 36.0	% 59.0	% 50.0	% 43.0	% 50.0	% 50.0	% 50.0
平均	{自58.0 至90.0	% 40.0	% 20.0	% 50.0	% 50.0	% 30.0	% 50.0	% 50.0	% 5.0
				% 51.0	% 39.0	% 79.0	% 60.0	% 44.0	% 80.0
							% 75.0	% 55.0	% 50.0

資料：朝鮮總督府『朝鮮の小作慣行』(上巻) p. 172에서 編製

&lt;第7表&gt;

日帝下의 田小作率(Ⅱ) (1930年頃)

道 別	定 租			打 租			孰 租		
	最 高	普 通	最 低	最 高	普 通	最 低	最 高	普 通	最 低
京畿道	% 80.0	% 50.0	% 15.0	% 60.0	% 50.0	% 34.0	% 75.0	% 50.0	% 10.0
忠清北道	% 71.0	% 40.0	% 03.0	% 50.0	% 50.0	% 30.0	% 75.0	% 50.0	% 40.0
忠清南道	% 55.0	% 44.0	% 35.0	% 52.0	% 49.0	% 43.0	% 56.0	% 51.0	% 44.0
全羅北道	% 70.0	% 40.0	% 10.0	% 60.0	% 50.0	% 30.0	% 64.0	% 55.0	% 50.0
全羅南道	% 60.0	% 40.0	% 20.0	% 60.0	% 50.0	% 30.0	% 75.0	% 55.0	% 30.0
慶尙北道	% 80.0	% 45.0	% 20.0	% 65.0	% 50.0	% 30.0	% 75.0	% 50.0	% 20.0
慶尙南道	% 61.0	% 45.0	% 35.0	% 54.0	% 49.0	% 42.0	% 67.0	% 48.0	% 39.0
黃海道	% 60.0	% 35.0	—	% 65.0	% 60.0	% 37.0	% 65.0	% 50.0	% 40.0
平安南道	% 74.0	% 45.0	% 30.0	—	% 50.0	—	% 47.0	% 40.0	% 30.0
平安北道	% 70.0	% 45.0	% 20.0	% 50.0	% 50.0	% 33.0	—	—	—
江原道	% 70.0	% 47.0	% 47.0	% 60.0	% 50.0	% 20.0	% 65.0	% 50.0	% 40.0
咸鏡南道	% 43.0	% 43.0	% 20.0	% 60.0	% 50.0	% 35.0	% 57.0	% 50.0	% 40.0
咸鏡北道	% 44.0	% 44.0	% 33.0	% 59.0	% 50.0	% 42.0	—	—	—
平均	{自55.0 至80.0	% 35.0	% 3.0	% 50.0	% 49.0	% 20.0	% 47.0	% 40.0	% 10.0
				% 50.0	% 47.0	% 65.0	% 60.0	% 43.0	% 55.0
							% 75.0	% 55.0	% 50.0

資料：朝鮮總督府『朝鮮の小作慣行』(上巻) pp. 238~239에서 編製

의 幅이 크고 畜小作料率 보다는 全般的으로若干의 低率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特徵의이다. 여기서 注目할 것은 田畠을 莫論하고 最高徵收率이 定租法에 있어서 가장 높다는 特

異한 現象이다.

한편 1930 年頃의 畜小作料率은 最高가 定租法은 58%—90%, 打租法이 50%—79%, 執租法이 50%—80%에 達하고 있다. 가장一般的인 『普通』의 경우에는 定租法이 40%—51%, 打租法이 50%—60%, 執租法이 50%—55%이다. 田小作率의 最高는 定租法이 55%—80%, 打租法이 50%—65%, 執租法이 47%—75%에 達하고 있으며, 『普通』의 경우에 定租法이 35%—50%, 打租法이 49%—60%, 執租法이 40%—55%의 比率을 보이고 있다.

이와같이 畜田의 小作料率은 一般的으로 35%—90%에 걸치는 广泛위한 幅을 보이고 있으나 頻度가 가장 높은 가장一般的인 경우를 模型化하면 定租法의 경우 1920 年頃에는 40%—50% 1930 年頃 以後에는 50%—60%가 支配的이었고, 打租法의 경우는 50%를 原則으로 이에 固着되어 있으면서若干 上昇하는 傾向이 있었으며, 執租法의 경우는 50%를 標準으로 하였으나 地主側이 收穫量을 實收穫보다 높게 評價하는 것이 普通이었으므로 보통 60%에 接近하는 것이 大部分이었다. 여기서 特히 注目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商品貨幣經濟의 農村侵透에도 不拘하고 小作料率이 현저히 上昇하는 뚜렷한 傾向이 나타나 있었다는 事實이다.<sup>(72)</sup> 이러한 小作料率의 上昇傾向은 定租 打租 執租의 모든 경우와 모든 地方에서 나타나며, 특히 定租法과 執租法에 있어서 높은 增加率이 나타나고 있다. 李朝末期에 있어서 定租法과 執租法의 小作料率은 打租法의 小作料率보다 顯著히 낮은 傾向을 가지고 있었으며,一般的인 경우 33%를 標準으로 하여 50%에 接近하는 幅을 가지고 있었다. 日帝治下의 初期에 있어서도 定租法과 執租法은 40%—50%에 있었으나, 1920 年代 以後부터는 50%를 上廻하여 60%에 集中하는 動向을 나타내었으며, 最高徵收率이 90%라는 高率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打租法에 있어서는 小作料率이 50%에 固着하는 強烈한 傾向이 나타나고 있으나 그 대신 租稅公課를 小作農에 轉嫁하는 傾向이 顯著히 增大되어 나타났다. 全般的으로 日帝下에 있어서 小作料率은 李朝末期에 比하여 定租法의 경우 全生產量에 對하여 約 10—20%, 打租法의 경우 約 5—10%, 執租法의 경우 約 10—15% 程度 增加하였다라고 推定할 수 있다.<sup>(73)</sup> 이러한 小作料率의 增加動向은 50%의 小作

(72) 日帝朝鮮總督府의 모든 小作慣行調查資料가 小作料率의 增加傾向을 報告하고 있다. 例컨대 朝鮮總督府『朝鮮ノ小作慣行』(上卷) pp. 172—173. 또는 pp. 344—349.

(73) 日帝朝鮮總督府의 各種調查資料는 小作料率이 大體로 이 程度의 比率로 增加하였음을 間接的으로 示唆하고 있다. 例컨대, “(定租의 小作料) 舊時에는 普通 生產高의 三割一五割, 近時에는 普通生産高의 四割一六割” 朝鮮總督府『朝鮮ノ小作慣行』(上卷) p. 155. “基租 小作은 거의 畜에만 行해지고 있는 바 이의 小作料率은 日韓合併을 契機로 하여 從來의 三分併作(地主一小作人二의 比率)로부터 變하여 生產高의 五割을 普通으로 함에 이르렀다.” 同上, p. 152. “그리하여 執租法의 小作料率은 打租와 同樣으로 五割을 標準으로 할지라도 往往 地主側이 單獨檢見을 하여 小作料額을 決定하는 者가 있어서 實納小作料額은 實際收穫高의 六·七割에 達하는 경우도 있다.” 朝鮮總督府農林局『朝鮮の農業』1933年版 p. 176. 其他 各種資料가 小作料率의 增加傾向을 報告하고 있는데 주로 水利組合地域에서의 小作料率의 현저한 增加現象을 描写하고 있다.

料率을 求心點으로 增加하다가 결국 이 切半小作率을 約 5—10% 上廻하여 日帝下의 小作料率은 平均 55%—60%의 範圍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sup>(74)</sup> 여기서 小作料率과 關聯하여 적어도 두가지 問題가 理論的으로 解明되지 않으면 안된다. 첫째는 日帝下의 小作料率의 全般的增加現象이 왜 일어났는가 하는 問題이고, 둘째는 定租法의 最高徵收率 90%의 경우와 같은 特殊한大幅的增加가 왜 나타났는가 하는 問題이다. 첫째의 問題는 平均小作料率의一般的增加現象에 대한 問題이고 둘째는 最高小作料率의特殊한增加現象에對한 問題이다. 小作人은 이러한 高率小作料以外에도 《租稅公課》 《土地改良費用》 《舍音의報酬》 《饗應接待費》 《斗稅》 《場稅》 《色租》 《加賭只》 《金品贈與》 《努力提供》……等 各種의 負擔을 負荷당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는 章을 바꾸어 論하려고 한다.

### (3) 小作料形態

小作料形態가 現物小作料인가 貨幣小作料인가의 問題는 小作料의 地代範疇를 判別하는 하나의 基準이 될 수 있다. 日帝下 우리나라 地主制度에 있어서의 小作料形態는 거의 大部分이 現物小作料였다. 1920年頃의 小作料形態를 現物小作料와 貨幣小作料로 區分하여 보면 第9表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畜 小作料의 경우에 直接生產物納이 92.8%,

&lt;第8表&gt;

日帝下의 小作料形態(I) (1920年頃)

道別	畜			田		
	直物納	代物納	金納(代金納)	直物納	代物納	金納(代金納)
京畿道	94.0%	極僅少	6.0%	70.0%	28.0%	2.0%
忠清北道	97.0	稀	3.0	44.0	53.0	3.0
忠清南道	97.0	—	3.0	37.0	59.0	4.0
全羅北道	90.0	—	10.0	80.0	10.0	10.0
全羅南道	98.0	微	2.0	58.0	40.0	2.0
慶尙北道	98.0	1.5	9.5	85.0	0.5	14.5
慶尙南道	89.0	僅少	11.0	87.0	6.0	7.0
黃海道	90.3	3.5	6.2	81.4	8.4	10.2
平安南道	93.0	1.0	6.0	89.0	7.0	4.0
平安北道	99.0	—	1.0	98.5	—	1.5
江原道	80.0	15.0	5.0	60.0	35.0	5.0
咸鏡南道	90.0	1.0	9.0	90.0	2.0	8.0
咸鏡北道	100.0	—	—	100.0	—	—
平均	92.8	1.8	5.4	75.3	19.3	5.4

資料：朝鮮農會『朝鮮の 小作慣行(時代と慣行)』 pp. 408~409에서 編製.

(74) 日帝下 地主制度의 小作率이 어떠한 小作料徵收方法에 있어서나 名目上 50%를 標準으로 하 고 있으나, 實際에는 〈水利費〉의 負擔을 小作人에게 轉稼하여 水利組合의 影響下에 있는 小作地에서는 小作料率이 平均 60%에 達하고 있으며, 이 影響으로 水利組合의 影響圈外에 있는 小作地에서도 小作料率이 上昇하는 傾向이 나타나고 있다. 全體의으로 볼 때 實納小作料率은一般的으로 平均 55%—60%가 가장 支配의이었다고 推定된다.

代物納이 1.8%로서 現物小作料가 94.6%의 比重을 占하고 있으며 貨幣小作料는 5.4%에 지나지 않는다. 田小作料의 경우에 있어서는 直接生產物納이 75.3%, 代物納이 19.3%로서 역시 現物小作料가 94.6%를 占하고 있으며 貨幣小作料는 5.4%를 占하고 있다. 現物小作料에 있어서 畜의 경우는 直接生產物이 거의 大部分이지만, 田의 경우는 地方에 따라 偏差가 있으면서도相當한 比率의 代物納이 行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全小作料의 5.4%를 차지하는 貨幣小作料도 純粹한 金納이 아니라 所謂『代金納』을 포함하고 있는 比率인 점에 注意할 必要가 있다.<sup>(75)</sup> 그보다 10年 後인 1930年頃의 小作料形態를 나타내는 統計에서 現物納 代金納 金納의 諸形態를 區分하여 보면 第10表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畜小作料의 경우에 現物納이 93.9%, 代金納이 3.9%, 金納이 2.3%이다. 田小作料의 경우에는 現物納이 92.1%, 代金納이 4.0%, 金納이 3.9%

&lt;第9表&gt;

日帝下의 小作料形態 (II) (1930年頃)

道 別	畜			田		
	現 物 納	代 金 納	金 納	現 物 納	代 金 納	金 納
京 畿 道	96.0	3.0	1.0	94.0	4.0	2.0
忠 清 北 道	88.0	2.0	極少	94.0	3.0	1.0
忠 清 南 道	95.8	3.8	0.4	96.7	2.8	0.5
全 羅 北 道	94.0	4.8	1.2	87.0	5.0	8.0
全 義 南 道	91.0	7.0	2.0	88.0	9.0	3.0
慶 尚 北 道	93.0	6.5	0.5	91.0	7.0	2.0
慶 尚 南 道	93.0	5.0	2.0	96.0	3.0	1.0
黃 海 道	97.0	1.0	2.0	95.0	2.0	3.0
平 安 南 道	98.0	1.0	1.0	96.6	1.9	1.5
平 安 北 道	96.6	2.2	1.2	95.4	2.8	1.8
江 原 道	92.0	6.0	2.0	89.0	6.0	5.0
咸 鏡 南 道	90.0	2.0	8.0	87.0	4.0	9.0
咸 鏡 北 道	95.0	—	5.0	86.0	極少	14.0
平 均	93.9	3.9	2.3	92.1	4.0	3.9

資料：朝鮮總督府『朝鮮ノ小作慣行』(上巻) pp. 104~105에서 編製:

(75) “(忠南) 金錢으로 써 하는 것은 代金納이다” “(京畿) 金錢으로 納付하는 것은 時價에 依하여 協定한다”. “(忠南) (全北) 金錢納은 時價의 換算에 依한다.” “(全南) 畜田金錢納은 驛屯土, 東拓小作地의 一部及 濟州島에 있어서 드물게 이를 볼 수 있는 外에 一般으로 行해지지 않는다. 그價格의 換算方法은……東拓에 있어서는 驛屯土에 있어서의 決定價格을 參考로 하여 定하고 濟州島의 것은 地主·小作人の 協定에 依하여 時價를 基準으로 하여 定한다.” “(慶北) 代金納은 小作料納期의 時價에 依한다” “(慶南) 金錢納은 代金納으로 써 時價의 換算에 依하여 畜은 米, 田은 麥을 가지고 한다. 但 馬山府에 있어서는 金納으로 하는 것이 있으며 畜은 一坪에 八錢, 田은 三錢을 徵收한다….” 朝鮮農會『朝鮮の小作慣行(時代と慣行)』pp. 408~410 參照.

의 比重을 占하고 있다.<sup>(76)</sup> 여기서 畜小作料形態의 3.9%, 田小作料形態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代金納』은 嚴密한 意味의 貨幣小作料가 아니라는 事實에 注目할 必要가 있다. 所謂 『代金納小作料』 (Naturalwertpacht)는 小作料의 標準을 現物 (例컨 대 米, 麥, 大豆……等)의 一定量을 定하고 이것을 그 當時의 時價에 의하여 現金으로 換算해서 小作料를 徵收하는 것이므로 本質上으로는 現物納의 一種에 包含되는 것이며 嚴密한 意味의 純粹한 金納 또는 貨幣小作料에 包含될 수 없는 것이다. 日帝下 우리나라의 小作慣行에 있어서도 小作農 사이에서 代金納과 金納은 峻別되어 認識되었으며 代金納은 『代錢』 『作錢』 『賭地錢』 『換納』等으로 呼稱되었으며 순수한 金納은 『賭只』 『冬賭只』 『賭錢』 『錢支定』等으로 불리웠다.<sup>(77)</sup>

그리므로 嚴密한 意味의 貨幣小作料는 1930年頃에 있어서도 畜의 2.3%, 田의 3.9%에 不過하였다. 물론 日帝下에서의 貨幣小作料는 李朝末期의 그것에 比하면 若干의 增加가 보이며 商品貨幣經濟의 發展에 따라 貨幣小作料의 比重이 增加하는 傾向은 보이지만 日帝下 우리나라 地主制度에 있어서의 小作料形態의 貨幣化傾向은 매우 緩慢하고 微微하여 대체로 1930年頃의 統計와 大差없는 狀態로 1945年까지 이르렀다. 日帝下의 小作料形態는 斷然 『現物小作料』로써 始終一貫 展開되었음을 確認할 수 있는 것이다.

#### (4) 勞動小作料

日帝下의 우리나라 地主制度에 있어서는 現物小作料와 貨幣小作料의 以外에 小作人의 勞動으로써 小作料의 全部 또는 一部를 納付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것은 두가지 경우, 즉 ① 小作人의 身分이 奴婢出身으로서 所謂 從屬的 『家附小作人』의 狀態로 存在하여 純粹한 勞動地代의 形態로써 殘存하는 경우와 ② 地主 또는 小作人側의 必要에 의하여 小作契約을 통하여 勞動小作料를 徵收하는 경우가 있었다. 後者の 경우에는 現物小作料의 現物의 時價와 勞動賃金과를 換算하여 決定하는 것이 普通이었으나 그 決定은 전적으로 地主側의 裁量에 의하여 決定되었으므로 地主는 一般的으로 現物小作料의 現物의 時價는 高價格으로 評價하고 勞賃은 一般日傭賃金 보다 훨씬 低廉하게 換算하였다.<sup>(78)</sup> 前者の 경우에는

(76) 現物小作料의 徵收가 技術的으로 至難한〈園〉(果樹園, 桑園…等)에 있어서는 現物納이 46.1%, 代金納이 25.4%, 金納이 28.5%로서 現物小作料의 比重이 현저히 낮아지고 貨幣小作料의 比重이 현저히 增加한다. 그러나 〈園〉의 小作은 小作口數가 極少함으로 小作制度全般에 있어서 重要한 意味를 갖지 않는다. 朝鮮總督府『朝鮮ノ小作慣行』(上卷), pp. 104—105 參照.

(77) 물론 混同되는 경우도 있었으나 一般的으로 分類되는 것이 普通이었다. 朝鮮總督府『朝鮮ノ小作慣行』(上卷) pp. 111—114 參照.

(78) “小作料에 換算하는 勞力を 提供하는 경우……그 労力提供은 小作料의 全部에 대하여 이를 行하는 것과 一部에 대하여 이를 行하는 것이 있다. 그리하여 또한 그 小作料가 되는 勞動口數及 勞務의 關係는 小作人의 勞動力及 勞動의 種類·程度等에 依하여 相異함이 있다. 그 外에도 뜨 地主小作人의 情誼關係에 依하여서도 相異하여 從屬小作人에 있어서는 그 換算關係는 전혀 이를 無視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러나 미리 契約에 基礎하여 이를

이러한 换算關係도 無視되고 從屬의in 關係가 支配하였다.

勞動小作料를 現物로 换算하는 경우에는 勞賃을 (食費除하고) 1日 40—50錢으로 評價하여 地主가 必要한 時期에 地主의 家事勞動에 使役하거나 또는 地主의 土地의 一定面積을 耕作시키는 것이 보통이었다. <sup>(79)</sup>

## 2. 小作料의 構成

日帝下 우리나라 地主制度에 있어서의 小作料는 그 大部分이 地代로 構成되어 있다 할지라도 모든 小作料가 完全이 地代와一致하는 것은 아니다. 從來의 小作料의 地代範疇에 대한 論爭이 充分히 納得할 수 있는 結論을 내지 못한 重要한 原因의 하나는 小作料를 一括的으로 地代와 同一視하는 誤謬를 범하였기 때문이다. 日帝下 地主制度에 있어서의 小作料는 『地代』를 그 大部分의 基本의 構成部分으로 하고 이 以外에 地主가 水利灌溉에 投資한 土地改良費用의 資本利子(또는 水利組合費), 種子, 農機具, 肥料, 農藥等의 農業資材의 購入에 대하여 貸付한 資本利子, 租稅公課의 轉稼된 部分, 때로는 小作農을 去來先으로 한 迂迴의in 商去來에 있어서의 商業利潤까지도 包含하고 있었다. 즉 日帝下에 있어서의 小作料는 地主와 小作農과의 經濟關係에서 地主가 土地小作과 關聯하여 小作人으로부터 徵收하는 取收物을 總稱하는 包括的인 概念이었다.

從來 小作料의 增加現象을 두고 封建地代가 高率化되었기 때문에 地主制度의 封建性이 深化되고 強化되었다고 보는 見解는 특히 이 小作料의 構成을 分析하지 못하고 小作料와 地代를 同一視하여 論理를 展開하였기 때문에 問題를 發展的으로 把握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日帝下의 地主制度의 小作料와 李朝末期의 그것을 比較하여 보면 가장 特徵的인 事實의 하나는 李朝末期에 있어서는 50%의 小作料를 求心點과 同時에 上限으로 하여 『賭租法』에 있어서나 『打租法』에 있어서나 小作料率의 幅이 모든 個別農家에 있어서 좁게 分布되어 있었는데, 日帝下에 있어서는 小作料率이 全般的으로 50%를 上廻하여 大體的으로 55%—60%에 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小作料率의 幅이 때로는 90%에 達하도록 넓게 分布되어 있다는 事實을 알 수 있다. 이러한 現象에 대한 說明은 單純히 地代의 高率化 또는 封建地代의 封建性의 強化라고 解釋함으로써 滿足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

行하는 경우에는 小作料가 되는 現物의 時價와 小作人을 勞役시키는 時期의 勞賃關係를 考慮한 뒤에 裁定하는 것을 普通으로 한다. 그러나 이 決定은 그 어떠한 경우일지라도 전혀 地主側의 裁量에 依하는 것으로써 萬若 小作人이 地主의 意志에 反하는 主張을 함에 있어서는 小作權은 解除당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地主는 一般的으로 그 現物의 時價는相當價格을 가지고 换算하면서도 勞賃은 一般日傭賃金 보다 훨씬 低廉한 賃金을 가지고 换算함을 普通으로 한다. 그리하여 그 换算關係는 単純한 狀態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云云。朝鮮總督府『朝鮮ノ小作慣行』(上卷) p. 339.

(79) 朝鮮總督府『朝鮮ノ小作慣行』(上卷) pp. 340—344 參照。

것은 小作料와 地代가 同意語가 아니며 事實上 完全히 一致하는 것이 아니라는 事實을 明白히 認識하고 小作料의 構成內容을 分析할 때 이 論爭의 解釋上의 對立이 止揚될 수 있는 爭議를 얻게 된다는 事實에 注意할 必要가 있다.

日帝 朝鮮總督府가 調査한 各種資料에서 먼저 結論的으로 小作料의 構成을 다음과 같이 要約하여 分類할 수 있다.

① 小作料=地代

小作料의 構成內容이 單純히 『地代』로만 되어 있을 경우에는 小作料率은 50%가支配的이었다. 물론 그 以下의 小作料率도 廣範圍하게 存在하였으나 例外的인 것이었고 『水利組合』이 形成되어 있지 않은 地域이나 地主가 農業資材를 先貸하지 않는 地域에서는 小作料率은 李朝末期와 같이 50%가 標準이 되었다.<sup>(80)</sup>

② 小作料=地代+土地改良費(利子 또는 元利金)

日帝가 食糧의 日本輸送을 目的으로 하는 『產米增殖』政策의 一環으로 『水利組合』을 組織하여 土地改良에의 強制投資를 執行하게 되자 『水利組合圈内』에 있는 畜地에서는 『水利費』의 負擔問題가 發生하였다. 水利費를 小作人이 直接 負擔하는 경우에는 50%의 小作料와 別途로 小作人이 이를 別途의 項目으로 直接支拂하였으나 水利費를 地主・小作人이 切半씩 負擔하거나 또는 地主가 이를 負擔할 경우에는 이를 間接的으로 小作人에게 轉稼하여 小作料率이 55%~60%로 上昇하였다. 『定租法』에 있어서 小作料率이 『打租法』이나 『執租法』보다 高率이었던 것은 그 原因의 一部가 주로 水利組合의 蒙利地域에서 『定租法』이 施行되고 水利費의 負擔을 地主가 小作料에 包含시켰기 때문이라고 理解된다. 가장 一般的인 경우에 水利費는 生產量의 5%~10%로 推定되어 轉稼되었으며 이것이 50%의 地代에 加算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sup>(81)</sup>

③ 小作料=地代+土地改良費+農業資材의 先貸利子

(80) 地主가 小作人에게 農業資材를 先貸하는 일이 없고 水利組合費를 支拂할 必要가 없는 地域의 小作料率은 50%에 集中되고 있음을 朝鮮總督府의 모든 調査資料에서 찾아볼 수 있다.例컨대 朝鮮總督府『黃海道에 있어서의 小作慣習』朝鮮彙報 大正 8年 三月에 있어서 事例調査의 小作料率 參照。

(81) 朝鮮總督府의 各種 調査資料에서 이 事實을 推定할 수 있다. 例컨대 “그리하여 現在에 있어서도 畜田 共히 그 生產高의 半額 (代金額에 있어서는 代金의 半額)을 小作料率의 標準으로 함을 普通으로 한다. 그러나 이 小作地가 水利組合域내에 在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水利費의 負擔關係上 地主가 水利費 全部를 負擔하는 경우는 그 小作料率을 生產高의 六割로 하고 水利費를 地主와 小作이 折半씩 負擔하는 경우는 生產高도 折半으로 한다” 朝鮮總督府『朝鮮ノ小作慣行』p. 152. “……收穫高를 折半으로 합이 普通이지만 水利組合區域에서는 地主六. 小作人 四의 比率로 한다” 同上. p. 153 “이를 要約하면 위와같이 小作料의 高騰低落은 主로 그 小作料가 定額小作料인 定租의 경우이지만 不定額小作料인 打租, 執租에 있어서도 從來의 契約 및 慣習上의 小作料를 引上 或은 引下하는 事實이 있다. 특히 水利組合設置地域에 있어서 組合費를 地主負擔으로 하는 關係上 從來 生產高의 五割의 小作料를 六割 或은 五割五分等으로 引上하는 例가 적지 않다” 朝鮮總督府『朝鮮ノ小作慣行』(上卷) p. 345.

때때로 地主는 小作人에게 直接的 高利貸付를 하는 以外에 營農資金이 不足한 小作人에게 種子 農機具 肥料 農藥等 農業資材를 先貸하고 그 元利金을 小作料에 包含시키거나 또는 元金은 別途로 徵收하고 그 利子를 小作料에 包含시키거나 하였다. 이 경우에 農業資材의 元金計算에는 商業利潤이 介入하는 것이 普通이었다. 大地主는 農業資材를 都賣價格으로 購入한 다음 小作人에게 先貸할 경우에는 小賣價格으로 評價하여 商業利潤을 加算하였으며, 여기에 다시 利子를 加算한 것이다. 이러한 形態는 日本人의 會社地主의 경우에 支配의으로 行해졌다. 이 경우의 小作料率의 高率化程度는 先貸資材의 種類와 價額이 매우 多樣하기 때문에 現在 發見할 수 있는 資料로는 一般的 上昇率을 定型化하여 提示하기는 어렵다.

#### ④ 小作料 = 地代 + 土地改良費 + 租稅公課

때때로 地主는 租稅公課를 直接 小作人에게 轉稼하여 小作人이 小作料와 別途로 租稅公課를 納付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租稅公課를 地主가 負擔하고 그에相當하는 價額을 小作料에 包含시키어 이를 徵收하는 경우도 많았다. 租稅公課를 小作料에 包含시키는 경우 小作料 上昇率은 土地改良費用이나 農業資材의 先貸利子負擔보다 低率인 것이 普通이었다.

#### ⑤ 小作料 = 地代 + 土地改良費 + 農業資材의 先貸利子 + 租稅公課

小作料에 地代와 土地改良費가 包含되는 외에 農業資材의 先貸利子와 租稅公課가 모두 重疊 包含되는 경우도 있었는 바 이 경우의 小作料率은 50%에서 훨씬 上廻하여 極히 高率로 上昇하였다. 앞의 第6表와 第7表에서 보는 小作料의 最高徵收率, 즉 定租法에 있어서의 58%—90%, 打租法에 있어서의 50%—79%, 執租法에 있어서의 50%—80%는 이러한 構成內容을 가진 小作料에서 많이 나타난 것이라고 理解된다.<sup>(82)</sup>

以上 다섯가지 形態는 小作料構成의 典型的 形態를 類型化한 것이고, 이 外에도 具體的으로 여려가지의 組合, 例컨대 地代 + 租稅公課, 地代 + 農業資材의 先貸元利金, 地代 + 農業資材의 先貸元利金 + 租稅公課, 地代 + 各種高利貸利子, …… 등 各種 形態가 있었고 이以外에도 雜多한 形態가 있었다.

여기서 注意할 것은 小作料에 있어서의 地代部分은 李朝末期에 比하여 日帝下에서 그다지 高率化된 것은 아니라는 點이다. 그것은 李朝封建時代에 50%의 地代率을 定型으로 하고 그以下の 地代率(1/4 地代 및 1/3 地代率)이 50%의 地代率에 接近하던 運動이 日帝下에서 確然이 完成되어 50%의 地代率로 定型화되었다는 意味에서 地代率의 上昇을 말함

(82) 日帝下, 地主制度에 있어서의 小作料의 構成內容과 小作料率의 高率化 要因에 대해서는 이 外에도 日帝 朝鮮總督府의 調查資料에서 各樣 各色의 具體的 事例를 들 수 있으나 여기서 가장 基本的이고 重要한 要素만을 類型化하였다. 各種 類型의 事例에 對한 例證은 省略한다. 또한 이러한 類型에 있어서의 小作料率의 上昇이 ① <小作料가 地代>만으로 構成된 類型에 대하여 個別의으로 地代率의 上昇을 刺戟하는 傾向이 있었음에 留意해 둘 必要가 있다.

수 있다. 그러나 李朝末期의 地主制度에서도 가장支配的인 地代率은 50%이었으며, 또한 日帝下의 地主制度에서 가장支配的인 地代率은 50%이었다. 또한 日帝下에서 一面 50%以下의 地代率의 50%에의 歸一과는 逆方向으로 小作人의 『小作爭議』와 一部 開化地主의 小作料率引下로 인하여 1/3(또는 3:7制) 地代率의 現象이 나타나기도 하였다는 것을 考慮하면 日帝下의 地主制度에 있어서의 地代率은 李朝末期의 封建地代率과 대체로 同率이었으며 50%線에 凝着되었다고 表現하는 것이 더욱 正確할 것이다.

地代率의 50%에의 固着化傾向에도 不拘하고 小作料率의 全般的上昇이 나타난 것은 새로운 要素의 侵透에 緣由하는 것으로서 特히 『產米增殖』을 위한 土地改良費와 農業資材의 先貸利子를 注目할 必要가 있다. 이러한 要因에 의한 小作料의 上昇은 植民政策 및 商品貨幣經濟의 支配와 直接 關聯된 小作料率의 增加要因이다. 그것은 水利施設에 대한 植民政策의 資本投資와 李朝封建時代에는 거의 볼 수 없었던 新品種, 近代工場製의 農機具, 化學肥料, 農藥等 새로운 農業資材의 先貸을 通하여 部分적으로 商品貨幣經濟의 流通過程의 『利子』가 地主制度에 侵透하여 小作料形態로 變形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無理가 있지만 한마디로 單純화하여 規定하기를 要求한다면, 日帝下의 地主制度에 있어서의 小作料는 李朝末期의 封建地代率 50%를 조금도 低下시키지 않고 오히려 그에 더욱 固着 定型化시킨 위에 다시 土地改良 및 農業資材의 先貸을 行한 資本의 利子(때로는 元利金)가 重疊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日帝下에서 小作料率이 上昇한 것은 地代率의 全般的上昇이나 封建地代의 強化가 아니라 『地代』와 『利子』의 重疊 加重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理解되어야 할 것이다.

日帝下 地主制度에 있어서 小作料率 上昇의 原因은 물론 이것 뿐이 아니다.<sup>(83)</sup> 日帝下에서의 顯著한 土地集中과 農民層分化에 따르는 小作料의 小作權爭奪競爭의 激化가 한편 그 上昇을 可能케 하였다. 그러나 從來의 모든 見解와 같이 小作料上昇의 原因을 小作權獲得競爭의 激化에서만 求한 것은 一面의in 觀察이라고 본다. 만일 土地改良費나 새로운 農業資材의 投入에 의한 土地生產性의 若干의 增加가 없었다면 土地集中과 小作權競爭만으로 그와 같은 小作料率의 上昇이 나타났으리라고는 斷定할 수 없다. 李朝末期에도 顯著한 土地集中과 小作農의 過剩人口는 存在하였으나 日帝下에서와 같은 上昇率은 나타나지 않았다. 問題는 小作人 또는 小作地需要者側의 條件만을 보아서는 안되는 것이다. 地主 또는 小作地供給者側의 條件을 同時に 보아야 할 뿐 아니라 이것을 보는 것이 더욱 本質의in 把握이 되는 것이다. 日帝下 地主制度에 있어서의 小作料率의 增加는 小作農의 過剩人口를 하나의 條件으로 하여 李朝封建時代에서 傳受된 50%의 地代率을 固着 定型化

(83) 小作料率 上昇의 다른 原因而 대한 事例로서는; 朝鮮總督府『朝鮮ノ小作慣行』(上卷) pp. 346—349 參照。

하고 여기에 다시 生產力增加分을 先貸資本의 利子로서 徵收함으로써 高率化된 것이며 이 경우의 小作料는 地代以外에 利子와 各種 負課를 包含하고 있는 것이다.

### 3. 小作料의 地代範疇

여기서 우리는 한걸음 더 나아가서 두가지 問題에 當面하게 된다.

첫째는 小作料內의 地代部分이 어떠한 歷史的範疇의 것인가의 問題이고 둘째는 全體小作料가 어떠한 歷史的範疇의 것인가의 問題이다.

日帝下 小作料의 地代部分의範疇는 封建地代인가? 近代資本制地代인가? 또는 새로운見解와 같이 그것은 利潤인가? 우리는 小作料의 地代範疇를 究明하기 위하여 最少한 다음의 세가지 基準을 檢討할 必要가 있다. ①剩餘生產物의 收取形式 ②經濟外的 強制 ③地代의 勞動·現物·貨幣形態가 그것이다. 이 세가지 基準은 封建地代와 資本制地代를 峻別하여 주는 最少限의 明確한 尺度이다.<sup>(84)</sup>

地代는 土地所有를 媒介로하여 小作人の 労動力再生產에 必要한 部分 以外의 剩餘生產物에서 支拂되는 것이며, 이 剩餘生產物을 土地所有者가 取得하는 方式이 地代의 歷史的範疇를 決定하는 것이다. 封建的地代에 있어서는 直接生產者와 土地所有者가 直接的으로 對立하여 土地所有者는 剩餘生產物을 『全額』取得한다. 이때 封建地主는 直接生產者를 奴隸와 같이 完全히 所有하지 못하고 不完全하게 所有하며, 또 剩餘生產物을 全額取得할 經濟法則의 機構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身分制』라는 『經濟外的 強制』를 通하여 이를 取得하는 것이다. 그러나 資本制地代에서는 剩餘生產物의 全部가 地代로 取得되지 않고 그 『一部』가 取得될 뿐이며, 그것도 農業資本家가 取得하는 『利潤』으로부터의 一控除部分으로써 支拂되는 것이다. 즉 資本制地代는 農業에 있어서의 資本制生產樣式의 成立을前提로 하고 農業資本家가 農業經營의 結果 取得한 利潤中에서 平均利潤을 超過하는 部分이 地代로서 地主에게 支拂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資本制地代에서는 『經濟外的 強制』는 不必要한 것이 되어 消滅되며 地代의 取得은 商品交換에 媒介되어 經濟的 法則에 의하여 行하여진다. 또한 資本制地代는 『利潤』의 一部이고 利潤은 貨幣를媒介로 成立되는 것이므로 地代形態는 不可避하게 『貨幣地代』의 形態로 나타나게 된다. 물론 現實의 經濟社會에서 이러한 理念型의 形態가 그대로 나타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變形의 경

(84) 從來의 見解가 正反對로 尖銳하게 對立하여 論爭의 止揚을 얻지 못한理由의 하나는 小作料의 地代範疇를 分析하는 基準을 不充分하게 設定한 곳에도 있다. 여기서 指摘하는 세가지 基準中에서 ①剩餘生產物의 收取形式은 地代에 集中表現된 生產樣式를 나타내는 것이며 ②經濟外的 強制는 地代를 徵收하는手段과 社會的關係를 나타내는 것이고 ③地代形態는 위의 두가지 基準에 의하여 規定된 地代의 發展段階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 세가지 基準을 모두統一的으로 分析되어야 할 것이며, 어느 하나의 基準만을 가지고 地代範疇를 規定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본다.

우에도 이러한 原理는 그대로 基準이 되는 것이다.

첫째로, 剩餘生產物의 收取形態에서 볼 때 日帝下 地主制度에 있어서의 50%의 地代率은 再論의 餘地敘이 剩餘生產物의 《一部》가 아니라 그 《全部》에 該當하는 것이며 때로는 小作人의 《必要生產物》까지 侵蝕하는 것으로서 地主가 小作人으로부터 直接取得한 것이었다. 日帝下 地主制度에 있어서는 小作人의 剩餘生產物이 農業資本家의 利潤으로 轉化取得되었다가 그 一部인 平均利潤의 超過部分이 《地代》로 轉化되어 農業資本家에 의해 地主에게 支拂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地主는 土地私有權에 基礎를 두고 農業資本家의 中間介入이나 利潤의 介入이 없이 小作農으로부터 《剩餘生產物》의 《全額》을直接 收取하였으며, 이점에서 日帝下의 小作料의 地代部分은 近代資本制地代나 利潤은 아니며 前資本制의 範疇의 地代임을 알 수 있게 된다. 물론 典型的인 《三分制度》(system of tripartite division)가 形成되지 않고 農業資本家의 役割을 地主가 構하여 遂行하는 경우도充分히 想定할 수 있으나 日帝下의 地主는 다음에 論證되는 바와같이 《寄生地主》라는 事實이 우선 이 可能性을 否定하고 있으며, 農業生產에 있어서 資本制의 生產樣式이 成立하지 않았다는 事實이 이를 全體的으로 否定하고 있다. 直接生產者的 剩餘生產物의 取得形式에 限定하여 볼 때 日帝下의 小作料의 地代部分은 封建的 範疇에 接近하는 것이며, 資本制地代에 接近하는 것이 아니다. 더구나 그것이 利潤의 範疇에 接近하는 것은 더욱 아니다. 日帝下의 小作料의 地代가 利潤과 一致하려면, 地主가 農業資本家로서 스스로 經營의 主體가 되고 生產擔當者가 되어 農業生產을 資本家的으로 直營하여야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日帝下 우리나라 地主制度에 있어서는 經營의 主體와 生產의 擔當者 責任者는 小作農이었으며, 地主는 個別地主이든 會社地主이든 《寄生地主》에 不過하였다.<sup>(85)</sup> 도대체 農業生產에 資本制生產樣式이 成立되지 않고 農業資本家階層이 形成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 小作料의 地代가 利潤으로 될 餘地는 어느곳에도 存在하지 않는 것이다. 剩餘生產物의 收取形態의 面에서 볼 때 日帝下 地主制度에 있어서의 小作料의 地代範疇는 近代資本制地代나 利潤으로 볼 수 없고 《前資本制地代》의 範疇에 屬하는 것이며 《經濟外的強制》의 要素만 갖추어지면 封建地代로 範疇化할 수 있는 構造와 性格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둘째로, 小作料의 《地代》部分이 《經濟外的強制》에 의하여 徵收되었는가 《經濟的強制》에 의하여 徵收되었는가의 問題를 檢討하여야 한다. 이 點에 대해서는 具體的 事例를 가지고 章을 바꾸어 詳論하게 되지만 여기서 우선 指摘하지 않으면 안될 것은 日帝下 地主制度에 있어서 經濟外的 強制가 温存하였다거나 또는 經濟外的 強制가 李朝封建時代

(85) 農業經營의 主體의 問題와 會社地主가 農業資本家인가 寄生地主인가의 問題는 本稿의 第5章에서 다루고 있다.

또는 李朝末期 보다 더욱 深化되고 擴大再生產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는 事實이다. 經濟外的 強制는 法律上으로 1894 年에 最終의 으로 撤廢되고 内容上으로도 그 以前부터 漸次解體하기 시작하여 그 以後 解體過程을 持續하였으며 日帝下의 地主制度에 있어서는 그것이 經濟外的 強制로서가 아니라 經濟外的 強制의 《遺制》로서 強制하게 殘存하였다. 우리는 經濟外的 強制와 經濟外의 強制의 《遺制》를 同一視해도 안되며 또한 그 遺制를 無視해도 안된다. 日帝下의 地主制度에 있어서 經濟外的 強制가 擴大再生產되었다고 主張하는 見解가 指摘하고 있는 小作農에 대한 地主의 身分의 諸規制는 《經濟外的 強制》가 아니라 그 《遺制》와 關聯된 것이다. 土地調查事業을 轉換點으로 하여 李朝封建時代의 封建地主를 그대로 日帝下에서의 地主階層으로 改編한 事實은 日帝下의 地主制度에 있어서 經濟外的強制의 遺制를 強制하게 存續시킨 重要한 原因이 되었다. 그러나 日帝下에서의 商品貨幣流通의 全般的인 支配와 그의 地主制度에의 侵透는 前資本的 範疇의 地代 收取에 있어서 經濟的 強制가 重要한 原因으로 作用하도록 規制하였으며, 小作料徵收가 크게 經濟的 關係의 支配를 받도록 作用하였다. 그리하여 日帝下 우리나라 地主制度에 있어서 地主의 地代 徵收의 機構는 《經濟的 強制》와 經濟外的 強制의 《遺制》의 結合, 癒着의 形態로 成立・存續한 것이라고 理解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注意할 것은 經濟外的 強制가 基本의 으로 解體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封建地代의 完全한 解體나 近代資本制地代의 成立을 證明하는 것은 아니라는 事實이다. 經濟外的 強制는 封建地代의 徵收의 手段이고 機構이며 封建地代의 唯一한 構成要素는 아니기 때문이다. 封建地代의 다른 하나의 本質의 構成要素인 直接生產者의 剩餘生產物의 《全部》의 《直接的》 收取라는 剩餘生產物收取形式의 封建地代의 要素가 經濟外的 強制의 解體와 더불어 完全히 解體될 때 이른바 封建地代의 完全한 解體를 말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經濟外的 強制》는 封建地代의 本質의 構成要素의 하나임이 틀림없으므로 그것만의 解體로도 封建地代가 根本의 으로 解體過程 속에 있다는 事實만은 明確하게 證明해 주는 것이라고 理解할 수 있다.

셋째로, 日帝下의 地主制度에 있어서 小作料의 地代形態는 前節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現物地代가 93.9%(畠)의 壓倒的 比重을 占하며 순수한 貨幣地代는 2.3%에 不過하였다. 이 事實은 日帝下 小作料의 地代範疇가 前資本制地代의 範疇의 것임을 補強하여 證明하여 준다. 뿐만 아니라 貨幣地代도 封建地代의 解體期(封建末期)에 支配의 으로 볼 수 있는 地代形態임을 考慮하면 日帝下의 現物地代는 資本制地代에 先行하는 範疇의 地代라는 事實을 示唆해 준다. (86)

(86) 日帝下의 小作料의 現物形態가 金融資本의 支配下에서 遺制의 要請으로 부터 〈便益〉의 要請으로 轉化하여 存續하였다는 見解는 卓見이다. 그러나 그것은 地代의 利潤의 形態轉化를 證

우리는 여기서 從來의 論爭의 見解와는 다른 結論을 導出하게 된다. 그것은 日帝下 우리나라 地主制度에 있어서의 小作料의 地代範疇는 經濟外的 強制를 隨伴하는 本來의 『封建地代』나 『封建地代의 強化形態』가 아니며, 또한 『資本地代』나 『利潤』도 아니라는事實이다. 그것은 封建地代가 解體되기 시작하여 第一次의으로 經濟外的 強制가 현저히 分解되고 小作料에는 地代以外의 『利子』部分이 介入하여 들어오며 小作料의 徵收가 商品貨幣經濟의 支配下에서 이루어지는 封建地代 解體過程의 地代範疇라는 것이다. 우리가 단일純粹한 封建地代와 近代資本制地代의 두개의 歷史的範疇만을 認定하고 그 사이의 特殊한 過度的範疇나 形態를 認定하지 않는 立場을 取한다면 앞서 본바와 같이 剩餘生產物收取形態上의 封建地代의 性格으로 말미암아 그것은 不可避하게 封建地代의範疇에 들어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지나치게 無理한範疇화이다. 이미 封建地代의 基本的屬性의 하나인 經濟外的 強制가 解體되고 經濟的 強制가 더욱 重要하고 基本的인 機構로 되었으므로 이것을 本來의 封建地代와 無分別하게 同一視할 수는 없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過渡的範疇나 形態를 認定하고 具體的變化內容을 概念속에 捕捉하려 한다면 그것은 새로운 細部的範疇화와 새로운 名稱을 要求하는 것이다.一般的으로 封建地代에서 資本制地代로의 發展過程을 想定할 때 그 過渡期的形態로서의 『過渡的地代』範疇를 設定할 수 있다. 그러나 過渡的範疇의 地代로서 『分益農地代』(metayer rent)와 『小農地代』는 우리나라 小作料와는 다르다. 우리는 때때로 日帝下 우리나라의 地主制度에 있어서의 小作料를 分益農地代로 解釋하는 見解를 보게 된다. 그러나 日帝下 우리나라 地主制度에 있어서의 小作料의 地代範疇는 그 内容에 있어서 分益農地代와 뚜렷하게 相異하며, 發展段階를 想定할 경우에도 그것은 分益農地代에 先行하는 것이라고 理解된다.<sup>(87)</sup>

日帝下 우리나라 地主制度에 있어서의 小作料의 『地代』部分과 같이, 封建地代의 解體過

明하는 것은 아니며, 오직 前資本制의 現物地代가 商品貨幣經濟의 支配에도 不拘하고 왜 貨幣地代로 轉化하지 않고 遺制로서 存續할 수 있었는가를 說明하여 주는 것이라고 理解하여야 할 것이다.

(87) 多數의 日本人學者들, 例컨대 東畠精一·大川一司『朝鮮米穀經濟論』1935年에서는 日帝下 우리나라의 小作制度를 『分益小作』라고 規定하고 小作料를 分益農地代와 類似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分益農地代』와 우리나라의 『小作農地代』는 엄격히 相異하다. 分益農地代는 借地農이 自己의 勞動力外에 營農資本의 一部를 出資하는 한편 地主도 土地와 營農資本의 一部를 出資하여 生產物을 一定率로 分配하는 地代形態이다. 따라서 分益農地代에 있어서는 本來의 地代와 함께 地主가 出資한 資本에 對한 利潤이 包含되어 있으며 借地農의 分配分에 도借地農이 出資한 資本에 對한 利潤이 包含되어 있다. 물론 分益農地代가 借地農의 利潤部分까지 吸收하는 경우도 있으나 本質으로는 地主와 借地農과의 利潤의 分配를 内容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生產力의 發展과 더불어 分益農의 資本이 增大하고 地主의 資本出資가 減少하거나 消滅되면 分益農은 資本家의 借地農業者로 되며, 따라서 地代도 超過利潤의 轉化形態로 되어 『近代資本制地代』가 成立하는 것이다. 그러나 日帝下 우리나라의 『小作農地代』는 本來의 『地代』와 高利貸의 『利子』로構成되며, 地主가 農業資材를 先貸하지 않는 경우에도 地代는 50%의 半封建的高率地代가 溫存하여 剩餘生產物의 全部를 直接吸收하므로 처음부터 利潤의 分割같은 것은 存在하지 않는 것으로서 分益農地代 보다 先行하는 地代이다.

程에서 아직 그 封建性을 充分히 解體하지 않고 다른 封建的 素因을 그대로 간직하면서 經濟外의 強制라는 封建的 素因을 解體하고 있는 이러한 特徵의 『前資本制地代』는 어떻게 命名하여야 할 것인가? 이러한 地代範疇는 비단 日帝下의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同時代의 아시아 各國에서 類似한 形態를 發見할 수 있으므로 獨自的 形態로서 概念을 設定하여 具體的 名稱 그대로 『小作農地代』라고 命名할 수도 있을 것이다.<sup>(88)</sup> 만일 이러한 『小作農地代』를 넓은 意味의 過渡的 地代範疇에 包含시킨다면 그것은 分益農地代보다 先行하는 것으로서 過渡的 地代範疇의 最初의 形態로서의 位置를 새로 設定하여야 할 것이며, 만일 過渡的 地代範疇에 分益農地代와 小農地代以外에는 어떠한 것도 包含시킬 수 없으며 따라서 『小作農地代』도 本來의 狹義의 過渡的 地代範疇에 包含시킬 수 없다는 立場을 取한다면 그것은 매우 소박한 表現이지만 『半封建地代』로서 範疇化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sup>(89)</sup>

다음 日帝下의 地主制度의 小作料에 包含된 『利子』部分은 地主가 貨幣商品經濟의 發展의 影響하에 商業高利貸資本의 機能을 遂行함으로써 『先貸』資本의 利子形態로 支拂된 것이다. 이것은 다음 章을 바꾸어 詳論할 때 實證하게 되지만 結論부터 말하면 그것은 『高利貸利子』의 性格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日帝下 小作料에 있어서의 利子部分의 어떠한 性格은 小作料의 地代部分의 『半封建地代』의 性格과 相應되어 있다. 先貸資本의 利子는 그 自體가 高利貸利子의 形格을 갖지 않는 경우에도 그것이 前資本的 商業資本의 生產者支配라는 面에서 半封建地代와 癒着할 素因을 갖게 되는 것이다. 물론 日帝의 小作料의 利子에는 高利貸利子로는 볼 수 없는 多數의 農業經營資金의 利子도 이를 發見할 수 있지만 가장支配的인 一般的 形態를 社會經濟的 側面에서 볼 때 強한 高利貸的 性格을 갖추고 있는 點이 특히 注目되는 것이다.

日帝下 우리나라 地主制度에 있어서의 小作料의 地代範疇는 지금까지의 考察에서 밝혀지는 바와같이 本來의 『封建地代』가 아니며, 또한 어떠한 形態의 『資本制地代』나 『利

(88) Richard Jones 가 *An Essay on the Distribution of Wealth and the Sources of Taxation*(1831)에서 各國의 地代를 檢討한 다음 一般的으로 地代를 peasant rent 와 farmer's rent로 區分하고, 다시 peasant rent 를 ①labour or serf rent ②metayer rent ③ryot rent ④cottier rent로 區分하여 概念을 設定하고 있는 事實에 비추어, 日帝下 우리나라의 地主制度에 있어서의 〈地代〉를 從來의 〈封建地代〉 〈資本制地代〉의 世界史의 大分類와 別途로 peasant rent의 一形態로서의 特殊한 獨自의 〈小作農地代〉로서 새로운 概念의 設定을 試圖할 必要가 있지 않을가 한다.

(89) 여기서 〈半封建地代〉라 함은 要컨대 封建地代의 解體過程에서 그 封建性이 完全히 解體되지 않고 오직 部分的으로 〈經濟外의 強制〉는 解體되면서 一面剩餘生產物의 〈全部〉의 〈直接的〉인 収取라는 封建性은 溫存되어 있는 地代形態를 範疇化하는 暫定의 概念으로 使用하고 있다. 그러므로 〈半封建地代〉에서는 利潤은 形成되지 않으며 또한 그것은 좁은 意味의 本來의 〈過渡的地代〉의 分益農地代와 小作農地代의 直前に 先行하는 것이라고 理解될 수 있다.

潤》도 아니다. 日帝下의 小作料는 前資本的 範疇의 것이며 基本的으로 《半封建地代》와 先貸資本의 各種 《利子》가 憊着된 形態의 것으로서, 그 地代範疇는 封建地代의 解體過程에서 나타난 特殊한 形態의 《半封建地代》인 것이다. 그것은 李朝封建制度의 解體過程에서 商品貨幣經濟의 全般的 支配의 影響下에 經濟外의 強制가 解體되었음에도 不拘하고 日帝 植民地政策의 規制下에서 《經濟的 強制》와 經濟外의 強制의 《遺制》의 憆着에 의하여 한 時代를 通한 特殊한 地代範疇로서 強勒하게 存續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理解된다.

〔筆者 서울大學校商科大學  
韓國經濟研究所研究員  
서울大學校商科大學專任講師〕

## A Study of the Landlord System in Korea (Part I)

—On Land Tenure under Japanese Colonial Policy, 1910-45—

*Yong-Ha Shin\**

### 1. Introduction

This study aims to analyse the economic structure and historical implications of Korean landlord system in the period of Japanese colonial rule, 1910—45.

The system had many special characteristics inherent in itself, which are very difficult for us to interpret. For instance, during the period, the rate of tenant rent had increased remarkably compared with that of preceded feudal system in the Yi dynasty. The fall of owner-farmers to tenant-farmers had become a nation-wide tendency, as the ownership of arable land had been concentrated into the hands of a few landlords. This is only an example and there occurred many other phenomena to be studied.

Recently, the interpretation of the phenomena has become a subject of controversy, and two different views has proposed.

A group of economists views the Korean landlord system under the Japanese colonial rule as the equivalent of the “feudal” landlordism which had characterized the landlord system of the Yi dynasty. They have concluded that the landlords of the colonial period were equivalent to feudal landlords; tenant-farmer to serfs; tenant rent to feudal rent; and the rise of tenant rent rate to increase in feudal rent. They believe that, though capitalist economy was dominant in urban-industrial sector, in rural-agricultural sector, and especially in agricultural production, the feudal system was still persistent and, in a sense, reinforced far from being declining.

The other group raises quite opposite interpretation. This group maintains that the landlords of the colonial period were similar to the modern landlords or agricultural capitalists; that tenant rent had common characteristics with modern

\* The author is full time lecturer of the economic history of Korea, and Korean agricultural economy of College of Commerce, Seoul National University. He is also research professor in the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Seoul National University.

rent or profit; that the tenant-farmers were just the same as modern agricultural laborers. According to this view the Korean landlord system under Japanese colonial rule was quite different from that of the Yi dynasty, that is to say, the one is modern system while the other is feudal one. As a result, capitalism is argued to have risen not only in industrial sector, but also in agricultural sector.

These two opposite points of view have produced the different interpretation in the study of other special phenomena which are not mentioned in this paper.

The author thinks these views are highly speculative lacking positive bases, liable to bring out dangerous misinterpretation. He emphasizes the unbiased attitude of mind in the research and the use of reliable research materials in order to meet the required positivistic precision in bring out more rational interpretation. The author has conducted this study independent of any speculative views, using available materials published by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Great efforts have been made to interpret, from a new point of view, the Korean landlord system under the Japanese colonial rule.

The first part of this study deals with problems of rent.

## 2. Problems of Tenant Rent

### (1) Collection of Tenant Rent

In the colonial period the tenant rent was collected in three ways: Chongjo (定租), Tajo(打租), and Chipjo(執租).

Under Chongjo method the amount of tenant rent was decided by the tenancy contract between landlords and tenant-farmers, and the tenant rents was collected in fixed amount according to the agreed terms without consideration of crop harvest.

In case of Tajo, the rate of tenant rent was fixed every year by agreement between landlords and tenant-farmers, but its amounts were fluctuated depending on the net yields of the year. The amount of tenant rent depended upon the year's harvest.

Chipjo took a combined form of Chongjo and Tajo, under which landlords and tenant-farmers figured out, before harvest, the estimated yields, and decided the year's amount of tenant rent based on the estimated figures.

The ratio of the application for these methods in the collection of tenant rent was as follows.

Year		Chongjo	Tajo	Chipjo
1920's	Paddy-field	24.2	50.8	25.0
	Dry-field	50.9	46.4	2.7
1930's	Paddy-field	32.0	52.0	16.0
	Dry-field	60.6	38.0	1.4

As we can see in the table, throughout the colonial period, in the case of the tenant rent of paddy-field, Chipjo had been transformed, in dynamic fashion, into Chongjo, whereas in the dry-field, Tajo tended to turn into Chongjo.

## (2) The Rate of Tenant Rent

The rate of tenant rent in yields differed slightly according to the method of rent collection. An abridged figure could be cited as follows. The figure (a) shows the range of its maximum, and figure (b), that of its average.

Year		Chongjo	Tajo	Chipjo
1920's	(a)	49—80%	50—70%	47—80%
	(b)	40—50	50	39—50
1930's	(a)	58—90	50—79	50—80
	(b)	50—60	50	50—55

Note: (a) stands for the maximum rate of tenant rent in paddy-fields yields, and (b), average rate of tenant rent of the yields.

To sum up, the average rate of tenant rent in paddy-field and dry-field yields during the period was 50—60 per cent under Chongjo, 50 per cent under Tajo, and 50—55 per cent under Chipjo, respectively.

The important fact is that despite the development of capitalism in the colonial period, the rate of tenant rent had risen to a considerable degree compared with that of the Yi dynasty.

The comparison of average rate of tenant rent of the Yi dynasty and the colonial period can be shown in the following table.

	Chongjo	Tajo	Chipjo
The Yi dynasty	33—50%	50%	33—50%
The colonial period	50—60	50	50—55

As the table indicates, the increase in Chongjo is noteworthy. Generally speaking, the rate to tenant rent had risen in the colonial period from below 50 per cent of the Yi dynasty to 55—60 per cent. This means that the rate had increased by 5—10 per cent of gross products. How can this fact be interpreted in terms of economic history? What is the implication of the fact that in

specific case rate of tenant rent had been increased up to 90 per cent? These questions remain to be studied.

### 3. Payment of Tenant Rent

The method of payment of tenant rent was divided into two: one is the payment in products and the other, the payment in money. In 1920's, 94.6 per cent of the year's tenant rent had been collected in products and remaining 5.4 per cent in money. The rent in products consisted of the payment in the yields of 92.8 per cent and substitute crops of 1.8 per cent. And the above figure of tenant rent in money did not represent the original money rent because it had included payment in money-substitute(代金納).

According to the research, the tenant rent in products of rice-field yields were at 93.9 per cent, while the tenant rent in money was 6.1 per cent in 1930's. Granted that the tenant rent in money could be divided into payment in money-substitute and tenant rent in original money, the ratio in the rent in money of 6.1 per cent can be divided into 3.9 and 2.3 per cents respectively. In case of dry-field yields, the tenant rent consisted of the rent in products of 92.1 per cent, payment in money-substitute of 4.0 per cent and the original money rent of 3.9 per cent.

The payment in money-substitute here means that the standard of tenant rent was represented in terms of the payment in products such as rice, barley, bean, etc. and the given amount was paid in money at current market prices. Therefore the tenant rent in original money in 1930's appeared only as 2.3 per cent in paddy-field case and 3.9 per cent in dry-field. There is no denying the fact that the ratio of rent in money was inclined to increase with capitalism advanced in the urban area. But the commutation was relatively slight one. These phenomena had continued up to the year of 1945.

### 4. Components of Tenant Rent

The two opposite views mentioned at the beginning could not reach any convincible conclusion in spite of long, elaborate disputes because they interpreted tenant rent either in terms of rent or profit exclusively. The positivistic examination of facts makes it plain that the tenant rent is composed not only of rent but of other additional elements. The author views that the tenant rent in Korean landlord system under Japanese colonial policy is composed

fundamentally of both rent and interest. During the Yi dynasty, tenant rent was nothing but the rent itself; under the Japanese colonial rule, however, interest had been included in tenant rent. Because the Government-General of Korea forced the landlords to invest in irrigation and land improvement projects in order to increase food production and its transmission to Japan. Moreover, the Japanese introduced the new factors into agricultural production such as new seeds, modern agricultural implements, chemical fertilizers, and pesticides.

The landlords lent those new agricultural implements to tenant-farmers in advance and they charged the interest of the costs as well as principal after harvest. In most cases the principal was separately collected and only the interest was included in tenant rent. Therefore, we can put the components of tenant rent under Japanese colonial rule into following patterns.

- (1) Tenant rent=rent.
- (2) Tenant rent=rent+the interest of irrigation and land improvement costs.
- (3) Tenant rent=rent+the interest of agricultural equipments costs such as new seeds, chemical fertilizers, and so on.
- (4) Tenant rent=rent+the interest of irrigation, land improvement and agricultural equipment costs.
- (5) Tenant rent=rent+the interest of irrigation, land improvement and agricultural equipments costs+land-tax.

Of these types, in the Type (1), the rate of tenant rent was 50% of the gross products, while landlords did not conduct any lending or investment. But, in the case of Type (2), which includes the interest of irrigation and land improvement costs, the rate of tenant rent rose up to 55—60%. And, as are shown in Types (3)(4)(5), if the interest of agricultural equipment costs and other components were added, the rate of tenant rent kept increasing in some case, even up to 90% at ceiling. This interpretation, the author thinks, is the new discovery.

The view, that the rise of tenant rent rate is a reflection of reinforcement of feudal rent and of feudalism rooted strongly in the field of agricultural production, must have been influenced by a speculative prejudice that the tenant rent simply is equivalent to rent.

And the other view, according to which the rise of tenant rent rate could be interpreted as an increase in profit rate, fall into the same misguided

speculation that the tenant rent equals with profit.

The Korean landlords under the Japanese colonial rule were not agricultural capitalists but absentee-landlords. They might had supplied some capital and equipments besides the land, but that was simply lending to tenant-farmers. On the other hand, tenant-farmers were farm operators and responsible producers as well as actual agricultural cultivators. The tenant-farmers, therefore, were not mere agricultural laborers, though sometimes blurred in practice, but the actual farmers who could not possess land of their own.

For the most part, landlords had invested in irrigation and land improvement projects not directly but indirectly through the Government-general of Korea. The Government-General directed the irrigation and land improvement projects, and charged the expences to the landlords who collected the interest of the costs from the tenant-farmers. It was similar in the case of the supply of capital and equipments such as new seeds, agricultural implements, chemical fertilizers, pesticides and so on. The landlords lent them in advance and put the pressure on the tenant-farmers to pay the interest as well as pricipal.

The principals were collected separately. And interest of various costs were added to tenant rent. Therefore, it is clear that the tenant rent is consisted of both rent and interest, not of profit. According to survey data of that period, the rate of original rent in the tenant rent has proved to be under about 50 per cent of gross products during the period. This is the same as in the age of Yi dynasty. With the interest added to this original rent, whole tenant rent rate had risen, and their degree of rise as a whole had been decided by how many equipments and capital the landlords had lent to tenant-farmers. This analysis concerns with the conditions of the landlords as the land-supplyers.

On the part of the tenant-farmers as the land-demanders, what made possible the increase of tenant rent rate was the keen competition among them to get land-lease under the pressure of relative surplus population of tenant-farmers in rural area.

### 5. The Stage of Development of Tenant Rent in Korea

As mentioned above, the tenant rent in Korean landlord system under Japanese colonial rule is neither feudal rent nor capitalist profit in the process of evolution of rent in Korea. The author considers that the tenant rent under

Japanese colonial rule was a compound of the original rent and interest in the age of transition.

At that time the feudal social hierarchy system had legally been abolished and only the vestiges of feudalism still survived. The land tenure had been conducted not according to the practices of feudal hierarchy system but to economic contract basically. The feulal rent was already in the process of disorganization though not completely, and capitalist rent did not appear yet. The tenant rent of Korean landlord system in that period should be considered as a peculiar type of rent that occured in the transition period of disorganization of feudal rent under the impacts of capitalism.

The tenant rent of Korea under the Japanese colonial policy might be quite similar to that of metayer rent in the 18th century France. But the metayer rent in French agriculture had developed in the form of  $\langle \text{metayer rent} = \text{rent} + \text{profit} \rangle$ , while tenant rent of Korea had developed in the form of  $\langle \text{tenant rent} = \text{rent} + \text{interest} \rangle$  under the impact of capitalism upon traditional agriculture. And, in regard to the interest in tenant rent, its rate of interest was so high as seen in the character of usury. Accordingly, we can suppose that the "tenant rent" of Korean landlord system under the Japanese colonial rule is one step ahead of the French "metayer rent" in the course of rent evolution.

The same tenant rent had appeared in China and Japan during the same periods, although it was different to some degree. The author, therefore, thinks that the Korean landlordism and its tenant rent during the colonial period is a new subject as a part of Korean economic history to be dealt in comparison with those of China and Japan. New, unified approach and positivistic examination is urgently needed.